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개선과제

A Study on the Welfare Status and
Improvement Task of Companion Animals

정민국 김동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개선과제

A Study on the Welfare Status and
Improvement Task of Companion Animals

정민국 김동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정민국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김동훈 | 전문연구위원 | 제2, 3, 4, 6장 집필

연구보고 R2024-12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개선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4. 10.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B N | 979-11-6149-711-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복지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일부 관련 기관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반려동물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정형화된 소수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영업업체 및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복지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내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 관련 해외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 관련 주체(영업업체, 소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신 관계기관과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모든 응답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24.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요 약

연구 목적

-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함께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복지 관련 항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반려동물 복지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 영업업체 및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 검토와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개(반려견)와 고양이(반려묘)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반려동물 복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반려동물 복지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주요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차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 다른 주요 기관에서 수행된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 현황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하였으며, 반려동물 영업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영국, 미국,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령과 제

도를 심층 검토하였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부 법적 내용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 분석을 위해 영업업체, 소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 수준과 필요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 국내외 주요 기관의 자료를 종합하면 동물보호는 양육자가 주체가 되어 학대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며, 동물복지는 해당 동물이 주체가 되어 동물에 대한 ‘적극적 돌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물복지는 동물 보호를 확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 복지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2012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4년 발표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과 2020년 발표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통해 많은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 등록률 및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미흡, 소유자의 입양 전 동물복지 교육 의무화 부재, 반려동물 사후 처리방식 개선 미비 등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 반려동물 영업업체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련 업종의 시장 규모 확대와 운영 과정 상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개선요인을 고려한 복지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영업업체 대상 교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 위주의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영업업체의 반려동물 복지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 전 사전 교육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의무감을 높이고 양육 중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 강조와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반려동물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소유자의 높은 관심도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연관산업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국민 체감형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 해외 주요국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검토한 결과 반려동물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돌봄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의 학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령 반려동물 관리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갈등 해소 및 장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 제언

- 영업업체, 반려동물 소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각 주체 간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요 분석 및 복지실태 조사 결과와 주요 현안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반려동물 복지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과 반려동물의 생애단계를 고려한 복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반려동물 복지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① 반려동물 법적 지위 향상 등 관계 법령 개선, ② 반려동물 복지 평가 지표 개발, ③ 반려동물 복지 관련 통계체계 구축, ④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 ⑤ 동물보호시설 설치 확대 및 입지 여건 개선, ⑥ 반려동물 복지 예산 확충, ⑦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연관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⑧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담조직의 기능 및 연계 강화 등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① 번식견, 번식묘의 출산연령 상한 제한 검토, ② 반려동물 입양 전후 소유자 교육 강화 및 등록 대상 확대, ③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④ 노령화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강화, ⑤ 반려동물 말소 규정 완화 및 동물장례 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Welfare Status and Improvement Task of Companion Animals

Background and purpose

- With demographic changes and an increase in households raising companion animals in the country, interest in pet welfare is rising,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companion animal welfare policies. Additionally, to effectively establish and implement companion animal welfare policies, it is essential to systematically and specifical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companion animal welfare-related aspec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in companion animal welfare by examining companion animal care businesses and pet-owning households amidst the growing importance of companion animal welfare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companion animals. By reviewing international cases and assessing the demand for companion animal welfare polici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tasks to enhance pet welfare in the country.

Research Methodology

- This study focuses on companion animal welfare, specifically limited

to dogs and cats as research subjects. First, a review of numerous previous studies on companion animal welfare was conducted, and statistical analysis of secondary data was utilized, centered on survey results from major related institutions.

-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companion animal welfare surveys conducted by other major institutions, this study secured its distinctiveness in investigating companion animal welfare. Surveys were conducted targeting companion animal businesses, companion animal owners, and non-owners.
- In addition, an in-depth review of companion animal welfare-related laws and systems in major countries (the UK, the US, and Japan) was conducted, and interviews were held with domestic legal experts to gather insights on specific legal aspects.
- Furthermore, to analyze the demand for companion animal welfare policie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businesses, companion animal owners, and experts to assess satisfaction and necessity levels regarding key polici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priority of companion animal welfare policies was derived using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Key Findings

- According to data from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imal protection refers to safeguarding animals from external factors such as abuse, with the caregiver as the primary agent. In contrast, animal welfare means "active care" centered on the animals themselves. In other words, animal welfare can be seen as an expanded concept of animal protection.

- Through the government's active promotion of companion animal welfare policies, the level of companion animal welfare in the country has significantly improved. In particular, with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n 2012, mandat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plan every five years, substantial outcomes were achieved through the First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Plan(2015–2019), announced in 2014, and the Second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Plan(2020–2024), announced in 2020. However, limitations remain, such as low pet registration rates, insufficient promotion of rehoming for lost and abandoned animals, the lack of mandatory welfare education for owners before adoption, and inadequate improvements in posthumous care for companion animals.
- Through the companion animal welfare survey conducted on companion animal care busines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identified. Firs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welfare infrastructur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xpanding market size of related industries and various welfare improvement factors that may arise during operations. Second, the education system for businesses needs

improvement. In particular, monitoring compliance with regular education requirements for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enhanced, and training should focus on practical, field-oriented content tailored to each industry. Third, strategies to improve welfare awareness among companion animal businesses and strengthen policy promotion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consideration of regulatory relaxation for certain sectors.

- Through the companion animal welfare survey conducted on pet-owning household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identified. First,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education for companion animal owners. In particular, a mandatory pre-adoption education requirement should be considered to enhance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companion animal care and prevent related in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companion animal ownership. Second, there is a need to promote the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system by emphasizing its importance and providing detailed related information. Third, a public consensus on the perspective of companion animal welfare and welfare improvement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companion animal owners demonstrate a high level of interest in various areas to improve pet welfare. Fifth, given companion animal owners' high interest in companion animal welfare, the infrastructure of related industries supporting welfare improvements should be strengthened. Sixth, welfare policies that the public can tangibly experience should be developed and promoted.

- A review of companion animal welfare-related laws and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hows that regulations on the production and sale of companion animals are increasingly stringent, and the scope of mandatory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is expanding. Additionally, caretakers' obligations for pet care are being reinforced, the definition of companion animal abuse is broadening, and measures against abuse are being strengthened. Alongside these trend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address the rising demand for elderly pet care and to resolve regional conflicts related to companion animal cremation facilities while meeting the growing demand for such services.

Policy Suggestions

- An analysis of companion animal welfare policy demand among businesses, companion animal owners, and experts revealed differences in policy priorities across these group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policy demand analysis, welfare survey findings, and key issues, companion animal welfare policies should focus on improving welfare systems and infrastructure, as well as advancing welfare measures tailored to the life stages of companion animals.
- To improve companion animal welfare systems and infrastructure, the following policy tasks should be pursued: ① improving relevant laws to enhance the legal status of companion animals, ② developing companion animal welfare assessment indicators, ③ establishing a

statistical system for companion animal welfare, ④ improving the veterinary care system for companion animals, ⑤ expanding and enhancing conditions for animal protection facilities, ⑥ increasing the budget for companion animal welfare, ⑦ building industry infrastructure through a regulatory sandbox, and ⑧ strengthening the roles and coordination of dedicated organizations with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To improve welfare according to the life stages of companion animals, the following policy tasks should be pursued: ① reviewing age limits for breeding dogs and cats, ② strengthening pre- and post-adoption education for owners and expanding the scope of mandatory registration, ③ promoting the rehoming of lost and abandoned animals, ④ enhancing care services for aging companion animals, and ⑤ relaxation of regulations on the expiration of companion animals and expansion of animal funeral services.

Researchers: JEONG Minkook, KIM Donghoon

Research period: 2024. 1. - 2024. 10.

E-mail address: mkjeo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3. 연구 범위와 방법	10
4. 연구 내용	12
5. 연구추진체계	13
제2장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 및 정책 현황	15
1.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	17
2. 국내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 현황	23
제3장 반려동물 영업업체 복지실태	69
1. 영업업체 현황	71
2. 영업업체 조사 개요	74
3. 영업업체 조사 결과	76
4. 시사점	92
제4장 반려동물 양육 가구 복지실태	95
1. 양육 가구 조사 개요	97
2. 양육 가구 조사 결과	100
3. 시사점	149
제5장 해외 반려동물 복지 정책 및 시사점	155
1. 영국	157
2. 미국	163

3. 일본	169
4. 시사점	175
제6장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과제	179
1.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분석 및 개선 방향	181
2.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96
부록	
1. 반려동물 영업업체 설문조사표	209
2.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표	219
3. 반려동물 복지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표	238
참고문헌	243

표 차례

제1장

〈표 1-1〉 국내 인구 구조 추이(2010~2023년)	3
〈표 1-2〉 인구증가율 및 고령인구 비중(2010~2023년)	4
〈표 1-3〉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추이(2010~2023년)	4
〈표 1-4〉 연구 관련 조사 개요	12

제2장

〈표 2-1〉 동물복지의 부문별 주요 내용	18
〈표 2-2〉 반려동물 복지의 주요 필요사항	19
〈표 2-3〉 EU와 주요 회원국의 헌법상 동물의 지위 규정 내용	24
〈표 2-4〉 우리나라 반려동물 지위 관련 법률 및 벌칙조항	26
〈표 2-5〉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	29
〈표 2-6〉 동물 학대 금지 위반 시 벌칙	30
〈표 2-7〉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관련 주요 조항	30
〈표 2-8〉 국내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	32
〈표 2-9〉 동물보호·복지종합대책의 주요 추진과제	35
〈표 2-10〉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관련 영업 및 보호시설 분류	45
〈표 2-11〉 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46
〈표 2-12〉 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영업장 준수사항	49
〈표 2-13〉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51
〈표 2-14〉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51
〈표 2-15〉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52
〈표 2-16〉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53
〈표 2-17〉 동물 운송·전시·위탁관리·미용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55
〈표 2-18〉 동물 운송·전시·위탁관리·미용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56
〈표 2-19〉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개별시설별 구비 요건	58
〈표 2-20〉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	59

〈표 2-21〉 동물장묘업의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60
〈표 2-22〉 반려동물 복지 관련 예산	61
〈표 2-23〉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 지원사업 예산	62
〈표 2-24〉 반려동물 산업 육성사업 예산	63
〈표 2-25〉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사업 예산	63
〈표 2-26〉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예산	64
〈표 2-27〉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65
〈표 2-28〉 반려견 양육 마릿수 및 등록 현황	66
〈표 2-29〉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및 재입양률	67

제3장

〈표 3-1〉 반려동물 영업업체 현황	73
〈표 3-2〉 반려동물 영업업체 종사자 수 현황	73
〈표 3-3〉 기존 반려동물 영업업체 조사 개요	74
〈표 3-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체 설문조사 주요 내용	76
〈표 3-5〉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지역별 분포	76
〈표 3-6〉 반려동물 영업업체 일반 현황	77
〈표 3-7〉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해당 업종 수	78
〈표 3-8〉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주력 업종	78
〈표 3-9〉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취급 동물	79
〈표 3-10〉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숙지 여부	79
〈표 3-11〉 반려동물 영업업체 내 주요 시설 보유율	80
〈표 3-12〉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평균 근무 인력	80
〈표 3-13〉 영업업체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	81
〈표 3-14〉 영업업체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 평균 비율	81
〈표 3-15〉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향후 시장 규모 전망	82
〈표 3-16〉 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83
〈표 3-17〉 영업자의 영업 전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율	83

〈표 3-18〉 영업자의 영업 전 의무교육에 대한 만족도	84
〈표 3-19〉 영업자의 정기교육 이수 비율	84
〈표 3-20〉 영업자의 정기교육에 대한 만족도	85
〈표 3-21〉 영업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경험 여부	85
〈표 3-22〉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영업업체)	86
〈표 3-23〉 사람 및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영업업체)	88
〈표 3-24〉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영업업체)	89
〈표 3-25〉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영업업체)	89
〈표 3-26〉 ‘루시법’에 대한 인지 여부	90
〈표 3-27〉 ‘루시법’의 국내 도입 의향	90
〈표 3-28〉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인지도(영업업체)	91
〈표 3-29〉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만족도(영업업체)	91
〈표 3-30〉 반려동물 업종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인식	92
〈표 3-31〉 영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92

제4장

〈표 4-1〉 주요 기관별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 비교	98
〈표 4-2〉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100
〈표 4-3〉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101
〈표 4-4〉 응답자 일반 현황	101
〈표 4-5〉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 종류	102
〈표 4-6〉 반려동물 일반 현황	103
〈표 4-7〉 반려동물 생애단계 구분	104
〈표 4-8〉 조사 대상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비율	105
〈표 4-9〉 반려동물 입양 경로	105
〈표 4-10〉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 교육 이수 여부	106
〈표 4-11〉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 수준	107
〈표 4-12〉 동물등록제의 필요성	107

〈표 4-13〉 반려동물 등록 현황	107
〈표 4-14〉 반려묘 소유자의 동물등록에 대한 만족도	108
〈표 4-15〉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 현황	108
〈표 4-16〉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만족도	108
〈표 4-17〉 반려동물 미등록 이유	109
〈표 4-18〉 향후 반려동물 등록 의향	109
〈표 4-19〉 향후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 선호도	109
〈표 4-20〉 반려동물 양육 비용 지출 부담 수준	110
〈표 4-21〉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 비용	111
〈표 4-22〉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양육 비용 지출 부담 수준	113
〈표 4-23〉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월평균 양육 비용	114
〈표 4-24〉 과거 반려동물 양육 경험 여부	115
〈표 4-25〉 과거 양육 반려동물 종류	115
〈표 4-26〉 과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만족도	116
〈표 4-27〉 반려동물 미양육 이유	116
〈표 4-28〉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의향	117
〈표 4-29〉 향후 양육 의향이 있는 반려동물 종류	117
〈표 4-30〉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소유자 및 미소유자)	118
〈표 4-31〉 사람 및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소유자 및 미소유자)	119
〈표 4-32〉 소유자 및 반려동물의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120
〈표 4-33〉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소유자 및 미소유자)	121
〈표 4-34〉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소유자 및 미소유자)	121
〈표 4-35〉 동물 학대 행위 목격 경험	122
〈표 4-36〉 동물 학대 행위 목격 이후 관련 기관 신고 경험	122
〈표 4-37〉 동물 학대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견해	122
〈표 4-38〉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인지도(소유자 및 미소유자)	123
〈표 4-39〉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만족도(소유자 및 미소유자)	123
〈표 4-40〉 반려동물의 영양 섭취에 대한 관심도	124

〈표 4-41〉 반려동물의 주요 섭취 식품	125
〈표 4-42〉 반려동물의 먹이 급여 방식	125
〈표 4-43〉 반려동물의 식습관 수준	126
〈표 4-44〉 반려동물 먹이의 영양수준	126
〈표 4-45〉 먹이 제공 시 품종 및 생애단계 고려 수준	127
〈표 4-46〉 먹이 제공 시 건강요인 고려 수준	127
〈표 4-47〉 주기적 간식 제공 여부	127
〈표 4-48〉 반려동물 섭취 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	128
〈표 4-49〉 사료 및 간식 제품의 원산지 선호도	128
〈표 4-50〉 기능성 펫푸드 제공 여부	129
〈표 4-51〉 평소 수분 섭취 정도	129
〈표 4-52〉 반려동물의 생활환경 수준	130
〈표 4-53〉 반려동물 양육 장소	130
〈표 4-54〉 실내외 양육 장소 내 반려동물 휴식공간 유무	131
〈표 4-55〉 실외 양육 시 목줄 착용 여부	131
〈표 4-56〉 반려동물 휴식공간의 월평균 청소 횟수	131
〈표 4-57〉 반려동물 관련 생활용품 보유 현황	132
〈표 4-58〉 반려동물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도	132
〈표 4-59〉 반려동물에 대한 주기적 건강검진 여부	133
〈표 4-60〉 반려동물에 대한 주기적 필수 예방접종 여부	133
〈표 4-61〉 반려동물의 질병 및 상해 경험 여부	134
〈표 4-62〉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한 동물병원 이용 여부	134
〈표 4-63〉 동물병원 이용 만족도	134
〈표 4-64〉 동물병원 미이용 이유	135
〈표 4-65〉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인지도	136
〈표 4-66〉 반려동물 보험의 중요성 및 필요성	136
〈표 4-67〉 반려동물 보험 가입 여부	137
〈표 4-68〉 반려동물 보험의 평균 가입 기간 및 월평균 보험료	137

〈표 4-69〉 반려동물 보험 만족도	137
〈표 4-70〉 향후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향	138
〈표 4-71〉 향후 반려동물 보험 가입 예상 시기	138
〈표 4-72〉 반려동물 죽음에 대한 경험 여부	139
〈표 4-73〉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139
〈표 4-74〉 사망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여부	140
〈표 4-75〉 사망한 반려동물의 말소 신고 여부	140
〈표 4-76〉 향후 반려동물 사망 시 사체 처리 방법	140
〈표 4-77〉 반려동물의 행동 수준	141
〈표 4-78〉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훈련 경험 여부	141
〈표 4-79〉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훈련 결과의 만족도	142
〈표 4-80〉 반려견의 주기적 산책 여부	142
〈표 4-81〉 반려견의 평균 산책 횟수 및 시간	142
〈표 4-82〉 반려견의 외부 산책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143
〈표 4-83〉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관심도	143
〈표 4-84〉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 수준	144
〈표 4-85〉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 정도	144
〈표 4-86〉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	145
〈표 4-87〉 양육 장소 내 상황 확인을 위한 장비 사용 여부	145
〈표 4-88〉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 불안정 수준	145
〈표 4-89〉 취침 시 양육자와의 동침 여부	146
〈표 4-90〉 동침을 통한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감	146
〈표 4-91〉 반려동물과의 동반 여행 선호도	147
〈표 4-92〉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이용(1박 2일 이상) 경험 여부	147
〈표 4-93〉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만족도	148
〈표 4-94〉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미이용 이유	148

제5장

〈표 5-1〉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과 주요 내용	158
〈표 5-2〉 영국의 동물 학대 규정과 벌칙	160
〈표 5-3〉 미국 「동물복지법」에 따른 사업체의 면허(허가) 및 등록대상	164
〈표 5-4〉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용 면허 종류	166
〈표 5-5〉 미국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PACT)」 대상 행위와 처벌 내용	168
〈표 5-6〉 일본 「동물애호관리법」의 구성 체계	169
〈표 5-7〉 일본 「동물애호관리법」 내 제1종 동물취급업의 유형 및 주요 내용	171
〈표 5-8〉 제1종 동물취급업자의 준수사항	174
〈표 5-9〉 일본의 동물 학대 규정과 벌칙	174
〈표 5-10〉 국내외 반려동물 복지 제도 및 정책 비교	178

제6장

〈표 6-1〉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	183
〈표 6-2〉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영업업체)	184
〈표 6-3〉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영업업체)	185
〈표 6-4〉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소유자)	187
〈표 6-5〉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소유자)	188
〈표 6-6〉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전문가)	190
〈표 6-7〉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전문가)	191
〈표 6-8〉 반려동물 복지 관련 우선순위 정책 비교	194
〈표 6-9〉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증 특례 현황	203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14
------------------------	----

제2장

〈그림 2-1〉 동물복지의 다섯 가지 영역	20
〈그림 2-2〉 동물보호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22
〈그림 2-3〉 동물복지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22
〈그림 2-4〉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체계	36
〈그림 2-5〉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37
〈그림 2-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38
〈그림 2-7〉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0
〈그림 2-8〉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비전 및 전략	42
〈그림 2-9〉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비전,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44

제5장

〈그림 5-1〉 일본의 개, 고양이 수입검역 수속 절차(광견병 비청정국)	173
〈그림 5-2〉 일본의 개, 고양이 수입검역 수속 절차(광견병 청정국)	173

제6장

〈그림 6-1〉 The Locus for Focus 모델	182
〈그림 6-2〉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영업업체) ..	186
〈그림 6-3〉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소유자) ..	189
〈그림 6-4〉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전문가) ..	192
〈그림 6-5〉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203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고 고령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인 및 2인 가구 수 비율은 동기간 48.2%에서 64.3%로 증가하였다.

〈표 1-1〉 국내 인구 구조 추이(2010~2023년)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총인구(만 명)	4,955	5,101	5,184	5,177	5,167	5,171
합계 출산율(명)	1.23	1.24	0.84	0.81	0.78	0.72
인구성장률(%)	0.50	0.53	0.14	-0.13	-0.19	0.08
65세 이상 비중(%)	10.8	12.8	15.7	16.6	17.4	18.2

자료: 통계청(KOSIS)(<https://kosis.kr/index/index.do>), 장래인구추계, 검색일: 2024. 1. 10.

〈표 1-2〉 인구증가율 및 고령인구 비중(2010~2023년)

단위: 천 가구(%)

구분		2010	2015	2018	2020	2022	2023
일반 가구		17,339 (100.0)	19,111 (100.0)	20,927 (100.0)	21,448 (100.0)	21,774 (100.0)	22,073 (100.0)
가구원 수	1인	4,142 (23.9)	5,203 (27.2)	6,643 (31.7)	7,166 (33.4)	7,502 (34.5)	7,829 (35.5)
	2인	4,205 (24.3)	4,994 (26.1)	5,865 (28.0)	6,077 (28.3)	6,261 (28.8)	6,346 (28.8)
	3인	3,696 (21.3)	4,101 (21.5)	4,201 (20.1)	4,170 (19.4)	4,185 (19.2)	4,195 (19.0)
	4인	3,898 (22.5)	3,589 (18.8)	3,271 (15.6)	3,154 (14.7)	3,011 (13.8)	2,926 (13.3)
	5인 이상	1,398 (8.1)	1,224 (6.4)	947 (4.5)	882 (4.1)	815 (3.7)	777 (3.5)

자료: 통계청(KOSIS)(<https://kosis.kr/index/index.do>), 인구총조사, 검색일: 2024. 1. 10.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28.2%이며, 2010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종류별 양육 비중은 개가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양이 27.7%, 물고기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기준).¹⁾

〈표 1-3〉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추이(2010~2023년)

단위: %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비율	17.4	21.8	27.7	25.9	25.4	28.2	3.8

주: 2020년까지는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기르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산출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응답자의 거주지에서 직접 기르고 있는 경우'만 반려동물 양육 비율로 정의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 2022년 기준 개와 고양이의 양육 마릿수는 총 799만 마리(개 545만 마리, 고양이 254만 마리)로 추정된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및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성장하고 있으며,²⁾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48번) 목표 중 하나인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 6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을 포함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고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5년마다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 복지 강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설정된 내용과 함께 반려동물의 복지실태 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복지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³⁾

그러나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실태조사는 기초통계 자료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의료, 안전관리, 유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생산·입양부터 장례까지 생애

2) 농림축산식품부(2023)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주요 조사 내용은 반려동물 등록 현황,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구조 현황, 반려동물 영업업체 운영 현황,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 등으로 주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별로 복지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일례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물 장례 문화가 보편화되어 매장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물 매립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반려동물 복지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있지만,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복지실태 파악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복지 관련 항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도출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 영업업체 및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연구를 위해 반려동물 복지 관련 주요 해외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 관련 주체(영업업체, 소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려동물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들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고 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동물 복지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반려동물 복지 개선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연구와 반려동물 복지 관련 통계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반려동물 복지 관련 이용 가능한 기초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1. 반려동물 복지 관련 연구

김선희(2013)는 반려동물 관련 입양, 사료·용품, 서비스(동물병원, 미용, 돌봄) 등에 대한 소비실태 조사를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비 기준 정보 제공, 반려동물 구입 계약서 제공 의무 강화,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서비스 내용 및 요금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인지(2014)는 세계 동물복지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전 세계 동물복지 기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를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동물보건기구는 동물복지를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동물의 5대 자유(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 1993)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4) 2023년 조사부터 조사의 명칭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로 변경되었다.

유기영·이종찬(2016)은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가칭)의 기능 및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동물복지지원시설 사례를 검토하고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및 효과를 제시하였다.

전상곤 외(2017)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조직 구축을 위해 국내 조직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법률 세분화,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국(가칭)’ 신설, 지자체 부서에 동물보호·복지 전담 조직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충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소비자원(2019)은 반려동물 판매업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 이상, 계약 불이행, 계약해제/위약금, 부당행위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약서 기재 관리·감독 강화 요청 및 표준약관 마련 검토, 온라인 홈페이지 정보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확인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김현중 외(2019)는 국내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등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등을 검토하고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입양단계의 문제점으로 반려동물의 상업적 생산 논란을 지적하고 동물 판매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반려동물 유통규제 강화 차원에서 반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양육단계의 문제점으로 낮은 등록률을 지적하고 동물등록제의 개선과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및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후단계의 문제점으로 동물 사체의 불법 매립 등을 지적하고 동물 사체 처리 방법 개선과 공공 동물 장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는 연관산업 활성화와 함께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영대(2016)와 지인배 외(2017)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 중 이영대

(2016)는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및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법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인배 외(2017)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및 전망치를 추정하고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김현희(2017)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해 국내외 반려동물 현황 및 제도를 제시하고 반려동물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입법 방향을 제안하였다.

황윤재 외(2023)는 펫푸드 산업에 대한 국내외 여건 및 환경 변화와 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펫푸드 구입 행태와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펫푸드 산업 육성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용건 외(2024)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조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국내외 통계자료 및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국내 반려동물 양육자 및 미양육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대상, 조사 영역 및 항목, 조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3.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선행연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관점에서 과제 도출과 발전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반려동물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특히, 반려동물의 복지실태 파악은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연구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주요 분야별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시사점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반려동물의 복지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실

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는 점도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하면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의미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에 의하면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⁵⁾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취급 규모 및 양육 가구의 양육 규모와 연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 범위를 ‘개(반려견)’와 ‘고양이(반려묘)’로 한정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실태 파악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이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미소유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 분야 전문가를 추가적인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반려동물 복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연구 내용은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검토, 복지실태 조사, 해외 사례 분석,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 수요조사 등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다만,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필수 기반이므로 펫푸드, 펫용품, 펫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서비스 등 일부 연관산업 관련 문항이 일부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며, 필요시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책 자료를 일부 참고하였다.

3.2. 연구 방법

먼저,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복지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주요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차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기관에서 수행된 반려동물 복지실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의 복지실태 조사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반려동물 복지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반려동물 영업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 영업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영국, 미국,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심층 검토하였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부 법적 내용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영업업체, 소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표 1-4〉 연구 관련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조사 현황	주요 조사 내용
반려동물 영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기간: 2024. 8. 26. ~ 9. 24. ■ 조사 방법: 조사 전문기관 위탁조사 ■ 조사 대상: 7개 업종 영업업체 300개소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일반 현황 ■ 시설 및 인력 현황 ■ 영업자 교육 ■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반려동물 소유자/미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기간: 2024. 7. 16. ~ 8. 14. ■ 조사 방법: 조사 전문기관 위탁조사 ■ 조사 대상: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 1,500 (소유자 1,000명, 미소유자 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현황 ■ 반려견 및 반려묘 양육 현황 ■ 미소유자 의향 ■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 반려견 및 반려묘 복지실태 ■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반려동물 복지 분야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기간: 2024. 9. 12. ~ 9. 26. ■ 조사 방법: 연구진 직접(이메일) 조사 ■ 조사 대상: 전문가 26명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지자체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자료: 연구진 작성.

4.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과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과 반려동물 보호와의 차이점을 정리한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논의 현황과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그동안 추진된 반려동물 복지 관련 국내 주요 정책들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영업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영업업체의 반려동물 복지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복지실태 및 미소유자를 포함한 반려동물 복지 인식조사 결과를 분

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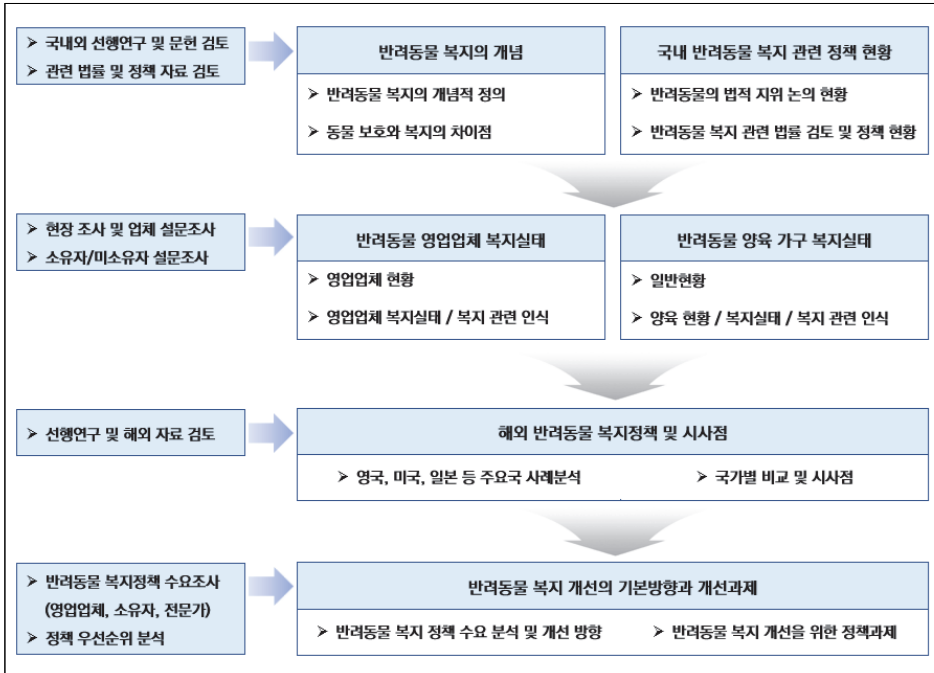
제5장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관리 및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라 할 수 있는 영업업체와 소유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 수요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 결과, 반려동물 복지 정책 관련 주요 현안, 해외사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5.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반려동물 복지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장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 및 정책 현황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 및 정책 현황

1.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

1.1. 개념적 정의

우리나라 반려동물 복지의 근간이 되는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 등에 대한 정의(제2조)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제3조)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나 내용은 부재하다. 다만, 반려동물과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의미하며,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동물 학대의 정의는 반려동물의 복지적 관점이라기보다는 보호적 관점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동물복지는 개별동물의 종류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각 사례별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영국 동물복지기금(The Animal Welfare Foundation)에 따르면

동물복지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개별동물의 감정(feelings)과 신체적 안녕(physical wellbeing)을 의미하며, 일부 개념에 자연스러움(naturalness)이 포함되기도 한다. 영국 동물복지기금은 여러 참고문헌을 통해 다양한 동물복지의 정의와 개별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와 욕구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동물복지를 ‘개별동물의 몸과 마음의 상태, 그 본성 정도’로 정의하거나, ‘개별동물의 생물학적 본성에 부합해서 살 수 있는 자유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표 2-1〉 동물복지의 부문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영역 (domains)	① 영양, ② 환경, ③ 건강, ④ 행동, ⑤ 정신 상태
자유 (freedoms)	① 배고픔과 목마름, ② 불편감, ③ 통증, ④ 두려움과 괴로움, ⑤ 정상적 행동 표현 등의 자유
욕구 (needs)	① 적절한 환경, ② 적절한 식단, ③ 정상적 행동 패턴 구현, ④ 다른 동물과 함께 또는 따로 살 수 있는 것, ⑤ 고통, 괴로움, 부상,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 등의 욕구

자료: The Animal Welfare Foundation(2020), What is the Animal Welfare?

영국의 「동물복지법(The Animal Welfare Act, 2006)」 제9조는 동물복지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또는 사육자에게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① 건강, ② 행동, ③ 동반자관계, ④ 식사, ⑤ 환경 등 다섯 가지 복지 필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DEFRA)는 시행령을 마련하여 동물복지법을 지원하고 소유자와 사육자에게 동물복지 필요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2-2〉 반려동물 복지의 주요 필요사항

복지 필요 항목	주요 내용
건강 (Health)	고통, 상처, 괴로움,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치료
행동 (Behavior)	종족에 맞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능력 즉 놀고, 달리고, 파고, 점프하고, 날고 등
동반자관계 (Companionship)	종에 따라 다른 동물과 함께 또는 별도로 사육되어야 함. 즉, 토끼나 기니피그와 같은 사교적인 종의 경우 무리 사육, 햄스터와 같은 고독한 종을 위한 단독 사육이 가능해야 함.
식사 (Diet)	적합한 다이어트. 여기에는 반려동물의 생애단계에 적합한 먹이 주기, 비만이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적절한 양의 먹이 주기,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 포함되어야 함.
환경 (Environment)	적합한 환경. 여기에는 휴식하고 숨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는 물론 운동하고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올바른 유형의 집이 포함되어야 함.

자료: 영국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 제9조.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WOAH)는 동물복지의 개념을 ‘동물이 살고 죽는 조건과 관련된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⁶⁾ 동물복지는 동물 학대와 구분되며, 다섯 가지 영역에 의해 평가된다. 다섯 가지 영역은 ① 영양(nutrition), ② 정신 상태 및 경험(mental health /experiences), ③ 행동 상호작용(behavioural interactions), ④ 건강(health), ⑤ 환경(environment)이며, 다섯 가지 영역은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동물 종의 복지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정의는 동물의 5대 자유(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 1993)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6) 세계동물보건기구(<https://www.woah.org/en/what-we-do/standards/codes-and-manuals/terrestrial-code-online-access/?id=169&&L=1&&htmlfile=glossaire.htm>), 검색일: 2024. 2. 2.

7) 세계동물보건기구(<https://rr-africa.woah.org/app/uploads/2024/09/10.-STUARDO.pdf>), 검색일: 2024. 2. 2.

〈그림 2-1〉 동물복지의 다섯 가지 영역



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https://rr-africa.woah.org/app/uploads/2024/09/10.-STUARDO.pdf>),
검색일: 2024. 2. 2.

1.2. 동물보호와 복지의 차이점

사전적 의미로 ‘보호’란 위험이나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살핀다는 의미이며,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동물 이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에 따르면 동물보호는 ‘동물을 재산과 같이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며, ‘동물을 잘 보살펴 돌보는’ 정도의 책무를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복지는 ‘보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물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또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두 개념은 ‘동물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동물보호는 ‘지켜주는 사람’이 주체이고 여기서 동물은 보호의 객체이자 의존하는 대상이 된다. 반면 동물복지는 동물보호와 동물권 가운데에

8)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2017. 11. 25.), “[칼럼]동물권을 아시나요?”.

존재하는 개념으로 복지를 누리는 주체를 동물 자체로 보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⁹⁾ 일본에서도 동물보호는 양육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 즉, 동물보호는 동물 학대, 유실, 유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복지는 개별동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 동물보호는 모든 동물에게 이익이 되는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동물복지는 더욱 점진적인 접근 방식으로 간주되는 반면, 동물보호는 혁신적인 변화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¹¹⁾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뉴스 분석¹²⁾을 이용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키워드(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 관련 키워드는 ‘유기견’, ‘길고양이’, ‘안락사’, ‘잔혹’, ‘불구속 입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복지’ 관련 키워드는 ‘친환경’, ‘지속 가능’, ‘반려인’, ‘사육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는 유기동물, 동물 학대, 잔혹 행위 등과 관련된 동물이 직면하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는 단순히 학대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닌 환경적,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동물보호는 양육자가 주체가 되어 학대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며, 동물복지는 해당 동물이 주체가 되어 동물에 대한 ‘적극적 돌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복지는 동물보호를 확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9)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2019),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 제8편 동물의 권리.
10) 動物愛護と動物福祉は別物だよ(<https://doubutuhukusi.com/animal-welfare-difference/>), 검색일: 2024. 5. 9.
11) Broom(2006), Introduction -Concepts of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including obligations and rights, Animal Welfare. Ethical Eye Serie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12) 뉴스 분석을 위해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언론사는 전국일간지, 통합 분류는 스포츠, IT_과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분석하였다.

〈그림 2-2〉 동물보호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뉴스 분석, 검색일: 2024. 10. 3.을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2-3〉 동물복지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자료: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뉴스 분석, 검색일: 2024. 10. 3.을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동물복지의 개념을 반려동물에 적용하여 반려동물 중심의 ‘적극적 돌봄’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만, ‘적극적 돌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특정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양육 가구를 중심으로 영국 동물복지기금과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물복지의 다섯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복지실태를 파악하였다. 즉, ① 반려동물의 영양 섭취 실태, ② 반려동물 양육 장소의 생활환경 실태, ③ 반려동물의 건강 및 의료실태, ④ 반려동물의 일상적인 활동 실태, ⑤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 및 경험을 통한 소유자와의 상호작용 실태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2. 국내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 현황

2.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논의 현황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함태성, 2022). 현행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의하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¹³⁾ 즉, 현행법은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2021년 10월 법무부는 「민법」상 물건 규정(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안 제98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다.¹⁴⁾ 이는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되어 사회적 인식 변화 반영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김도훈, 2022).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움직임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9년 비준된 EU의 리스본 조약¹⁵⁾ 13조에 의하면 동물은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식되고 있고 모든 정책결정자는 동물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리스본 조약을 계기로 EU 회원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민법」 등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과 더불어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¹⁶⁾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적 규정을 지닌 사례로는 ‘오스트리아 「민법」 제285a조(1988년), 독일 「민법」 제90a조(1990년) 및 「헌법」 제20조a,¹⁷⁾ 스위스 「민법」 제614a조(200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민법, 검색일: 2024. 1. 8.

14) 한겨레(2023. 5. 3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대통령이 힘실은 민법개정안...2년째 표류”.

15) 리스본 조약은 EU가 마련한 조약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2005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유럽연합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조약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내부 통합을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간소 헌법의 성격을 지닌다.

16) 한국일보(2022. 8. 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은 시작.. 보호자 의무도 강화해야”.

년), 네덜란드 「민법」 제3:2a조(2011년), 리히텐슈타인 「물권법」 제20a조(2003년), 체코 「민법」 제494조(2012년), 캐나다 「퀘벡주민법」 제898.1조(2015년) 등' 이 있다. 또한 '동물은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부분이 고려된 사례로는 '프랑스 「민법」 제515-14조(2015년), 포르투갈 「민법」 제201조(2016년), 콜롬비아 「민법」 제655조(2016년), 벨기에 「민법」 제3.38, 3.39조(2020년) 등'이 있다(함태성, 2022).

〈표 2-3〉 EU와 주요 회원국의 헌법상 동물의 지위 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유럽연합(EU)	EU 리스본 조약 13조, 동물은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 동물복지의 필요성 강조
독일	2002년 독일 「연방기본법」 제20조a에 국가의 '동물보호 책임' 명시
스위스	2000년 스위스 「연방헌법」 제80조에 '동물복지 일반조항' 명시, 제120조 제2항에 '생명체의 존엄' 고려, 동물의 유전적 다양성 보호 의무 명시

자료: 함태성(2021).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은 동물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동물보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통해 동물을 「민법」상 물건의 지위가 아닌 제3의 지위 인정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별도의 동물보호 조항이 없다. 다만, 동물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2013. 10. 24. 선고 2012헌바431)에 의하면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조항을 동물보호를 위한 헌법의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동물의 재산권 제한이 공익의 비중에 비해 크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

17) 독일 헌법인 연방기본법 제20조a,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생활환경과 동물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고 보호해야 한다(김정욱·김정규, 2020).

〈글상자 2-1〉 헌법재판소의 동물재산권과 동물보호 관련 결정 내용

우리 헌법은 환경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식물계를 비롯하여, 공기, 물, 토양, 기후, 경관 등 자연적 생활근거, 즉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물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생명체로서 인류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생태계와 그 서식환경을 보존해야 할 공동의 필요성이 있다.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은 외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중략). 멸종위기종의 멸종예방과 서식환경보호라는 입법목적은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중략). (동물)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헌재결정례정보, 검색일: 2024. 5. 1.

반면,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동물의 물건성’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성 각하결정을 한 사례(헌법재판소 2017. 10. 19., 2017헌마 1111결정; 헌법재판소 2019. 9. 26., 2018헌바221결정)가 있다. 2019년 법무부에서 제안한 민법개정안 제98의 2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적 논란이 해소될지가 주목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헌법에 동물의 지위나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동물의 지위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있듯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죽은 동물, 즉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조 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라

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제 5항에 의하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 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을 해치면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이는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 학대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 2-4〉 우리나라 반려동물 지위 관련 법률 및 벌칙조항

구분	동물 지위	벌칙조항
「동물보호법」	동물	동물 학대 및 유기 시 징역 또는 벌금
「민법」 제39조	유체물(물건)	보험 가입 시 손해보험만 가입 가능
「형법」 제366조	재물	동물 훼손 시 재물손괴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일반쓰레기	무단 투기 시 범칙금
「폐기물관리법」 동물 사체	생활폐기물	무단 매립 시 과태료
	의료폐기물	위반내역에 따라 과태료, 징역, 벌금 등 다양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각 법률, 검색일: 2024. 5. 1.

2.2.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률 검토

국내의 대표적인 반려동물 관련 법은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제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에는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중 반려동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총칙(제1장),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3장), 반려동물 영업(제6장), 보칙(제7장), 벌칙(제8장) 등이다.

먼저, 총칙(제1장)에는 법의 목적(제1조), 반려동물 등에 대한 정의(제2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제3조),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4조) 등

이 포함되며, 보칙(7장)에는 반려동물 보호 복지 등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제94조),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제95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벌칙(제8장)에는 반려동물의 등록, 동물 학대 금지 등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제2장)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①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②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 사항, ③ 동물 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 사항, ④ 반려동물 관련 영업 사항, ⑤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 사항, ⑥ 동물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항, ⑦ 종합계획 추진 재원 조달 방안 ⑧ 그 밖에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필요사항 등이 포함된다. 종합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3장)와 관련하여 적절한 사육·관리(제9조), 동물의 운송(제11조), 동물의 도살 방법(제13조) 등은 주로 농장동물과 관련된 내용이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은 동물 학대 금지(제10조), 반려동물의 전달 방법(제12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관리(제15, 16조), 맹견의 관리 등(제2절),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등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업(제3절), 그리고 동물의 구조 및 보호(제4절) 등이다. 반려동물 학대 금지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10조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하는 행위, 동물 학대 사진 판매 및 전시, 도박목적 광고 선전, 경품으로 동물 제공, 영리 목적 동물대여 등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해야 한다. 동물의 등록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동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등록대상 동물이다.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법 제34조에 의거,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실, 유기, 피학대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학대동물 등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반려동물 영업(제6장)의 허가 및 등록과 관련하여 동법 제69조에 의해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3조에 따라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동물장묘업의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동법 제72조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 지역,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업자가 휴업 및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제76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휴업 및 폐업의 경우 30일 전에 보유 중인 동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처리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장은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영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거나 유기한 경우, 동물의 안전 및 보호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제84조에 의거하

여 영업정지 처분이 동물과 이용자에게 곤란을 야기하거나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제85조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도 있다.

〈표 2-5〉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 및 등록

구분	영업 및 휴업·폐업
허가(제69조)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영업
등록(제73조)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영업
신고(제76조)	휴업 및 폐업, 영업 재개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동물보호법」 벌칙조항(제8장)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동물 학대 금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반사항별로 벌칙 내용을 제 97조에 명시하고 있다.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동물 학대 사진을 판매 및 전시하는 경우, 도박 목적 광고 선전, 경품으로 동물 제공, 영리 목적 동물대여 등을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금지 조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정해진 벌칙의 1/2까지 가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벌칙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태료(제101조)를 부과하고 있다. 맹견 수입 미신고자 및 소유자 없이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난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전달 방법 위반자,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 미고지자, 사체 처리 미신고자, 반려동물 영업 미등록자, 영업자의 정기교육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의 추가 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판매 영업자, 목줄 미착용·인식표 미부착 소유자, 배설물 미수거자 등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 2-6〉 동물 학대 금지 위반 시 벌칙

구분	벌칙 내용
죽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기	300만 원 이하 벌금
학대 사진 또는 영상물 판매, 전시, 인터넷 게재	
도박목적 광고 선전 행위	
경품으로 동물 제공	
영리 목적 동물 대여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표 2-7〉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관련 주요 조항

구분	주요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5호).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동물복지종합 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동물복지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8호).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동물 학대 행위 금지 관련 조항(제1~5항)
	제12조 (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 등록 관련 조항(제1~7항)
	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등록대상동물 관리 관련 조항(제1~3항)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맹견 관리 관련 조항(제17~29조)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조항(제30~33조)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련 조항(제34~46조)

(계속)

구분	주요 조항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69조 (영업의 허가)	반려동물 영업 허가업종 관련 조항(제1~4항)
	제71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공동물장묘시설 운영 관련 조항(제1~3항)
	제72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관련 조항(제1~2호)
	제73조 (영업의 등록)	반려동물 영업 등록업종 관련 조항(제1~4항)
	제76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영업자의 휴업·폐업·영업 재개 관련 조항(제1~4항)
	제7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조항(제1~6항)
제7장 (보칙)	제94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반려동물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관련 조항(제1~4항)
	제95조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물보호정보의 수집·관리·활용 관련 조항(제1~7항)
제8장 (벌칙)	제97~101조	동물 보호 위반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병과, 과태료 관련 조항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2.3.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2.3.1. 추진 배경 및 과정

국내 동물복지 정책의 추진 배경은 유럽연합(EU)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분야의 국제 규범화라 할 수 있다. 2004년 유럽연합(EU)의 헌법상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 명문화 추진, 2006년 EU 집행위원회의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계획(2006~2010)’ 공표·시행, 세계무역기구(WTO)의 동물복지 NTC(Non-trade Concerns) 의제화 추진,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OIE, 現세계동물보건기구)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채택(2005~2006) 등 대외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개정(2007. 1.)하고 2008년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200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

한 보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¹⁸⁾ 특히, 2011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5년 단위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현재 동법 제2장 제6조에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표 2-8〉 국내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EU) 헌법에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 명문화 추진(2004) ■ EU 집행위원회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 발표(2006. 1.) ■ WTO 동물복지의 NTC 의제화 추진 ■ OIE 총회(05-06)에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채택 ■ 국내 「동물보호법」 개정(2007. 1.), 동물보호 복지 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7월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발표 ■ 2014년 12월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 발표 ■ 2016년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발표 ■ 2020년 1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 발표 ■ 2022년 12월 '동물복지 강화방안' 발표 ■ 2023년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7), 동물보호·복지종합대책 수립계획(안) 및 주요 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8) 202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상자 2-2〉 「동물보호법」 내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항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2008년 발표된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은 이후 수립될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 등 총 2차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동물복지 종합계획과는 별도로 2016년 반려동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에는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2023년에는 동물복지 개선의 기반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2.3.2. 주요 추진내용

가.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2008년 추진된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은 동물의 보호·복지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 정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 대책에서는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대책으로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과 유기동물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산·유통단계의 관리체계 구축, 사육단계의 관리체계 구축, 유기 동물보호 관리의 체계화, 동물 사체 처리체계 구축, 그리고 동물 소유자를 위한 배려 및 소유자·미소유자 간 이익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 보호·복지 대책의 기본방향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역점을 두었다. 반려동물 생산·유통단계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반려동물 입양가정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동물 사체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였다. 한편, 신규 도입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유기동물 보호 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증성화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 간 이익 조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테마공원 시범 조성을 검토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표 2-9〉 동물보호·복지종합대책의 주요 추진과제

구분	추진과제
동물 학대 감시 시스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학대 신고 처리시스템 체계화 ▪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 동물 학대 감시시스템의 종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 보호·복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유통단계 관리체계 구축: 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 ▪ 사육단계 관리체계 구축: 동물등록제 도입 ▪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체계화 ▪ 동물 사체 처리체계 구축: 동물장묘업 등록제 도입 ▪ 동물 소유자 배려 및 소유자와 미소유자 간 이익 조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 도입 ▪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실험동물 생산·유통의 합리화·체계화 지원
농장동물 보호·복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E, EU 등 농장동물 복지 분야 국제동향 대응 ▪ OIE 가이드라인 토대 운송·도축·살처분 기준 마련 ▪ 한국형 동물복지 축산모델 시범농장 조성 추진, 동물복지 품질표시제 도입 검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7), 동물보호·복지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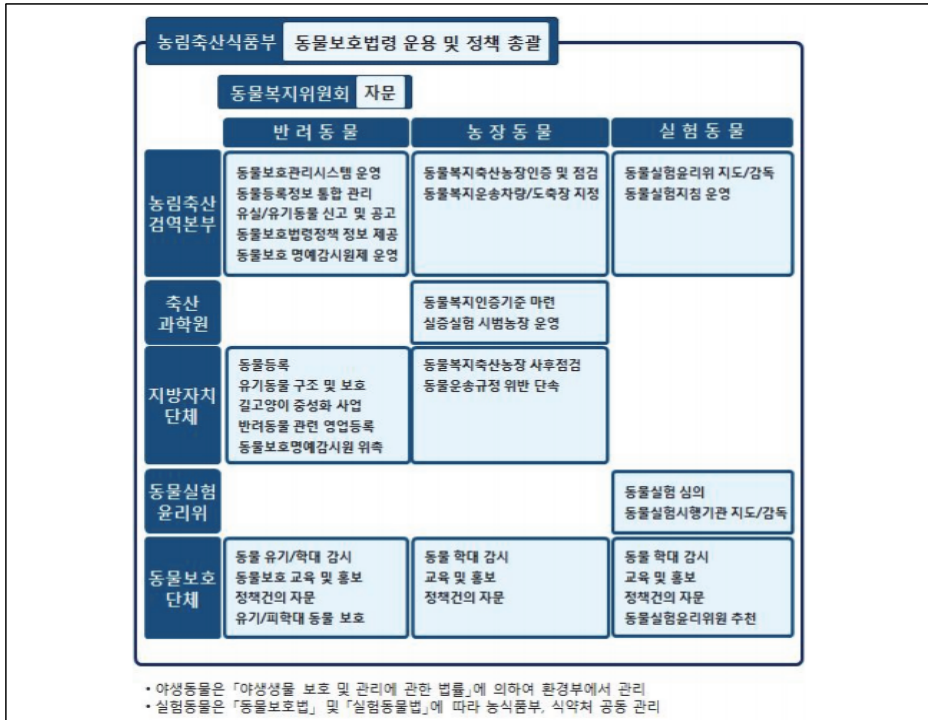
나.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

2012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2014년 12월 첫 번째 5개년 종합계획인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을 수립·발표하였다.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는 2008년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5년간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008년 종합대책에서 추진한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은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및 관련 사업 관리체계 미흡은 한계로 지적됨에 따라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강화한 정책과제가 추진되었다.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제시된 반려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운용 및 정책을 총괄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 ② 동물등록정보 통합관리, ③ 유실·유기동물 신고 및 공고, ④ 동물보호법령정책 정보 제공, 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제 운영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① 동물등록, ②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③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④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 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

축 등을 담당한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는 ① 동물유기·학대 감시, ②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③ 정책 건의 자문, ④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등을 담당한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 수립 및 집행 관련 자문기구로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심의기구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4〉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 하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 및 육성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먼저, 동물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정착,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맹견관리 및 소변 처리 등 의무 확대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 인수제 도입,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도 및 운

영지침 마련, 유실·유기동물 임의 구조·보호 금지 등이 제시되었으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을 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개체별 연계 관리, 신규 서비스 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2-5〉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 이용의 윤리성 제고 -																									
목표	◆ 유기동물 발생수 : ('13) 97천두 → ('16) 85 → ('19) 70 ◆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 : ('13) 1% → ('16) 4 → ('19) 8 ◆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 : ('13) 0개소 → ('19) 10																									
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2.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3.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4. 추진체계 및 R&D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제 정착 •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맹견관리, 소변처리 등 의무 확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인수제 도입 •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도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마련 • 유기·유실동물 임의 구조보호 금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부터 판매까지 개체별 연계 관리 • 신규 서비스업 등록(신고)제 신설 •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마련 • 민간 협조를 통한 감시·홍보 강화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 축종별 최소 복지 기준 마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 의무규정 단계적 확대 및 교육·지원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⑥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인증제 개편 및 축종 확대 • 직물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⑦ 국가공통 동물실험 지침 마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동물의 보호·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제 도입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⑧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위원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 • 윤리위원회 지도·감독 확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⑨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 조종고교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⑩ 추진기반 정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조직 및 자원 확대 •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 강화 • 정책대상자 편의 제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⑪ 정책기반 공고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기초통계 보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⑫ 연구개발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합동 R&D 기획단 구성·운영 • 길고양이 중성화 백신 개발 등 연구 </td> </tr> </table>	①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제 정착 •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맹견관리, 소변처리 등 의무 확대 	②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인수제 도입 •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도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마련 • 유기·유실동물 임의 구조보호 금지 	③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부터 판매까지 개체별 연계 관리 • 신규 서비스업 등록(신고)제 신설 •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 	④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마련 • 민간 협조를 통한 감시·홍보 강화 	⑤ 축종별 최소 복지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 의무규정 단계적 확대 및 교육·지원 	⑥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인증제 개편 및 축종 확대 • 직물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 	⑦ 국가공통 동물실험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동물의 보호·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제 도입 	⑧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위원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 • 윤리위원회 지도·감독 확대 	⑨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 조종고교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⑩ 추진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조직 및 자원 확대 •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 강화 • 정책대상자 편의 제고 	⑪ 정책기반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기초통계 보완 	⑫ 연구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합동 R&D 기획단 구성·운영 • 길고양이 중성화 백신 개발 등 연구
①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제 정착 •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맹견관리, 소변처리 등 의무 확대 																									
②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인수제 도입 •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도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마련 • 유기·유실동물 임의 구조보호 금지 																									
③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부터 판매까지 개체별 연계 관리 • 신규 서비스업 등록(신고)제 신설 •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 																									
④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마련 • 민간 협조를 통한 감시·홍보 강화 																									
⑤ 축종별 최소 복지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 의무규정 단계적 확대 및 교육·지원 																									
⑥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인증제 개편 및 축종 확대 • 직물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 																									
⑦ 국가공통 동물실험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동물의 보호·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제 도입 																									
⑧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위원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 • 윤리위원회 지도·감독 확대 																									
⑨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 조종고교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⑩ 추진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조직 및 자원 확대 •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 강화 • 정책대상자 편의 제고 																									
⑪ 정책기반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기초통계 보완 																									
⑫ 연구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합동 R&D 기획단 구성·운영 • 길고양이 중성화 백신 개발 등 연구 																									
추진 기반	◆ 관련 법(동물보호법) 및 기초 통계 정비 ◆ 주체별 역할 정립 및 이행 담보방안(교육·홍보, 재정지원, 지도·점검 등) 강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

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2016년 12월 발표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중심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반려동물 관련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2-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 마리수 : ('15)979천두 → ('17)1,200 → ('20)1,500 ◆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 : ('15)1.8조원 → ('17)2.1 → ('20)3.5 ◆ 일자리 창출 : ('14)27천명 → ('17)32 → ('20)41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내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 관련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관련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중점 추진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2.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4.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개선 ②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③ 경매장 관리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①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향상 ② 동물보험 개발·여건 개선 ③ 동물의약품 제도개선 ④ 펫사료 지원체계 구축 ⑤ 펫용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⑥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⑦ 서비스업종 신설 및 기준 마련 ① 동물등록제 활성화 ② 유실·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③ 길 고양이 관리대책 마련 ④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①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② 추진체계 정비 및 내실화 ③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확대 ④ 관련산업 인프라 확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하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내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복지 부문의 중점 추진과제로 생산 및 판매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개선,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경매장 관리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길고양이 관리대책 마련, 동물 소유자 책임 의식 고취 등을 제시하였다.

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

2020년 1월 수립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은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 추진으로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록이 미용업 등으로 확대되어 반려동물 영업 관리가 더욱 체계화되는 등 성과는 있었으나 동물 학대 방지 등 일부 과제는 당초 포함되지 못해 국민 인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대폭 보완되었다.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내면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먼저,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동물 학대 행위를 예시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유형별로 처벌을 차등화 및 강화하였다.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 강화 및 사육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무허가·무등록 업체 근절 점검 및 처벌 강화, 그리고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수분해장 등 동물장묘 방식 확대, 가정돌봄서비스(펫시터) 영업 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등이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사설보호소의 유기동물 지자체 신고제 도입, 미신고 시설의 사설보호소의 유기동물 유상

분양 금지, 그리고 피학대동물 구조체계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피학대동물 구조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격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림 2-7〉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동물보호·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내면화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화 ◆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추진 과제	6대 분야	26대 과제
	①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물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 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④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 ② 불법 영업 근절 ③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④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③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개선 ③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④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② 운송·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③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④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⑤ 말·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②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처벌강화 ③ 사육동물 실험 관리 개선 ④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②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 운영 ③ 동물보호·복지 통계·실태조사 개선 ④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⑤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마. 동물복지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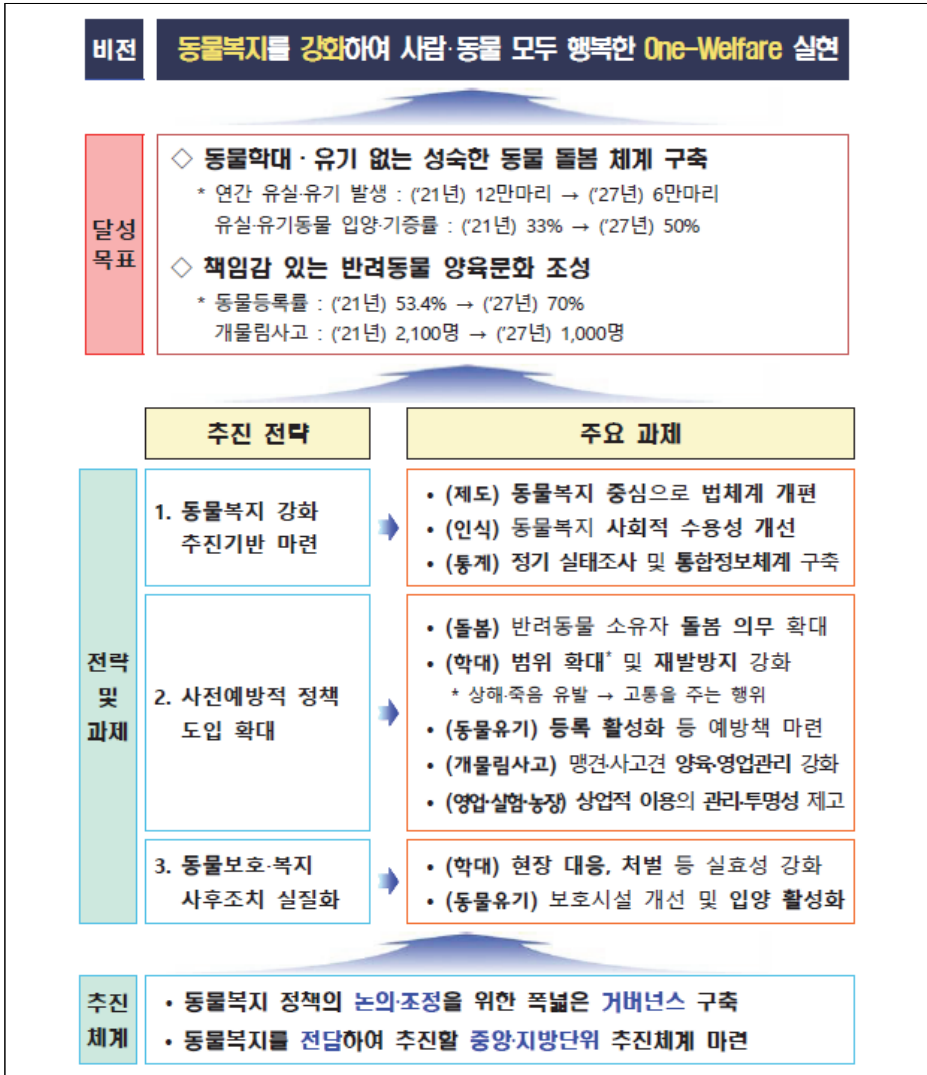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추진 전략으로 ① 동물복지 강화 추진 기반 마련, ②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③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등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동물복지 강화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 영양, 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 강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意識조사’를 ‘동물복지 국민意識조사’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를 위해 먼저, 양육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반환을 위해 영업 단계에서 동물 입양 시 등록 의무화 영역을 기존 판매업에서 생산업 및 수입업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전시·미용업 등에 대한 허가제 전환도 검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장 내에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 대한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하여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¹⁹⁾

19) 「동물보호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제9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2023년 4월부터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 포함)해야 한다.

〈그림 2-8〉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비전 및 전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동물복지 강화 방안.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를 위해 먼저,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현장 대응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사 진단에 따른 동물구조·격리기간이 종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동

물 보호·관리인력 기준²⁰⁾이 강화되고 폐쇄회로 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그리고 일정 규모(개, 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동물복지 관련 정책 추진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정책조직이 기존의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승격되었다.

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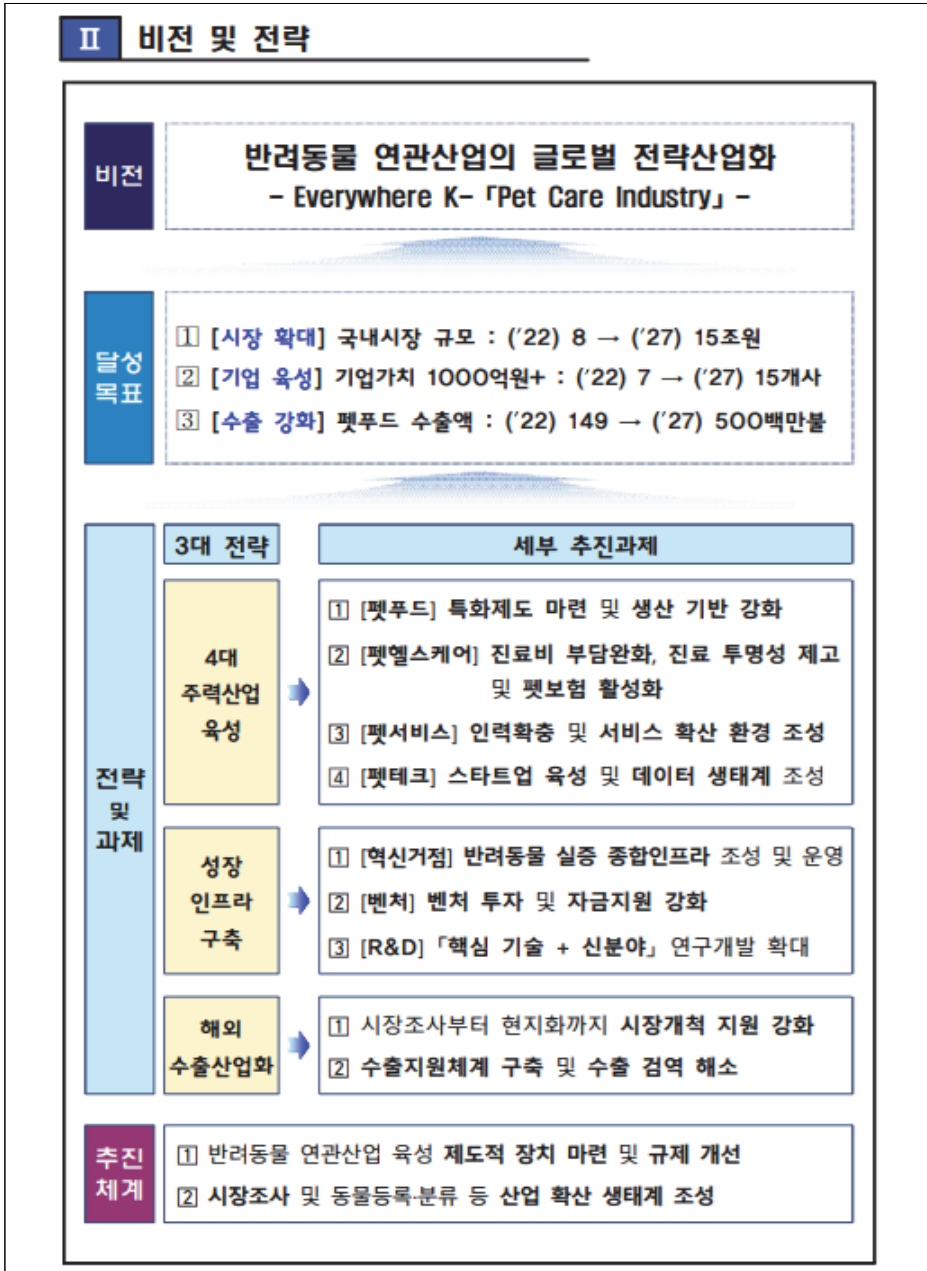
최근 2023년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여 동물복지의 기반인 반려동물 연관산업²¹⁾ 규모 확대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장 확대, 기업 육성, 수출 강화 등을 추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3대 추진 전략으로 ① 4대 주력산업 육성, ② 성장 인프라 구축, ③ 해외 수출산업화 등을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4대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①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 ②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 완화,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③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 ④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①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 ②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 ③ ‘핵심 기술+신분야’ 연구개발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외 수출산업화를 위해 시장개척 지원 강화와 수출 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 등을 제시하였다.

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와 별표 7(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에 의거,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인력 관련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기준 강화 이후에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20마리당 1명의 보호·관리 인력이 필요하며, 민간동물 보호 시설의 경우 50마리당 1명의 보호·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

2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사료, 진료,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의미(Pet Care Industry or Market)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① 펫푸드, ② 펫헬스케어(동물용 의약품, 동물 의료, 펫보험 등), ③ 펫서비스(돌봄, 교육·훈련, 장묘 등), ④ 펫테크(자동화·스마트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9〉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비전,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3.3. 생애단계별 동물복지 관련 규정 검토

가. 생산·판매단계

「동물보호법」상의 영업·보호시설과 준수사항을 근거로 반려동물의 생애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생애는 입양 전 단계인 생산·판매단계와 입양·양육단계 및 사후단계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생애단계를 3단계로 구분한 기준은 반려동물의 월령(나이)과 「동물보호법」상의 영업 분야 준수사항에 근거한다. 개나 고양이는 번식장(동물생산업)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나야 판매될 수 있으며, 동물생산업과 수입업은 판매업을 겸업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이 태어나 가정이나 카페 등으로 판매되기 전까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생산·판매 단계로 보았으며, 동물전시업에서 전시하는 개와 고양이는 6개월령 이상이어야 하고 전시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동물전시업은 운송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등과 함께 입양·양육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허가영업 대상이며,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은 등록영업 대상이다.

〈표 2-10〉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관련 영업 및 보호시설 분류

구분		생산·판매단계	입양·양육단계	사후단계
영업시설	동물생산업	◎	-	-
	동물수입업	◎	-	-
	동물판매업	◎	-	-
	동물운송업	-	○	-
	동물전시업	-	○	-
	동물위탁관리업	-	○	-
	동물미용업	-	○	-
	동물장묘업	-	-	◎
보호시설	동물보호센터	-	□	-
	민간동물보호시설	-	□	-

주: ◎는 허가영업 업종, ○는 등록영업 업종, □는 보호시설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반려동물의 입양 전 생산·판매단계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산업 육성 대책’의 시행으로 2018년 3월 22일부터 동물생산업의 영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동물복지 강화 방안’ 시행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는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는 벽 등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른 채광, 환기, 온도, 습도 등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사육실의 경우 사육설비 가로길이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세로길이는 몸길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판매업의 사육설비는 동물 몸길이의 2배, 세로길이는 몸길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의 관리인력은 개,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이어야 하며,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관리 인력은 종전 75마리당 1명보다 강화된 수준이다.²²⁾

〈표 2-11〉 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구분		시설 및 인력 기준
공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는 벽 등으로 분리 ·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른 채광·환기·온도·습도 조절 가능 · 청결 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배수시설 구비, 바닥은 청소·소독이 쉽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 ·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 차단 설비 구비, 소독약과 소독장비 구비, 정기적 청소 및 소독 실시 ·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동물 생산업	일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분리 또는 구획 설치(동물 직접판매 시 판매실 별도 설치) ·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 급여 설비 구비 · 사육설비 바닥 및 재질은 동물 배설물의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성이 없어야 함. · 번식 가능 1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 사육·관리인력 확보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에서 개, 고양이를 소규모(체중 5kg 미만: 20마리 이하, 5~15kg 미만: 10마리 이하, 15kg 이상: 5마리 이하)로 생산하는 경우 소음방지설비 구비

22) 2018년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동물생산업의 사육관리인력은 종전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되었다(12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계속)

구분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 생산업	사육실	·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사육설비 가로길이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세로는 몸길이의 2배 이상, 높이는 뒷발로 일어난 동물 머리보다 높을 것 · 개의 경우 운동공간 설치, 고양이의 경우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 설치 등 생태적 환경 조성 ·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 ·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함. ·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함.
	분만실	·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 ·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함. ·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적정 체온 유지 설비 구비
	격리실	·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 분리 ·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함. ·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함.
동물수입업		· 사육실과 격리실 구분 설치 · 사료와 물 급여 설비 구비, 채광 및 환기 가능 ·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달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 ·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 · 개·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 확보 · 격리실은 동물생산업 격리실 기준 적용
동물판매업 (일반기준)		· 사육실과 격리실 분리 설치, 사육설비 가로길이는 동물 몸길이의 2배, 세로는 몸길이의 1.5배, 높이는 뒷발로 일어난 동물 머리보다 높을 것 ·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더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 · 사료와 물 급여 설비 구비, 동물의 적정 체온 유지 설비 구비 · 개·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 확보 · 격리실은 동물생산업 격리실 기준 적용 ※ 경매방식, 전자상거래 방식의 반려동물 판매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검색일: 2024. 3. 22.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에는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을 게시해야 하며,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이 영업장 내 4시간 이상 체류할 때는 깨끗한 물과 사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물을 판매할 때 개, 고양이의 경우 2개월령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2018년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2021년부터는 동물생산업의 준수사항으로 모견의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까지의 간격이 종전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2년 동물복지 강화대책으로 2023

년 4월 동물판매업 등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물 판매 시 영업허가번호 표시가 의무화되었으며, 등록 동물(개)인 경우 등록내역 표시 의무화도 기존 동물판매업에서 동물생산업 및 동물수입업으로 확대되었다.

동물생산업체가 질병 예방적 차원에서 동물에게 백신을 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2016. 12. 30.)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자가접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2022년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동물 백신을 구입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약국에서 수의사처방전 없이 백신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²³⁾ 따라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가접종이 금지된 이유는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특히, 상처, 염증, 쇼크사 발생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동물생산업체 또는 가정에서 동물에게 백신을 자가접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글상자 2-3〉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수술 금지 및 자가 진료 제한

-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의거,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또는 등록 가축: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 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검색일: 2024. 3. 20.

23) 「약사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3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약국 개설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판매가 가능하다(대한수의사회, 2022).

한편,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 관련 서류를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개, 고양이를 수입하려면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한다.²⁴⁾ 검역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 중화항체 및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중화항체는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미발생지역산 개, 고양이의 경우에는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2-12〉 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영업장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공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등 게시 또는 부착 ·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 동물 종류별·성별·크기별로 구분관리, 질환·상해 동물, 공격성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 임신·포유동물 분리 관리 · 영업장 신규 반입 동물에 대해 체온, 피부병 등 건강 상태 확인 · 영업장 내 4시간 이상 체류 동물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과 사료 공급, 급이·급수 용기는 청결하게 유지 ·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명령 사후 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 영업장 내 동물 소음 최소화 노력 필요 · 동물 판매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는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정보 표시 · 동물 판매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는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 2년간 보관 · 동물 생산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처리계획서에 따라 기증 분양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
동물 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 운동 기회 제공 · 사육실 내 질병 발생 및 확산 주의, 백신접종 등 예방조치 후 개체관리 카드에 기입 및 관리 · 사육·관리동물의 털, 손, 발톱, 이발 등 관리 연 1회 이상 실시, 건강하고 위생적인 관리 내역 기록 ·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 고양이 교배 및 출산 가능,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함. · 노화 등으로 번식 능력 없는 동물의 보호 또는 입양 노력, 동물 유기 및 폐기 목적의 거래 금지 · 질병 또는 상해 동물 즉시 격리 치료, 회복 불가능한 동물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 영업장 실적 보고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 · 동물을 직접 판매할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동물 수입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 관련 서류를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 · 영업장 실적 보고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 · 동물을 직접 판매할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24)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검색일: 2024. 7. 1.

(계속)

구분	준수사항
동물 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고양이의 경우 2개월령 이상 동물을 판매, 알선, 중개해야 함(미성년자에게 판매 등 금지) ·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 방법, 등록대상 동물의 경우 등록 방법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세부 내용을 구입자에게 공지 · 영업장 실적 보고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 · 동물판매업 등록(허가)번호, 동물등록 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와 해당 내용 증명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 의무 · 온라인 홍보 시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시 ※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검색일: 2024. 3. 22.

나. 입양·양육단계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단계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동물생산 및 판매업체로부터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입양할 경우에 대한 양육자의 사육관리 보호 의무 및 준수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영업시설에서 입양하거나 위탁받아 관리할 경우 영업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 등에 대한 복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에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동물 소유자 대상 입양 전 교육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의무화된 상태는 아니다. 입양 전 교육 의무화가 시행되면 교육 이수자만 동물생산 및 판매업자로부터 동물구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2022년 ‘동물복지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검토를 위해 2023년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자 교육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구입·입양할 경우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동물보호법」 제15조), 등록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등록이 의무화된 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고양이는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려견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등록대상 자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은 몸에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장착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또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6조).

〈표 2-13〉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등록대상	·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록 시기	· 소유권 취득일 또는 등록대상 자격일로부터 30일 이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등록 방법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외장형)(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등록 대행	· 지정동물병원, 비영리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신고사항	· 등록대상 동물 분실(10일 이내),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30일 이내)(동물보호법 제15조) · 소유자 변경된 경우, 소유자 주소변경 및 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검색일: 2024. 3. 22.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를 위해서는 지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유자는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동물이 배고픔, 불편함,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개의 경우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해야 한다.

〈표 2-14〉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구분	주요 내용
일반 기준	· 동물의 소유자 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함.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이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 및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의 사육환경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 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개별 기준(개)	·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驅蟲)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검색일: 2024. 3. 22.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사육공간의 가로 및 세로길이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를 2m 이상으로 두어야 하며,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어두운 곳에서의 장기간 사육이 금지된다. 그리고 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표 2-15〉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구분	주요 내용
사육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및 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기준 총축) -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 ·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할 것 ·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위생·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에게 질병(곰팡이 등 상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동물 사체나 전염병 발생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 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동물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 동물 사육공간이 소유자 등 거주자와 멀리 떨어진 경우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검색일: 2024. 3. 22.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23년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반려동물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및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 제한을 두어야 하는 공간 범위가 기존에는 다중주택 및 공동주택 등 주택에 한정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표 2-16〉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규정
등록대상 동물관리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반려견 소유자 등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소유자 연락처 등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등 준수 ※ 지자체는 필요시 반려견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반려견 예방접종, 특정 지역·장소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조치 가능	「동물보호법」 제16조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안전조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잠금장치 갖춘 것) 사용(3개월 미만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제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내부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 제한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조치)
맹견관리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따를 것 ※ 지자체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맹견사육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	「동물보호법」 제21조 (맹견의 관리)
맹견 출입 금지	·맹견 소유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	「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의 출입 금지 등)
맹견 보험 가입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함.	「동물보호법」 제23조 (보험의 가입 등)
동물 학대 금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동물에게 상해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하여 상해·질병 유발 행위 ·동물 학대 관련,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 판매 전시, 전달, 인터넷 게재 등 금지 ·도박목적으로 동물 이용, 도박목적으로 광고 선전 행위 금지, 동물 경품제공 금지 ·영리 목적으로 동물 대여 행위 금지 ※ 소유자 등 없이 배회·유기된 동물 등을 판매·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검색일: 2024. 3. 22.

반려동물 입양·양육단계와 관련된 동물 영업시설은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이라 할 수 있으며,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물운송업(펫택시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호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²⁵⁾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말한다. 동물 운송 자동차는 동물 판매업자가 구매자

에게 배송하는 경우 및 양육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병원을 가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동물 운송 차량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동물 운송 인력의 운전경력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동물전시업(펫카페 등)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호에 의거,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을 말하며,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동물전시업의 시설은 개의 경우 운동공간 설치, 고양이의 경우 선반 및 은신처 설치 등 전시동물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동물위탁관리업(펫유치원, 펫호텔 등)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호에 의거,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하며, 보호자의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장시간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맡기는 업종이다. 위탁관리실은 위탁관리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과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있어야 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동물미용업(펫미용숍 등)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호에 의거,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후 영업해야 한다. 미용 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 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미용 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가 구비되어야 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5)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띠견인자동차)를 말한다.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이며, 이들 자동차가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이다.

〈표 2-17〉 동물 운송·전시·위탁관리·미용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구분	시설 및 인력 기준
공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는 벽과 층 등으로 분리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른 채광·환기·온도·습도 조절 가능 ·청결 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배수시설 구비, 바닥은 청소·소독이 쉽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 차단 설비 구비, 소독약과 소독장비 구비, 정기적 청소 및 소독 실시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동물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 구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 구비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 구비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차량 내부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 격벽 또는 가림막 설치 ·동물의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 설치, 이동장 설치 시 고정장치 구비 ·동물 운송용 자동차임을 차량 외부의 옆면 또는 뒷면에 동물운송업 문구 표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관리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 보유
동물 전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실과 휴식실 구분 설치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 구비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개의 경우 운동공간 설치, 고양이의 경우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 설치 등 전시동물 생리적 특성 고려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
동물 위탁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 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과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구비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관리
동물 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용 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 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 ·미용 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 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 미용 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 구비 ·미용 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미용 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및 건조기 구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관리 ※ 자동차 이용 동물미용업 시설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검색일: 2024. 3. 22.

등록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증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개)일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사항 및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동물전시업의 경우 전시하는 개, 고양이의 나이는 6개월령 이상이어야 하며, 하루 10시간 이내에 전시되어야 하고 시간 초과 시 별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위탁관리업의 경우

위탁관리 동물에게 정기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의 경우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용을 위해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표 2-18〉 동물 운송·전시·위탁관리·미용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공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등 게시 또는 부착 ·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 동물 종류별·성별·크기별로 분리 관리, 질환·상해 동물, 공격성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 임신·포유동물 분리 관리 · 영업장 신규 반입 동물에 대해 체온, 피부병 등 건강 상태 확인 · 영업장 내 4시간 이상 체류 동물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과 사료 공급, 급이·급수 용기는 청결하게 유지 ·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명령 사후 조치 이행 후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영업장 내 동물 소음 최소화 노력 필요 · 동물 동물전시업자, 위탁관리업자는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정보 표시 · 동물 위탁관리업자, 미용업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정보를 30일간 보관(운송업자 3일) · 동물 운송업자, 전시업자, 위탁관리업자, 미용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일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 사항 및 방법 고지
동물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운송차량에 4시간 이상 체류 동물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과 사료 공급, 급이·급수 용기는 청결하게 유지 · 「동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동물 운송에 관한 기준 준수 · 동물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 운송 전과 후 동물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릿수, 운송일 및 소독 일자 기록 관리 ·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 2마리 이상 운송하는 경우 개체별로 분리 ·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 고려하여 산정, 소유주 등 동승 여부와는 무관
동물 전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 등록대상 동물은 동물등록을 해야 함. · 전시동물의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 실시, 매년 1회 검진, 건강 이상 시 격리 후 수의사 진료 및 적절한 치료 ·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 ·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 제공 ·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 10시간 넘게 전시하는 경우 별도 휴식 시간 제공 ·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 제공 ·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 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 ·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 이용 금지
동물 위탁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 기회 제공 ·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 위탁관리 동물에게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 강구

(계속)

구분	준수사항
동물 위탁관리업	· 위탁관리하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 ·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 제공 ·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가능
동물 미용업	·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 미용기구 소독 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준수 ·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 준수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검색일: 2024. 3. 22.

동물보호센터는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진료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 진료실과 운송 차량 보유는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시설 모두 동물의 탈출 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 시설, 외부인 출입 장치, 급수 및 배수시설, 동물 사체 보관 냉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동물보호 관리인력은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민간시설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동물 종류별·성별·크기별 구분관리, 상해·질환 동물, 어린 동물, 나이 든 동물, 임신·이유 동물 등 분리 보호, 적절한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 및 청소, 보호동물의 보호시설 내 보호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함을 일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처리결과 등 관련 서류 보관(3년), 보호동물 분양 시 상업적 이용 방지 및 유기 방지 교육 실시, 미등록동물의 등록 안내, 동물 사체의 별도 냉동장치 보관 후 관련 법에서 정한 방법²⁶⁾에 의한 처리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26)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나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동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표 2-19〉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개별시설별 구비 요건

구분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실	온도	○	○
	습도	○	○
	채광	○	○
	환기	○	○
	직사광선(외부노출 시)	○	○
	비바람(외부노출 시)	○	○
격리실	독립건물	○	○
	타 시설과 분리	○	○
	온도	○	○
	습도	○	○
	채광	○	○
	환기	○	○
	소독(출입)	○	○
	전염 차단	○	○
진료실	관찰	○	○
	진료대	○	△
사료 보관실	소독장비	○	△
	해충 등 차단	○	○
동물 구조 차량	개별 수용 장치	○	△
	직사광선 회피 시설(화물차)	○	△
	비바람 등 회피 시설(화물차)	○	△

주: ○는 구비 의무, △는 있을 경우 갖추어야 하거나 권장 사항을 의미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다. 사후단계

반려동물 양육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던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될 수 있으며, 동물병원을 통한 위탁처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접 매장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며,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하여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 및 납골도 가능하다.

〈표 2-20〉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

구분	처리 방법
동물장묘시설 이용	·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장례식장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 처리
동물병원 위탁처리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8조)
종량제 봉투 배출	·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자료: e동물장례정보포털(<https://eanimal.kr/>), 검색일: 2024. 4. 25.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과 동물병원 위탁처리 방식은 현행법상 모두 합법적인 처리방식이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을 보내는 가족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동물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처리방식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인가를 받지 않은 장례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드시 등록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동물장묘업체는 허가영업 시설의 공통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동물장묘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동물보호법」 제72조에 의하면 동물의 장묘시설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가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 2-21〉 동물장묘업의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시설·인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 구비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등은 영업장 내 설치, 다른 시설과 분리 또는 별도 구획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악취 방지 시설 설치 ·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 구비 ·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의 안전한 보관 가능, 개별 유골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판 부착
영업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등 게시 또는 부착 · 동물장묘업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정보를 30일간 보관(운송업자 3일간) ·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동물의 사체 처리, 소유자에게 장례확인서 발급 · 등록대상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처리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통보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운영 시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 동물화장시설의 배기가스 등은 6개월마다 1회 측정,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 ·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 정기 검사를 3년마다 1회,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실시, 지자체에 결과 제출 · 동물 사체를 처리한 경우 등록대상 소유자에게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절차 공지 ·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 홍보하려는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 · 영업장 실적 보고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제출
종량제 봉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별표 12, 검색일: 2024. 3. 22.

2.3.4. 반려동물 복지 정책 추진 사업 예산 현황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관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은 동물 소유자, 동물실험직원, 동물생산 및 판매업 등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지원,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 개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표 2-22〉 반려동물 복지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지원(농특)	4,566	5,277	11,020	12,328	12,532
반려동물 산업 육성(농특)	-	-	-	400	3,810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농특)	-	-	-	-	1,840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농특)	-	-	6,722	8,960	7,462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지특)	4,644	3,526	4,693	7,041	6,023
계	9,210	8,803	22,435	28,729	31,6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문화 국민인식 개선, 동물보호 관리시설 환경 개선, 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 개체 수 관리지원,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려동물 문화 국민 인식 개선 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와 미소유자 간 반려 문화 인식 차이를 개선하여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산을 완화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통해 동물 학대, 유기 등에 따른 사회문제 최소화 및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 유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보호 관리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열악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도권 내 합법적인 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입양비 및 구조 보호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 및 유기동물 입양자부담 비용 지원을 위한 입양비 지원과 유실·유기동물 포획 등을 위한 구조 보호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체 수 관리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견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표 2-23〉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 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반려동물 문화 국민인식 개선(교육, 홍보, 실태조사)	2,594	2,825	2,711	3,318	2,366	
동물보호 관리시설 환경 개선	-	-	1,800	1,800	2,160	
입양비, 구조 보호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832	1,312	-	-	-
	실질·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지원	-	-	1,589	1,650	1,650
개체 수 관리지원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140	1,140	3,420	3,820	4,742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	1,500	1,560	1,404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지원	-	-	-	180	210	
계	4,566	5,277	11,020	12,328	12,5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반려동물 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운영, 동물 보건의료 인력 양성, 동물 의료체계 표준화 지원, 반려견 기질 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 중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운영 사업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기관·시스템 운영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물보건의료 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동물보건에 종사하는 수의사·동물보건사 자질 향상,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 및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며, 동물 의료체계 표준화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한 동물 의료체계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반려견 기질 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위험한 개에 대한 기질(공격성) 평가와 행동 지도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을 통해 개물림 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표 2-24〉 반려동물 산업 육성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운영	-	-	-	400	550
동물보건의로 인력 양성	-	-	-	-	1,480
동물 의료체계 표준화 지원	-	-	-	-	1,500
반려견 기질 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	-	-	-	280
계	-	-	-	400	3,8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장조사 및 전파, 수출시장 개척,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One Welfare Valley 조성 등이다.

시장조사 및 전파 지원사업은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및 K-Pet 수출박람회 개최, 수출을 위한 제품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수출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박람회 참가, 현지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탈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수출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사업은 온라인플랫폼 활용 등을 통한 기업이 해외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One Welfare Valley 조성 지원사업은 One Welfare Valley의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표 2-25〉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조사 및 전파	-	-	-	-	1,100
수출시장 개척	-	-	-	-	440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	-	-	50
One Welfare Valley 조성	-	-	-	-	250
계	-	-	-	-	1,8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R&D)사업의 목적은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와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이다.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특수 목적의 처방식 사료(첨가제)와 보충제 등에 대한 제형화 및 고품질화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은 질병 진단·치료제, 의료 서비스 등 반려동물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표 2-26〉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	-	-	842	1,122	1,008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	-	5,880	7,838	6,454
계	-	-	6,722	8,960	7,4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의 목적은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분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신설된 내역사업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지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내역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만 남아있다. 현재 동물 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자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제주지역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2-27〉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자율)	4,644	3,526	4,693	7,041	5,623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제주)	-	-	-	-	400
계	4,644	3,526	4,693	7,041	6,02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4.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의 성과 평가

2008년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의 주요 성과는 반려동물 보호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등록제 등 신규제도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유기동물 관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통합 관리됨으로써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가 체계화되었다. 둘째,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08년 지자체별로 시범 도입하던 동물등록제가 2013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반려동물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에 대해 영업등록(신고)제가 도입되어 영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 배설물 수거 미준수, 그리고 동물유기·학대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낮은 책임 의식과 계속되는 사설보호소의 동물 학대 행위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012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지금까지 총 2차례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이 중 첫 번째 종합계획은 2014년 12월 발표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이며, 두 번째 종합계획은 2020년 1월 발표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이다.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주요 성과는 반려동물의 영업 관리가 체계화되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영업 관련 등록제는 당초 생산·판매·수입·장묘업 등 4종에서 2018년 미용·위탁관리·운송·전시업 등 4종이 추가되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었다. 다만, 1차 종합계획에 동물보호법

의 목적 중 하나인 동물 학대 방지 과제 등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주요 성과는 첫째, 동물 소유자의 입양 전 동물보호복지 교육 의무화 추진 등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감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둘째,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반려동물 개체관리 카드에 생산·판매업 허가 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입력 등 반려동물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 수준 제고 차원에서 유기동물 발견 보호소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 요청의 경우에만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반려동물 지자체 인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주요 성과지표 중 하나인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2008년 시범 도입되었으며, 2013년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반려견 등록률이 2012년 4.1%에서 2022년 55.5%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도 내장형 일원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소유자 부담이 등록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반려동물 이력제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는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2-28〉 반려견 양육 마릿수 및 등록 현황

단위: 만 마리, %

구분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반려견 양육 마릿수(A)	512.6	662.0	507.2	598.5	601.3	517.9	544.8
반려견 등록 마릿수(B)	97.9	117.6	130.4	209.2	232.2	276.6	302.6
등록률(B/A)	19.1	17.8	25.7	35.0	38.6	53.4	55.5

주: 양육 마릿수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별 가구 수 비율을 반영한 추정치이며, 등록 마릿수는 실제 등록된 마릿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동물보호센터에 의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이 열악하여 유실·유기동물의 재입양 활성화에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실·유기동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재입양 비율은 2013년 28.1%에서 2023년 24.2%로 정체되어 있어 유기동물 재입양 비율의 제고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2-29〉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및 재입양률

단위: 마리, %

구분	2013	2017	2019	2021	2022	2023
유실·유기동물 구조 마릿수	97,197	102,593	135,791	118,273	113,440	113,072
재입양 비율	28.1	30.1	26.4	32.1	27.5	2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한편,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지자체 반려동물 인수제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1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제때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동물 소유자의 입양 전 동물복지 교육 의무화도 시범사업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사후 처리방식 중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제3장

반려동물 영업업체 복지실태

반려동물 영업업체 복지실태

1. 영업업체 현황

「동물보호법」 제6장에 제시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종은 제69조에 규정된 허가업종 4개와 제73조에서 규정된 등록업종 4개 등 총 8개 업종이다. 이 중 허가업종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며, 등록업종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다.

〈글상자 3-1〉 허가영업 및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1.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2.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1.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3.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4. 동물운송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검색일: 2024. 3. 22.

2023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의 전체 영업업체 수는 전년 대비 6.8% 감소한 20,575개소로 2016년 이후 연평균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업체 수 비중을 살펴보면 동물미용업의 비중이 4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물위탁관리업 23.4%, 동물판매업 15.3%, 동물생산업 9.8%, 동물운송업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²⁷⁾

27)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2018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종으로 추가되었다.

〈표 3-1〉 반려동물 영업업체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허가영업				등록영업				합계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2016	382	12	3,778	20	-	-	-	-	4,192
2017	545	30	3,991	26	-	-	-	-	4,592
2018	1,186	70	4,056	33	394	2,745	4,726	281	13,491
2019	1,690	75	4,179	44	548	3,809	6,351	459	17,155
2020	1,952	120	4,159	57	664	4,406	7,271	656	19,285
2021	2,019	122	4,010	63	653	4,802	8,222	794	20,685
2022	2,086	125	3,944	68	638	5,034	8,868	1,313	22,076
2023	2,011	94	3,154	74	541	4,820	8,404	1,477	20,575
연평균 증가율	26.8	34.2	-2.5	20.6	6.5	11.9	12.2	39.4	25.5

주: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8~2022년 기간의 수치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또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25,506 명이며, 2016년 이후 연평균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은 동물미용업이 3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물위탁관리업 24.0%, 동물판매업 15.3%, 동물생산업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반려동물 영업업체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허가영업				등록영업				합계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2016	573	18	4,857	91	-	-	-	-	5,539
2017	788	44	5,106	125	-	-	-	-	6,063
2018	1,704	82	4,902	119	518	3,654	5,309	323	16,611
2019	2,507	96	5,477	220	804	5,180	7,750	521	22,555
2020	2,710	172	5,397	245	892	5,795	8,741	739	24,691
2021	2,647	169	5,082	265	811	5,911	9,085	893	24,863
2022	2,744	177	4,868	256	822	5,991	9,767	1,468	26,093
2023	3,136	189	3,904	340	739	6,115	9,414	1,669	25,506
연평균 증가율	27.5	39.9	-3.1	20.7	7.4	10.8	12.1	38.9	24.4

주: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8~2022년 기간의 수치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2. 영업업체 조사 개요

2.1. 기존 조사 현황 및 본 조사의 차별성

현재 수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체 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가 유일하다. 해당 조사는 2013년부터 1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동물등록 현황, 동물구조 및 동물보호센터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 운영 현황,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 및 활동 실적 등이다.

〈표 3-3〉 기존 반려동물 영업업체 조사 개요

구분	조사 기관	조사 항목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1. 동물등록 현황 · 개, 고양이 동물등록 현황 2. 동물구조 및 동물보호센터 현황 ·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 동물보호 및 조치 현황 ·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 길고양이 중성화 현황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운영 현황 · 영업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4.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 및 활동 실적 ·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현황 및 활동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항목 중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체 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체의 개략적인 현황뿐만 아니라 과거부터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단순히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 개소수와 종사자 수만을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영업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복지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해당 영업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지 관련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 중 동물운송업을 제외한 7개 업종을 조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동물운송업의 경우 개

인사업체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운송 차량 외에 별도의 영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조사 대상 업종과의 유사성이 적고 영업 형태의 특성상 조사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2. 조사 개요

본 연구는 반려동물 영업업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포된 영업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현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7개 업종별 영업업체이며, 이 중 300개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²⁸⁾ 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24일 (1개월)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한 전화 및 온라인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업체 일반 현황, 시설 및 인력 현황, 영업자 교육,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복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발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²⁹⁾

28)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영업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였으나 연락처 등 관련 정보가 누락된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였으며, 조사에 협조가 가능한 업체를 중심으로 표본이 설정되었다. 업종에 따라 응답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개소 수(20,575개소)에 대한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pm 5.6\%$, 신뢰수준 90%에서 $\pm 4.7\%$ 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설문조사 내용 중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결과는 ‘제6장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과제’ 부분에서 활용하였다.

〈표 3-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체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분	조사 내용
(SQ) 일반 현황	해당 업종, 소재지, 입지, 운영 기간, 영업장 면적, 영업일 수
(A) 시설 및 인력 현황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인식, 보유 시설, 인력 현황, 매출액 증감 수준, 향후 시장 규모 전망
(B) 영업자 교육	법정 의무교육 숙지 및 이수 여부, 영업자 교육 만족도, 영업정지처분 경험 여부, 영업정지처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및 만족도
(C) 반려동물 복지 인식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평균 복지 수준,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견해, 루시법에 대한 인식 및 국내 도입에 대한 견해
(D) 반려동물 복지 정책 인식	정부 조직 구성 및 정책에 대한 인식/만족도, 업종에 대한 규제 수준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
(E)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재 수준(만족도) 및 향후 필요 수준(중요도)

자료: 연구진 작성.

3. 영업업체 조사 결과

3.1. 일반 현황

조사 대상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이 각각 22.3%와 21.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

지역	빈도	비율	지역	빈도	비율
서울	67	22.3	충북	7	2.3
부산	25	8.3	충남	11	3.7
대구	22	7.3	전북	8	2.7
인천	9	3.0	전남	22	7.3
광주	8	2.7	경북	17	5.7
대전	13	4.3	경남	6	2.0

(계속)

지역	빈도	비율	지역	빈도	비율
울산	7	2.3	제주	3	1.0
경기	65	21.7	세종	1	0.3
강원	9	3.0	합계	300	100.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영업장 입지는 도시지역(동 지역)이 8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읍·면·리 지역)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장 면적은 132.2㎡(약 40평) 미만이 전체의 6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운영 기간은 9년 4개월이고 월평균 영업일 수는 26.4일로 파악되었다.

〈표 3-6〉 반려동물 영업업체 일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영업장 입지	도시	242	80.7
	농촌	58	19.3
	전체	300	100.0
영업장 면적	66.1㎡(약 20평) 미만	84	28.0
	66.1(약 20평)~132.2㎡(약 40평) 미만	98	32.7
	132.2(약 40평)~198.3㎡(약 60평) 미만	41	13.7
	198.3(약 60평)~264.5㎡(약 80평) 미만	24	8.0
	264.5(약 80평)~330.6㎡(약 100평) 미만	9	3.0
	330.6㎡(약 100평) 이상	44	14.7
	전체	300	100.0
평균 운영 기간		9년 4개월	
월평균 영업일 수		26.4일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해당 업종을 조사한 결과, 단일 업종으로 운영 중인 업체의 비율은 48.7%이며, 2개 이상(최대 6개) 복수 업종으로 운영 중인 업체의 비율은 51.3%로 나타나 상당수의 업체가 주력 업종 외에 추가적인 복수 업종 등록을 통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⁰⁾

〈표 3-7〉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해당 업종 수

단위: %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합계
해당 업종 수 비율	48.7	39.0	8.3	2.3	1.3	0.3	100.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주력 업종을 기준으로 영업업체 현황 및 복지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력 업종을 조사한 결과, 동물미용업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물위탁관리업 19.3%, 동물전시업 17.3%, 동물생산업 11.3%, 동물판매업 9.3%, 동물장묘업 3.7%, 동물수입업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주력 업종

단위: 개소, %

업종	빈도	비율	업종	빈도	비율
동물생산업	34	11.3	동물위탁관리업	58	19.3
동물수입업	8	2.7	동물미용업	109	36.3
동물판매업	28	9.3	동물장묘업	11	3.7
동물전시업	52	17.3	전체	300	100.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취급 동물을 조사한 결과, 모든 영업업체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개를 취급하는 영업업체의 비율(48.0%)이 고양이를 취급하는 비율(3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와 고양이 외에 기타 동물을 함께 취급하고 있는 업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조사 대상 7개 업종 외에 기타 업종으로는 동물 관련 소프트웨어(29개소)와 동물병원/수의업(1개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취급 동물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개	261	48.0	이구아나	9	1.7
고양이	169	31.1	거북이	14	2.6
토끼	17	3.1	뱀	9	1.7
햄스터	19	3.5	개구리	4	0.7
기니피그	14	2.6	거미	4	0.7
앵무새	14	2.6	기타	10	1.8

주: 복수응답 기준임.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3.2. 시설·인력 및 매출액 현황

조사 대상 반려동물 영업업체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숙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0%로 나타나 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0〉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숙지 여부

단위: 점, %

구분	5점 평균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숙지 여부	3.69	89.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 내 공통시설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시설에서 90% 이상의 보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습도조절시설의 보유율은 84.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1〉 반려동물 영업업체 내 주요 시설 보유율

단위: %

구분	채광시설	환기시설	온도조절 시설	습도조절 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소화시설
시설 보유율	92.7	99.0	97.3	84.3	99.3	98.3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반려동물 영업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균 인력 수는 2.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시 인력은 2.0명, 임시 인력은 0.4명으로 파악되었다. 업종에 따라 살펴보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물수입업(5.1명)과 동물장묘업(4.1명)의 보유 인력이 많고 동물생산업(1.8명)의 보유 인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평균 근무 인력

단위: 명

구분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전체
상시 인력	1.6	3.5	2.1	1.3	2.4	1.8	3.5	2.0
임시 인력	0.2	1.6	0.3	0.8	0.4	0.3	0.5	0.4
합계	1.8	5.1	2.4	2.1	2.8	2.1	4.1	2.4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한편, 반려동물 영업업체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에 따라 살펴보면 동물생산업의 감소 응답 비율이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물판매업 64.3%, 동물미용업 6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3〉 영업업체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

단위: 개소(%)

구분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전체
매우 감소	16 (47.1)	2 (25.0)	10 (35.7)	13 (25.0)	11 (19.0)	23 (21.1)	1 (9.1)	76 (25.3)
감소	7 (20.6)	2 (25)	8 (28.6)	15 (28.8)	16 (27.6)	43 (39.4)	1 (9.1)	92 (30.7)
비슷한 수준	10 (29.4)	4 (50)	9 (32.1)	21 (40.4)	26 (44.8)	39 (35.8)	7 (63.6)	116 (38.7)
증가	1 (2.9)	-	1 (3.6)	3 (5.8)	5 (8.6)	4 (3.7)	2 (18.2)	16 (5.3)
합계	34 (100.0)	8 (100.0)	28 (100.0)	52 (100.0)	58 (100.0)	109 (100.0)	11 (100.0)	300 (100.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업체(168개소)의 평균 감소 비율은 39.5%이며,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업체(16개소)의 평균 증가 비율은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영업업체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 평균 비율

단위: %

구분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전체
감소 비율	46.1	45.0	43.9	35.9	37.2	37.9	45.0	39.5
증가 비율	15.0	-	10.0	20.0	19.0	16.3	20.0	17.8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체가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한 시장 규모 전망을 조사한 결과,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장묘업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위탁관리업 37.9%, 미용업 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판매업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산업 38.2%, 수입업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향후 시장 규모 전망

단위: 개소(%)

구분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전체
매우 감소	6(17.6)	-	3(10.7)	4(7.7)	4(6.9)	4(3.7)	-	21(7.0)
감소	7(20.6)	3(37.5)	13(46.4)	8(15.4)	7(12.1)	29(26.6)	2(18.2)	69(23.0)
비슷한 수준	12(35.3)	3(37.5)	5(17.9)	26(50.0)	25(43.1)	38(34.9)	2(18.2)	111(37.0)
증가	9(26.5)	2(25.0)	5(17.9)	10(19.2)	14(24.1)	30(27.5)	5(45.5)	75(25.0)
매우 증가	-	-	2(7.1)	4(7.7)	8(13.8)	8(7.3)	2(18.2)	24(8.0)
합계	34 (100.0)	8 (100.0)	28 (100.0)	52 (100.0)	58 (100.0)	109 (100.0)	11 (100.0)	300 (100.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3.3. 영업자 교육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제82조(교육)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교육)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글상자 3-2〉 반려동물 관련 업종 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관련 사항

<p>「동물보호법」 제82조(교육)</p> <p>①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④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교육)</p> <p>①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p> <p>② 영업자 정기교육: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3시간</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검색일: 2024. 3. 22.

조사 대상 영업업체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법정 의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나타나 인지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점, %

구분	5점 평균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필요성 인지 여부	3.97	94.4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또한 영업장의 등록 또는 허가 전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의 보호 및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 이수 비율이 94.3%로 나타나 대부분 영업 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7〉 영업자의 영업 전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영업자의 영업 전 법정 의무교육 이수 비율	94.3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영업 전 교육을 이수한 영업업체(28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전 교육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3.36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은 ‘동물복지 인식 향상(3.44점)’이며, 다음으로 ‘교육 내용(3.37점)’, ‘교육 시간(3.28점)’, ‘영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3.0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영업자의 영업 전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5점 평균	만족 (만족+매우 만족)
전반적 만족도	3.36	34.9
교육 내용	3.37	37.1
교육 시간	3.28	32.1
영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	3.09	29.3
동물복지 인식 향상	3.44	41.4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영업장 운영 이후 영업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3%로 나타나 영업 전 교육 이수 비율(94.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영업자의 정기교육 이수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영업자의 정기교육 이수 비율	79.3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영업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영업업체(238개소)를 대상으로 부문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3.30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 전 교육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은 ‘동물복지 인식 향상(3.40점)’이며, 다음으로 ‘교육 내용(3.29점)’, ‘교육 시간(3.22점)’, ‘영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3.1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 영업자의 정기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5점 평균	만족 (만족+매우 만족)
전반적 만족도	3.30	32.8
교육 내용	3.29	32.4
교육 시간	3.22	29.8
영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	3.16	30.7
동물복지 인식 향상	3.40	39.5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한편, 조사 대상 영업업체 중 정부 또는 지자체를 통해 영업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1〉 영업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영업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경험 비율	0.7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3.4. 반려동물 복지 관련 인식

반려동물 영업업체를 대상으로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5점(보통)을 기준으로 0~10점 구간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영업업체 기준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각각 8.27점과 8.14점으로 나타나 사람 대비 반려동물 복지의 상대적 중요성은 98.4%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업종에 따라 살펴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사람 복지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물전시업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업종은 동물생산업(8.53점)이며, 다음으로 동물전시업(8.52점), 동

물장묘업(8.36점), 동물판매업(8.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업종은 동물수입업(7.2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영업업체)

단위: 개소, %, 점

구분		중요성											평균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사람	빈도	1	1	-	1	2	42	21	28	38	26	140	8.27
		비율	0.3	0.3	-	0.3	0.7	14.0	7.0	9.3	12.7	8.7	46.7	
	반려동물	빈도	-	1	2	1	3	37	28	37	37	25	129	8.14
		비율	-	0.3	0.7	0.3	1.0	12.3	9.3	12.3	12.3	8.3	43.0	
생산업	사람	빈도	-	-	-	-	-	4	1	4	6	1	18	8.56
		비율	-	-	-	-	-	11.8	2.9	11.8	17.6	2.9	52.9	
	반려동물	빈도	-	-	-	-	-	5	2	3	3	2	19	8.53
		비율	-	-	-	-	-	14.7	5.9	8.8	8.8	5.9	55.9	
수입업	사람	빈도	-	-	-	-	-	1	1	2	-	-	4	8.13
		비율	-	-	-	-	-	12.5	12.5	25.0	-	-	50.0	
	반려동물	빈도	-	-	-	-	1	2	1	-	1	-	3	7.25
		비율	-	-	-	-	12.5	25.0	12.5	-	12.5	-	37.5	
판매업	사람	빈도	-	-	-	-	-	4	2	1	2	5	14	8.57
		비율	-	-	-	-	-	14.3	7.1	3.6	7.1	17.9	50.0	
	반려동물	빈도	-	-	-	-	-	3	2	3	6	5	9	8.25
		비율	-	-	-	-	-	10.7	7.1	10.7	21.4	17.9	32.1	
전시업	사람	빈도	-	-	-	-	-	7	6	6	4	4	25	8.29
		비율	-	-	-	-	-	13.5	11.5	11.5	7.7	7.7	48.1	
	반려동물	빈도	-	-	-	-	-	3	7	7	4	5	26	8.52
		비율	-	-	-	-	-	5.8	13.5	13.5	7.7	9.6	50.0	
위탁관리업	사람	빈도	-	-	-	1	1	8	5	3	10	5	25	8.16
		비율	-	-	-	1.7	1.7	13.8	8.6	5.2	17.2	8.6	43.1	
	반려동물	빈도	-	-	1	-	1	6	6	9	6	4	25	8.09
		비율	-	-	1.7	-	1.7	10.3	10.3	15.5	10.3	6.9	43.1	

(계속)

구분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미 용 업	사람	빈도	1	1	-	-	1	17	5	11	14	10	49	8.16
		비율	0.9	0.9	-	-	0.9	15.6	4.6	10.1	12.8	9.2	45.0	
	반려동물	빈도	-	1	1	1	1	17	9	14	15	7	43	7.89
		비율	-	0.9	0.9	0.9	0.9	15.6	8.3	12.8	13.8	6.4	39.4	
장 묘 업	사람	빈도	-	-	-	-	-	1	1	1	2	1	5	8.45
		비율	-	-	-	-	-	9.1	9.1	9.1	18.2	9.1	45.5	
	반려동물	빈도	-	-	-	-	-	1	1	1	2	2	4	8.36
		비율	-	-	-	-	-	9.1	9.1	9.1	18.2	18.2	36.4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람 및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복지의 중요성과 같이 사람에 대한 복지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영업업체 기준 사람 및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에 대한 평균 점수는 각각 5.79점과 4.00점으로 나타나 사람 대비 반려동물의 상대적 복지 수준은 69.1%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사람 복지의 수준이 더욱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반려동물 복지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업종은 동물수입업(5.25점)이며, 다음으로 동물생산업(4.74점), 동물판매업(4.14점), 동물미용업(4.0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업종은 동물전시업(3.33점)으로 나타났다.

〈표 3-23〉 사람 및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영업업체)

단위: 개소, %, 점

구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 낮음 보통 → 높음 </div>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사람	빈도	2	2	12	22	22	101	27	48	38	9	17	5.79
		비율	0.7	0.7	4.0	7.3	7.3	33.7	9.0	16.0	12.7	3.0	5.7	
	반려동물	빈도	16	16	48	56	28	87	11	16	12	2	8	4.00
		비율	5.3	5.3	16.0	18.7	9.3	29.0	3.7	5.3	4.0	0.7	2.7	
생산업	사람	빈도	-	-	1	2	2	10	4	9	2	-	4	6.15
		비율	-	-	2.9	5.9	5.9	29.4	11.8	26.5	5.9	-	11.8	
	반려동물	빈도	2	-	2	5	4	14	2	-	3	-	2	4.74
		비율	5.9	-	5.9	14.7	11.8	41.2	5.9	-	8.8	-	5.9	
수업업	사람	빈도	-	-	-	-	-	4	1	1	1	-	1	6.38
		비율	-	-	-	-	-	50.0	12.5	12.5	12.5	-	12.5	
	반려동물	빈도	-	-	1	-	-	5	-	1	1	-	-	5.25
		비율	-	-	12.5	-	-	62.5	-	12.5	12.5	-	-	
판매업	사람	빈도	-	1	-	2	2	7	3	6	5	1	1	6.04
		비율	-	3.6	-	7.1	7.1	25.0	10.7	21.4	17.9	3.6	3.6	
	반려동물	빈도	2	2	2	5	4	6	2	3	2	-	-	4.14
		비율	7.1	7.1	7.1	17.9	14.3	21.4	7.1	10.7	7.1	-	-	
전시업	사람	빈도	1	-	3	7	4	17	3	9	6	1	1	5.31
		비율	1.9	-	5.8	13.5	7.7	32.7	5.8	17.3	11.5	1.9	1.9	
	반려동물	빈도	6	4	11	9	4	13	-	3	1	-	1	3.33
		비율	11.5	7.7	21.2	17.3	7.7	25.0	-	5.8	1.9	-	1.9	
위탁관리업	사람	빈도	1	-	1	3	3	26	4	9	6	3	2	5.78
		비율	1.7	-	1.7	5.2	5.2	44.8	6.9	15.5	10.3	5.2	3.4	
	반려동물	빈도	4	4	9	7	8	16	5	1	2	1	1	3.91
		비율	6.9	6.9	15.5	12.1	13.8	27.6	8.6	1.7	3.4	1.7	1.7	
미용업	사람	빈도	-	1	5	8	10	35	10	12	17	4	7	5.83
		비율	-	0.9	4.6	7.3	9.2	32.1	9.2	11.0	15.6	3.7	6.4	
	반려동물	빈도	1	6	20	27	7	31	2	8	3	1	3	4.05
		비율	0.9	5.5	18.3	24.8	6.4	28.4	1.8	7.3	2.8	0.9	2.8	
장모업	사람	빈도	-	-	2	-	1	2	2	2	1	-	1	5.64
		비율	-	-	18.2	-	9.1	18.2	18.2	18.2	9.1	-	9.1	
	반려동물	빈도	1	-	3	3	1	2	-	-	-	-	1	3.55
		비율	9.1	-	27.3	27.3	9.1	18.2	-	-	-	-	9.1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영업업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이 현재 수준보다 향상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영업업체의 83.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 51.4%, 반대 26.0%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4〉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영업업체)

단위: 점, %

구분	5점 평균	그려함 (그려함+매우 그려함)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	4.29	83.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표 3-25〉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영업업체)

단위: 점, %

구분	5점 평균	찬성 (찬성+매우 찬성)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	3.28	51.4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한편,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국내 도입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루시법’에 대한 인지 수준과 국내 도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글상자 3-3〉 영국의 ‘루시법’ 관련 주요 내용

- 루시는 2013년 3월 영국의 강아지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의 이름으로 6년 동안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음.
- 이에 2018년 8월 영국 정부는 6개월령 이하의 강아지 및 고양이에 대해서 제3자(펫숍)가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을 경우 상업적 거래가 아닌 지인을 통해 분양 받거나 전문 브리더와 직접 거래해야 함.

자료: 한겨레(2018. 8. 23.), “영국의 ‘강아지 공장’을 물리친 개, 루시”.

조사 결과 ‘루시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영업업체 비율은 54.4%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31.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루시법’의 국내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56.3%, 반대 21.7%로 나타나 국내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루시법’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루시법’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이 35.7%로 나타나 반대 비율 5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루시법’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점, %

구분	5점 평균	알고 있음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음)
‘루시법’에 대한 인지 여부	3.28	54.4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표 3-27〉 ‘루시법’의 국내 도입 의향

단위: 개소(%)

구분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전체
매우 반대	4(11.8)	2(25.0)	6(21.4)	1(1.9)	2(3.4)	6(5.5)	-	21(7.0)
반대	4(11.8)	2(25.0)	8(28.6)	3(5.8)	14(24.1)	12(11.0)	1(9.1)	44(14.7)
잘 모르겠음	9(26.5)	2(25.0)	4(14.3)	10(19.2)	11(19)	27(24.8)	3(27.3)	66(22.0)
찬성	10(29.4)	2(25.0)	6(21.4)	17(32.7)	19(32.8)	36(33.0)	3(27.3)	93(31.0)
매우 찬성	7(20.6)	-	4(14.3)	21(40.4)	12(20.7)	28(25.7)	4(36.4)	76(25.3)
합계	34(100.0)	8(100.0)	28(100.0)	52(100.0)	58(100.0)	109(100.0)	11(100.0)	300(100.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3.5. 반려동물 복지 정책 및 규제 관련 인식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복지 분야 조직 구성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영업업체 비율은 26.7%에 불과하며,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3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사항을 인

지하고 있는 영업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10.0%에 불과하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3.8%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3-28〉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인지도(영업업체)

단위: 점, %

구분	5점 평균	알고 있음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음)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인지도	2.87	26.7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표 3-29〉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만족도(영업업체)

단위: 점, %

구분	5점 평균	만족 (만족+매우 만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만족도	2.60	10.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한편, 동물복지 향상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업종에 대한 각종 규제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4.0%로 나타났으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업종은 동물수입업(50.0%)이며, 다음으로 동물판매업(46.4%), 동물장묘업(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영업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3%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18.1%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0〉 반려동물 업종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개소(%)

구분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전체
매우 낮음	4(11.8)	-	-	5(9.6)	3(5.2)	3(2.8)	1(9.1)	16(5.3)
낮음	2(5.9)	2(25)	3(10.7)	9(17.3)	11(19.0)	18(16.5)	-	45(15.0)
보통	21(61.8)	2(25)	12(42.9)	27(51.9)	34(58.6)	65(59.6)	6(54.5)	167(55.7)
높음	6(17.6)	1(12.5)	7(25.0)	8(15.4)	9(15.5)	19(17.4)	1(9.1)	51(17.0)
매우 높음	1(2.9)	3(37.5)	6(21.4)	3(5.8)	1(1.7)	4(3.7)	3(27.3)	21(7.0)
합계	34(100.0)	8(100.0)	28(100.0)	52(100.0)	58(100.0)	109(100.0)	11(100.0)	300(100.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표 3-31〉 영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단위: 개소(%)

구분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전체
전혀 그렇지 않음	-	-	1(7.7)	-	-	2(8.7)	-	3(4.2)
그렇지 않음	2(28.6)	-	3(23.1)	1(9.1)	2(20.0)	2(8.7)	-	10(13.9)
보통	-	2(50.0)	2(15.4)	1(9.1)	1(10.0)	5(21.7)	1(25.0)	12(16.7)
그려함	4(57.1)	2(50.0)	5(38.5)	4(36.4)	7(70.0)	8(34.8)	1(25.0)	31(43.1)
매우 그려함	1(14.3)	-	2(15.4)	5(45.5)	-	6(26.1)	2(50.0)	16(22.2)
합계	7(100.0)	4(100.0)	13(100.0)	11(100.0)	10(100.0)	23(100.0)	4(100.0)	72(100.0)

자료: 영업업체 설문조사 결과.

4. 시사점

4.1. 관련 업종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복지 기반 강화 필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관련 영업업체의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영업업체 수와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업종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감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이후 각각 연평균 25.5%와 24.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 영업업체 조사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 비율은 33.0%로 나타나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 30.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반려동물의 사후단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63.7%)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반려동물 영업업체들이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있으며, 영업장 내 공통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보유율도 높게 나타나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복지 저하 요인은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외에 운영상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업체의 업종 형태에 따라서도 매우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업종의 시장 규모 확대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업종별 운영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개선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영업업체 내 복지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2. 영업업체 대상 교육체계 개선 필요

반려동물 영업업체 조사 결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써 영업 전 의무교육에 대한 이수 비율은 94.3%로 높게 나타났지만, 영업 중 이수해야 할 정기교육의 이수 비율은 79.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전 교육과 정기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대한 평균 만족도(5점 만점)는 각각 3.44점과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영업

에 대한 실질적 도움' 부분의 평균 만족도(5점 만점)는 각각 3.09점과 3.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업자 대상 교육이 영업자의 반려동물 복지 인식 개선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영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관련 교육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반려동물 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현장 중심의 교육 내용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3. 반려동물 복지 인식 개선 및 정책 방안 마련 필요

반려동물 영업을 조사 결과,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10점 만점)은 8.14점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10점 만점)은 4.00점으로 나타나 '보통(5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영업을 대상으로 26.7%만이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0.0%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영업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강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4장

반려동물 양육 가구 복지실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복지실태

1. 양육 가구 조사 개요

1.1. 기존 조사 현황 및 본 조사의 차별성

현재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실태 관련 주요 조사 자료로는 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 ②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③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2006년부터 1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총 네 차례(2017년, 2018년, 2021년, 2023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2021년부터 주로 농장동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22년 처음으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주요 항목에 대한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료의 경우 주로 반려동물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부

본 정형화된 소수의 항목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4-1〉 주요 기관별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 비교

구분	조사 기관	조사 항목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1.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법규 인식 ·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 /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 '반려견 양육자 준수 사항'에 대한 인식 / 양육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2. 동물 학대에 대한 태도 · 동물 학대 목격 시 행동 / 동물 학대 처벌 수준 / 동물 학대로 생각되는 행위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필요성 / 동물 학대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 금지 찬성 여부 3.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 입양 현황 / 매매계약서 발급 현황 / 반려동물 온라인 거래 금지 필요성 /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 양육 정보 접촉 경로 / 영업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 반려동물 양육 현황 · 반려가구 현황 / 선호 품종과 입양처 / 사회적·제도적 인식 2.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행태 · 실내외 생활 / 반려가구의 양육 만족도 / 반려가구의 양육 관심사 3.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 지출 · 입양비 / 양육비 / 장례비 / 양육 자금 / 전용 보험 4. 반려동물 원격 의료 서비스 ·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 니즈 / 원격 진료 서비스 니즈 5. 반려동물 맞이 준비 · 맞이 시기 / 맞이 준비의 충분 정도 6. 반려묘 양육 스트레스 관리 · 양육 정보 / 스트레스 요인과 관리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1. 반려동물 양육 현황 · 양육 여부 / 종류 및 마리수 / 반려 경로 / 동물등록 여부 / 중성화수술 여부 / 양육 장소 2. 동물보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 유기동물 관련 견해 / 매매 제한 동의 정도 / 등록 정보의 정기적 갱신 동의 정도 / 등록비 또는 세금 용도에 대한 견해 / 반려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 동의 정도 / 양육자 사전교육제 도입 동의 정도 / 동물 학대 방지 개선사항 / 동물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금지 동의 정도 /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및 사육 제한에 대한 동의 정도 / 민법 내 동물의 법적 지위 명시 동의 정도

주: 기관별 조사 항목은 조사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므로 최근 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황원경·이신애(2023),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2023),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주요 반려동물 복지실태의 일부 조사 항목과 영국의 동물복지법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물복지 영역을 참고하여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복지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의 복지 영역을 ① 영양 부문, ② 생활환경 부문, ③ 건강 및 의료 부문, ④ 행동 부문, ⑤ 정신 상태 및 경험 부문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개와 고양이의 습성 차이를 고려하여 각 종류별 복지실태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미소유자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반려동물 복지 관련 다양한 항목에 대한 소유자와 미소유자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보편타당한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2. 조사 개요

반려동물 복지실태 및 반려동물 복지 관련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 연령,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전국 만 19세 이상~70세 미만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복지실태 조사를 위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표본 수는 1,000명이며, 반려동물 관련 인식조사를 위한 미소유자의 표본 수는 500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16일부터 8월 14일(1개월)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반려동물 영업업체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한 온라인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응답자 일반 현황(공통), 반려견 및 반려묘 양육 현황(소유자), 미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의향(미소유자),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공통), 반려동물 복지실태(소유자),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문에 따라 복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³¹⁾

31) 설문조사 내용 중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소유자)’에 대한 결과는 ‘제6장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과제’ 부분에서 활용하였다.

〈표 4-2〉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응답자
(SQ) 일반 현황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주택 형태, 양육 여부, 양육 종류 및 마릿수	공통
(A) 반려견 양육 현황		반려견 현황, 입양 경로, 동물등록 현황/방법/의향, 양육 비용	소유자
(B) 반려묘 양육 현황		반려묘 현황, 입양 경로, 동물등록 현황/방법/의향, 양육 비용	소유자
(C) 미소유자 의향 조사		양육 관련 경험/종류/기간/만족도, 미양육 이유, 향후 양육 의향	미소유자
(D) 반려동물 복지 인식		사람과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평균 복지 수준/현재 복지 수준,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견해, 동물 학대 행위 관련 인식, 정부 조직 구성 및 정책에 대한 인식/만족도	공통
(E) 반려동물 복지실태	영양	영양 섭취 관심도, 식습관, 영양수준, 급여 형태, 사료 및 간식 제공 관련, 수분 섭취	소유자
	생활환경	생활환경 수준, 양육 장소, 휴식공간 여부 및 청소 주기, 생활용품 보유 관련	
	건강 및 의료	건강 및 의료 관심도, 의료 현황, 의료시설 만족도, 반려동물보험 관련 정보/가입 여부/만족도/가입 의향 등,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행동	평소 행동 수준, 훈련 여부/만족도, 외부 산책 관련	
	정신상태/경험	정서적 안정 수준, 가정 내 홀로 있는 시간, 취침 관련, 동반 여행 관련	
(F)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재 수준(만족도) 및 향후 필요 수준(중요도)	소유자
(G) 응답자 특성		결혼 여부, 동거가족 수,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공통

자료: 연구진 작성.

2. 양육 가구 조사 결과

2.1. 일반 현황

반려동물 소유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이 각각 27.0%와 18.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지역	빈도	비율	지역	빈도	비율
서울	284	18.9	충북	44	2.9
부산	96	6.4	충남	62	4.1
대구	68	4.5	전북	48	3.2
인천	89	5.9	전남	49	3.3
광주	43	2.9	경북	71	4.7
대전	42	2.8	경남	93	6.2
울산	32	2.1	제주	19	1.3
경기	405	27.0	세종	12	0.8
강원	43	2.9	합계	1,500	100.0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0.9%, 여성 49.1%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평균 연령은 약 45.7세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형태는 도시지역(동 지역)이 86.9%로 농촌지역(읍·면·리 지역) 1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중인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 여부는 기혼 62.3%, 미혼 37.7%이며, 1인 가구 비중은 17.9%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포함 평균 동거가족 수는 약 2.8명이며,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400만 원 미만이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0만~7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 일반 현황

단위: 명, %

성별	빈도	비율	1인 가구 여부	빈도	비율
남성	763	50.9	1인 가구	275	17.9
여성	737	49.1	2인 이상 가구	1,225	82.1
합계	1,500	100.0	합계	1,500	100.0
연령	빈도	비율	평균 동거가족 수(본인 포함)		
20대	248	16.5	2.8명		
30대	268	17.9	최종 학력	빈도	비율
40대	317	21.1	중학교 졸업 이하	9	0.6

(계속)

연령	빈도	비율	평균 동거가족 수(본인 포함)		
50대	353	23.5	고등학교 졸업	324	21.6
60대	314	20.9	대학교 졸업	1,022	68.1
합계	1,500	100.0	대학원 졸업	145	9.7
거주 지역 형태	빈도	비율	합계	1,500	100.0
도시	1,304	86.9	월평균 가구소득	빈도	비율
농촌	196	13.1	200만 원 미만	91	6.1
합계	1,500	100.0	200만~300만 원 미만	213	14.2
주택 형태	빈도	비율	300만~400만 원 미만	244	16.3
아파트	1,024	68.3	400만~500만 원 미만	222	14.8
단독주택	149	9.9	500만~600만 원 미만	196	13.1
주상복합	41	2.7	600만~700만 원 미만	154	10.3
오피스텔	54	3.6	700만~800만 원 미만	133	8.9
연립/빌라	232	15.5	800만~900만 원 미만	84	5.6
합계	1,500	100.0	900만~1,000만원미만	55	3.7
결혼 여부	빈도	비율	1,000만 원 이상	108	7.2
기혼	935	62.3	합계	1,500	100.0
미혼	565	37.7	-		
합계	1,500	100.0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현재 개 또는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개만 양육하고 있는 비율은 61.5%이며, 고양지만 양육하고 있는 비율은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와 고양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는 비율은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양육 중인 평균 양육 마릿수는 개 1.2마리, 고양이 1.6마리며, 전체 평균 양육 마릿수는 1.5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 종류

단위: 명, %

구분	개		고양이		개, 고양이 모두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려동물 종류	615	61.5	286	28.6	99	9.9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2.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구분하여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반려견 양육 현황은 개만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615명)와 개, 고양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99명)를 대상으로 한 714마리의 조사 결과이며, 반려묘 양육 현황은 고양이만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286명)와 개, 고양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99명)를 대상으로 한 385마리의 조사 결과이다.³²⁾

2.2.1. 반려동물 일반 현황 및 생애단계

현재 소유자들이 양육 중인 반려견의 성별은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각각 50.7%와 49.3%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나이는 6년 8개월이고 평균 양육 기간은 6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의 성별은 암컷이 55.1%로 수컷 44.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나이는 5년 9개월이고 평균 양육 기간은 5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성화수술 시행 비율은 반려견(69.5%)보다 반려묘(83.4%)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반려동물 일반 현황

단위: 마리(%)

구분	성별			평균 나이	평균 양육 기간	중성화수술 여부		
	암컷	수컷	합계			수술	미수술	합계
반려견	362 (50.7)	352 (49.3)	714 (100.0)	6년 8개월	6년 3개월	496 (69.5)	218 (30.5)	714 (100.0)
반려묘	212 (55.1)	173 (44.9)	385 (100.0)	5년 9개월	5년 4개월	321 (83.4)	64 (16.6)	385 (100.0)
전체	574 (52.2)	525 (47.8)	1,099 (100.0)	6년 5개월	6년	817 (74.3)	282 (25.7)	1,09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32) 조사의 편의성 및 응답의 정확성을 위하여 여러 마리 양육 시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반려견(1마리) 또는 반려묘(1마리)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개와 고양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각각 별도로 조사하였다.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나이를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생애단계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동물의료기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생애단계는 크게 신생기, 청년기, 성년기, 노령기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³³⁾

〈표 4-7〉 반려동물 생애단계 구분

구분	신생기 (Puppy/Kitten)	청년기 (Young adult)	성년기 (Mature adult)	노령기 (Senior)
개	~9개월	~4세	신체적·사회적 성숙 완료~ 기대 수명의 후반부 25%	기대 수명의 후반부 25%~
고양이	~1세	~6세	~10세	11세 이상

자료: 아이안 동물의료센터(<http://www.aianamc.co.kr/health-checkup-center/>), 검색일: 2024. 1. 21.; 미국 동물병원협회(<https://www.aaha.org/aaha-guidelines/life-stage-canine-2019/canine-life-stage-definitions/>), 검색일: 2024. 1. 21.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생애단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전체 반려동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년기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년기 37.1%, 노령기 19.6%, 신생기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려견과 반려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반려견은 성년기가 44.4%로 가장 높고 반려묘는 청년기가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반려동물 노령화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의 노령화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양육 비용 지출 부담과 이에 따른 유실·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지속적인 양육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33) 다만,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개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알려져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표 4-8〉 조사 대상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비율

단위: 마리, %

구분	신생기 (Puppy/Kitten)		청년기 (Young adult)		성년기 (Mature adult)		노령기 (Senior)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려견	14	2.0	233	32.6	317	44.4	150	21.0	714	100.0
반려묘	11	2.9	218	56.6	91	23.6	65	16.9	385	100.0
합계	25	2.3	451	41.0	408	37.1	215	19.6	1,099	100.0

주 1) 동일한 종류라 할지라도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개의 평균 기대 수명은 15세로 가정하여 성년기는 ~11세, 노령기는 11세 초과로 구분하였음.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2.2. 반려동물 입양 경로 및 입양 전 교육

양육 중인 반려견의 입양 경로를 조사한 결과, ‘개인 입양(48.9%)’과 ‘펫숍(29.1%)’을 통한 비율이 전체의 78.0%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묘 역시 ‘개인 입양(47.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반려견과 달리 ‘길거리 구조(16.1%)’를 통한 입양 경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9〉 반려동물 입양 경로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 입양(친구/친척/지인)	349	48.9	181	47.0	530	48.2
동물병원	57	8.0	14	3.6	71	6.5
펫숍(분양숍)	208	29.1	55	14.3	263	23.9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46	6.4	38	9.9	84	7.6
인터넷 개인 거래	19	2.7	20	5.2	39	3.5
가정 내 번식(자가번식)	25	3.5	12	3.1	37	3.4
전문 브리더	7	1.0	3	0.8	10	0.9
길거리 구조	3	0.4	62	16.1	65	5.9
합계	714	100.0	385	100.0	1,09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통한 입양 전 사전 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전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소유자 24.8%, 반려묘 소유자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 교육 이수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수	177	24.8	83	21.6	260	23.7
미이수	537	75.2	302	78.4	839	76.3
합계	714	100.0	385	100.0	1,09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2.3.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³⁴⁾에 대한 인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반려견의 경우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0%로 나타나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한 반려묘 소유자들의 인지 수준은 48.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반려견 소유자들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동물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소유자 84.6%, 반려묘 소유자 62.8%로 나타나, 반려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인식 수준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4) 2014년부터 전국에 걸쳐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양이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며,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등록이 가능하다.

〈표 4-11〉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모름	14	2.0	62	16.1	76	6.9
제도명만 들어본 적 있음	93	13.0	135	35.1	228	20.7
어느 정도 알고 있음	328	45.9	141	36.6	469	42.7
매우 잘 알고 있음	279	39.1	47	12.2	326	29.7
합계	714	100.0	385	100.0	1,09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12〉 동물등록제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필요	11	1.5	11	2.9	22	2.0
불필요	14	2.0	28	7.3	42	3.8
보통	85	11.9	104	27.0	189	17.2
필요	252	35.3	158	41.0	410	37.3
매우 필요	352	49.3	84	21.8	436	39.7
합계	714	100.0	385	100.0	1,09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지자체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등을 통한 반려견의 등록 비율은 81.1%로 높게 나타난 반면,³⁵⁾ 반려묘의 등록 비율은 2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반려동물 등록 현황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등록	579	81.1	112	29.1	691	62.9
미등록	135	19.8	273	70.9	408	37.1
합계	714	100.0	385	100.0	1,09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35)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반려견 등록률(2022년 기준 55.5%)과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의 동물등록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동물등록을 실시한 반려묘 소유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69.7%)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4-14〉 반려묘 소유자의 동물등록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만족도	2	1.8	5	4.5	27	24.1	48	42.9	30	26.8	112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의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인식칩 56.1%, 외장형 43.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장형에 대한 만족 비율(82.2%)이 외장형(60.6%)보다 높게 나타났다.³⁶⁾

〈표 4-15〉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 현황

단위: 명, %

구분	내장형 인식칩		외장형 인식칩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	325	56.1	254	43.9	57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16〉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내장형	-	-	3	0.9	55	16.9	180	55.4	87	26.8	325	100.0
외장형	3	1.2	10	3.9	87	34.3	114	44.9	40	15.7	254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미등록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과 반려묘 소유자 모두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 각각 31.4%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각각 24.7%와 30.2%로 나타났다.

36) 현재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은 의무화가 아니며, 동물등록 시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표 4-17〉 반려동물 미등록 이유

단위: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24.7	30.2	28.4
동물등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	11.9	6.3	8.2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31.4	32.1	31.8
동물등록 비용(수수료)이 부담스럽기 때문	13.3	7.2	9.3
인근에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기 때문	10.1	7.8	8.6
생후 2개월 미만이기 때문	-	12.6	8.4
동물등록에 대한 거부감 때문	6.9	2.7	4.1
기타	1.7	1.0	1.2
합계	100.0	100.0	100.0

주: 복수응답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1순위 2점/2순위 1점).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 중 향후 동물등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28.9%, 반려묘 42.1%에 불과하며, 반려견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59.0%)이 내장형(41.0%)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 내장형 인식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향후 반려동물 등록 의향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10	7.4	23	8.4	33	8.1
낮음	18	13.3	45	16.5	63	15.4
보통	68	50.4	90	33.0	158	38.7
높음	31	23.0	88	32.2	119	29.2
매우 높음	8	5.9	27	9.9	35	8.6
합계	135	100.0	273	100.0	408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19〉 향후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 선호도

단위: 명, %

구분	내장형 인식칩		외장형 인식칩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려견 동물등록 방식	16	41.0	23	59.0	3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2.4. 반려동물 양육 비용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양육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출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소유자 36.7%, 반려묘 소유자 32.8%로 나타나 반려견 소유자의 부담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낮다고 인식하는 응답 비율을 고려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0〉 반려동물 양육 비용 지출 부담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10	1.4	9	2.3	19	1.7
낮음	42	5.9	35	9.1	77	7.0
보통	400	56.0	215	55.8	615	56.0
높음	212	29.7	100	26.0	312	28.4
매우 높음	50	7.0	26	6.8	76	6.9
합계	714	100.0	385	100.0	1,09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 비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견과 반려묘를 포함한 전체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 비용은 1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료 및 간식비와 의료비의 비중이 각각 40.6%를 차지하며, 서비스비는 1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반려견의 월평균 양육 비용은 20.9만 원으로 반려묘 15.9만 원보다 5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사료비 및 간식비와 의료비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반려견은 의료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반려묘는 사료 및 간식비의 비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 비용

단위: 만 원,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료 및 간식비	8.05	38.5	7.22	45.3	7.76	40.6
의료비(동물병원, 의약품 등)	8.38	40.4	6.59	41.5	7.76	40.6
서비스비(미용 등)	4.42	21.2	2.05	13.2	3.59	18.8
합계	20.85	100.0	15.86	100.0	19.11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글상자 4-1〉 국내외 주요 조사 기관의 반려동물 양육 비용 조사 결과

<p>〈국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가 있음. -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전체 반려동물의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이 12.66만 원(반려견 16.61만 원, 고양이 11.28만 원)으로 조사됨. -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서는 전체 반려동물의 가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이 15.4만 원(반려견 14.8만 원, 반려묘 13.6만 원)으로 조사됨. <p>※ 타 조사 대비 본 조사의 결과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 기관에 따라 조사 대상 및 항목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p>			
<p>〈해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수의학협회(AVMA)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가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76달러(반려견 54.4달러, 반려묘 67.3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일본 펫푸드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의 가구 및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각각 16,156엔 및 14,240엔이며, 반려묘는 각각 10,171엔 및 8,005엔으로 나타남. 			
<p>〈글상자 표 1〉 국내외 주요 기관별 반려동물 양육 비용 조사 결과</p>			
조사명	조사 기관	월평균 양육 비용	비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23)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마리당) 12.66만 원 - 반려견: (마리당) 16.61만 원 - 반려묘: (마리당) 11.28만 원	- 조사 대상: 소유자 1,410명 - 조사 항목: 전체, 병원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전체: (가구당) 15.4만 원 * 병원비 6.6만 원 미포함 - 반려견: (가구당) 14.8만 원 (마리당) 13.5만 원 - 반려묘: (가구당) 13.6만 원 (마리당) 12.6만 원	- 조사 대상: 소유자 1,000명 - 조사 항목: 식비, 용품, 미용, 보험료

(계속)

(계속)			
조사명	조사 기관	월평균 양육 비용	비고
2022 Pet Ownership And Demographics Sourcebook (2022)	미국 수의학협회 (AVMA)	- 전체: (가구당) 76달러 - 반려견: (가구당) 54.4달러 - 반려묘: (가구당) 67.3달러	- 조사 대상: 소유가구 2,011가구 - 조사 항목: 사료 및 간식, 병원비, 장난감, 미용, 기타
令和4年全国犬猫飼育実態調査 (2023)	일본 펫푸드협회	- 반려견: (가구당) 16,156엔 (마리당) 14,240엔 - 반려묘: (가구당) 10,171엔 (마리당) 8,005엔	- 조사 대상: 소유자 1,683명 - 조사 항목: 의료비, 사료 및 간식
<p>주 1) 기관별 조사 항목은 조사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므로 최근 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함. 2) AVMA의 조사 결과는 연간 양육비를 12개월로 나눈 값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황원경·이신애(2023),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미국 수의학협회(2022), 2022 AVMA Pet Ownership and Demographics Sourcebook; 일본 펫푸드협회(2023), 令和4年全国犬猫飼育実態調査.</p>			

한편, 반려동물의 양육 비용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령별 생애단계에 따라 지출 항목 및 지출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양육 비용 지출 부담 수준과 양육 비용을 앞에서 제시한 반려동물의 생애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생애단계별 양육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을 살펴본 결과 지출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반려동물의 경우 신생기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노령기 38.1%, 성년기 35.3%, 청년기 33.7%의 순으로 나타나 신생기와 노령기에 대한 지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2〉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양육 비용 지출 부담 수준

단위: 명, %

구분		신생기		청년기		성년기		노령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려견	매우 낮음	-	-	4	1.7	1	0.3	5	3.3
	낮음	-	-	14	6.0	24	7.6	4	2.7
	보통	7	50.0	131	56.2	182	57.4	80	53.3
	높음	6	42.9	70	30.0	90	28.4	46	30.7
	매우 높음	1	7.1	14	6.0	20	6.3	15	10.0
	합계	14	100.0	233	100.0	317	100.0	150	100.0
반려묘	매우 낮음	-	-	4	1.8	1	1.1	4	6.2
	낮음	1	9.1	26	11.9	7	7.7	1	1.5
	보통	7	63.6	120	55.1	49	53.9	39	60.0
	높음	2	18.2	56	25.7	29	31.9	13	20.0
	매우 높음	1	9.1	12	5.5	5	5.5	8	12.3
	합계	11	100.0	218	100.0	91	100.0	65	100.0
전체	매우 낮음	-	-	8	1.8	2	0.5	9	4.2
	낮음	1	4.0	40	8.9	31	7.6	5	2.3
	보통	14	56.0	251	55.7	231	56.6	119	55.4
	높음	8	32.0	126	27.9	119	29.2	59	27.4
	매우 높음	2	8.0	26	5.8	25	6.1	23	10.7
	합계	25	100.0	451	100.0	408	100.0	215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의 경우에도 신생기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령기 40.7%, 청년기 36.0%, 성년기 3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묘의 경우에는 성년기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령기 32.3%, 청년기 31.2%, 신생기 27.3%의 순으로 나타나 신생기의 양육 비용 지출 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월평균 양육 비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반려동물 기준 월평균 양육 비용은 신생기가 22.1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령기 19.8만 원, 청년기 19.5만 원, 성년기 18.1만 원의 순으로 나타나, 신생기 이후 성년기까지 감소하다가 노령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애단계별 지출 항목 비중을

살펴보면, 사료 및 간식비는 청년기(42.1%)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는 노령기(49.0%)에 가장 높고 서비스비는 신생기(23.1%)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견의 월평균 양육 비용은 신생기가 28.7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년기 22.7만 원, 노령기 21.8만 원, 성년기 18.7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 비중에 따라 살펴보면, 사료 및 간식비는 청년기와 성년기(각각 39.6%)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는 노령기(48.2%)에 가장 높고 서비스비는 청년기(23.8%)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묘의 경우에는 월평균 양육 비용이 성년기에 16.2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년기 16.1만 원, 신생기 13.6만 원, 노령기 15만 원의 순으로 나타나 신생기 이후 성년기까지 증가하다가 노령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출 항목 비중에 따라 살펴보면, 사료 및 간식비는 청년기(46.3%)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는 노령기(50.7%)에 가장 높고 서비스비는 신생기(23.5%)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월평균 양육 비용

단위: 만 원, %

구분		신생기		청년기		성년기		노령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반려견	사료 및 간식비	10.0	34.8	9.0	39.6	7.4	39.6	7.8	35.8
	의료비	12.1	42.2	8.3	36.6	7.3	39.0	10.5	48.2
	서비스비	6.6	23.0	5.4	23.8	4.0	21.4	3.5	16.0
	합계	28.7	100.0	22.7	100.0	18.7	100.0	21.8	100.0
반려묘	사료 및 간식비	5.9	43.4	7.4	46.3	7.3	45.1	6.6	44.0
	의료비	4.5	33.1	6.2	38.8	7.0	43.2	7.6	50.7
	서비스비	3.2	23.5	2.4	15.0	1.9	11.7	0.8	5.3
	합계	13.6	100.0	16.1	100.0	16.2	100.0	15.0	100.0
전체	사료 및 간식비	8.2	37.1	8.2	42.1	7.4	40.9	7.4	37.4
	의료비	8.8	39.8	7.3	37.4	7.2	39.8	9.7	49.0
	서비스비	5.1	23.1	4.0	20.5	3.5	19.3	2.7	13.6
	합계	22.1	100.0	19.5	100.0	18.1	100.0	19.8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3. 미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 및 의향

조사 대상 응답자 중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미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험 및 의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미소유자 중 과거에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4%로 나타나 양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50.9%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양육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종류는 개 74.9%, 고양이 7.7%, 개와 고양이 모두 17.4%이며,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 기간은 6.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과거 반려동물 양육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과거 양육 경험	247	49.4	253	50.6	500	100.0

자료: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25〉 과거 양육 반려동물 종류

단위: 명, %

구분	개		고양이		개, 고양이 모두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과거 양육 반려동물	185	74.9	19	7.7	43	17.4	247	100.0

자료: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과거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2%로 나타났으며,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6〉 과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과거 양육 경험 만족도	4	1.6	14	5.7	68	27.5	105	42.5	56	22.7	247	100.0

자료: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미소유자들이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가 힘들기 때문(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18.4%)’,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15.5%)’,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7〉 반려동물 미양육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18.4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	15.5
관리가 힘들기 때문	30.0
가족 및 이웃과의 갈등 때문	4.5
현재 거주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	9.9
입양 관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0.4
양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0.9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	12.1
동물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	7.7
기타	0.6
합계	100.0

주: 복수응답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1순위 2점/2순위 1점).

자료: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미소유자들의 향후(5년 내) 반려동물 양육 의향을 조사한 결과, 양육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양육을 원하는 반려동물 종류는 ‘개’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8〉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의향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향후 양육 의향	121	24.2	379	75.8	500	100.0

자료: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29〉 향후 양육 의향이 있는 반려동물 종류

단위: 명, %

구분	개		고양이		개, 고양이 모두		잘 모르겠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양육 의향 반려동물	76	62.8	16	13.2	28	23.1	1	0.8	121	100.0

자료: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4. 반려동물 복지 관련 인식

2.4.1.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 및 복지 수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를 대상으로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5점(보통)을 기준으로 0~10점 구간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각각 7.88점과 6.90점으로 나타나 사람 대비 반려동물 복지의 상대적 중요성은 87.6%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반려동물 소유자와 미소유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유자의 경우 각각 7.98점과 7.36점으로 나타나 사람 대비 반려동물 복지의 상대적 중요성은 92.2% 수준이며, 반려동물 미소유자는 각각 7.67점과 5.97점으로 나타나 사람 대비 반려동물 복지의 상대적 중요성은 77.8%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미소유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람보다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0〉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소유자 및 미소유자)

단위: 명, %, 점

구분		중요성											평균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사람	빈도	2	3	-	6	55	83	120	290	389	223	329	7.88
		비율	0.1	0.2	-	0.4	3.7	5.5	8.0	19.3	25.9	14.9	21.9	
	반려동물	빈도	16	10	14	26	117	197	221	267	289	159	184	6.90
		비율	1.1	0.7	0.9	1.7	7.8	13.1	14.7	17.8	19.3	10.6	12.3	
소유자	사람	빈도	-	-	-	4	29	46	81	192	261	164	223	7.98
		비율	-	-	-	0.4	2.9	4.6	8.1	19.2	26.1	16.4	22.3	
	반려동물	빈도	1	1	3	11	46	104	139	196	223	131	145	7.36
		비율	0.1	0.1	0.3	1.1	4.6	10.4	13.9	19.6	22.3	13.1	14.5	
미소유자	사람	빈도	2	3	-	2	26	37	39	98	128	59	106	7.67
		비율	0.4	0.6	-	0.4	5.2	7.4	7.8	19.6	25.6	11.8	21.2	
	반려동물	빈도	15	9	11	15	71	93	82	71	66	28	39	5.97
		비율	3.0	1.8	2.2	3.0	14.2	18.6	16.4	14.2	13.2	5.6	7.8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람 및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 수준에 대한 평균 점수는 각각 5.94점과 4.36점으로 나타나 사람 대비 반려동물의 상대적 복지 수준은 73.4%로 파악되었다. 반려동물 소유자와 미소유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유자의 경우 각각 6.01점과 4.24점으로 나타나 사람 대비 반려동물의 상대적 복지 수준은 70.5% 수준이며, 미소유자는 각각 5.80점과 4.61점으로 나타나 사람 대비 반려동물의 상대적 복지 수준은 79.5%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사람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인식 수준이 높고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미소유자의 인식 수준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미소유자 모두 ‘보통’ 이하로 나타나 높지 않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1〉 사람 및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소유자 및 미소유자)

단위: 명, %, 점

구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 낮음 보통 → 높음 </div>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사람	빈도	14	8	33	69	206	287	281	308	169	73	52	5.94
		비율	0.9	0.5	2.2	4.6	13.7	19.1	18.7	20.5	11.3	4.9	3.5	
	반려동물	빈도	79	83	170	210	255	276	171	114	49	58	35	4.36
		비율	5.3	5.5	11.3	14.0	17.0	18.4	11.4	7.6	3.3	3.9	2.3	
소유자	사람	빈도	11	5	18	47	134	183	168	223	124	52	35	6.01
		비율	1.1	0.5	1.8	4.7	13.4	18.3	16.8	22.3	12.4	5.2	3.5	
	반려동물	빈도	65	59	127	150	153	170	101	77	38	37	23	4.24
		비율	6.5	5.9	12.7	15.0	15.3	17.0	10.1	7.7	3.8	3.7	2.3	
미소유자	사람	빈도	3	3	15	22	72	104	113	85	45	21	17	5.80
		비율	0.6	0.6	3.0	4.4	14.4	20.8	22.6	17.0	9.0	4.2	3.4	
	반려동물	빈도	14	24	43	60	102	106	70	37	11	21	12	4.61
		비율	2.8	4.8	8.6	12.0	20.4	21.2	14.0	7.4	2.2	4.2	2.4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재 본인 및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 기준 본인 및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에 대한 평균 점수는 각각 6.51점과 6.10점으로 나타나 본인 대비 반려동물의 상대적 복지 수준은 93.7%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반려견 소유자와 반려묘 소유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반려견 소유자의 경우 각각 6.45점과 6.09점으로 나타나 본인 대비 반려동물의 상대적 복지 수준은 94.4% 수준이며, 반려묘 소유자의 경우 각각 6.61점과 6.11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반려묘 소유자들의 인식 수준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인 대비 반려동물의 상대적 복지 수준은 92.4%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표 4-32〉 소유자 및 반려동물의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 낮음 보통 → 높음 </div>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소유자	빈도	8	9	13	20	50	201	149	248	180	85	37	6.51
		비율	0.8	0.9	1.3	2.0	5.0	20.1	14.9	24.8	18.0	8.5	3.7	
	반려동물	빈도	20	31	29	50	70	187	131	197	134	105	46	6.10
		비율	2.0	3.1	2.9	5.0	7.0	18.7	13.1	19.7	13.4	10.5	4.6	
반려견	소유자	빈도	7	7	6	15	35	145	102	154	121	58	24	6.45
		비율	1.0	1.0	0.9	2.2	5.2	21.5	15.1	22.8	18.0	8.6	3.6	
	반려동물	빈도	13	19	21	31	47	134	87	134	91	67	30	6.09
		비율	1.9	2.8	3.1	4.6	7.0	19.9	12.9	19.9	13.5	9.9	4.5	
반려묘	소유자	빈도	1	2	7	5	15	56	47	94	59	27	13	6.61
		비율	0.3	0.6	2.1	1.5	4.6	17.2	14.4	28.8	18.1	8.3	4.0	
	반려동물	빈도	7	12	8	19	23	53	44	63	43	38	16	6.11
		비율	2.1	3.7	2.5	5.8	7.1	16.3	13.5	19.3	13.2	11.7	4.9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4.2.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 및 추가 세금 부담 의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이 현재 수준보다 향상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려동물 소유자와 미소유자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유자 72.3%, 미소유자 45.4%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 및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6.7%와 32.7%로 나타나 찬성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반려동물 소유자와 미소유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유자 46.4%, 미소유자 17.4%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미소유자의 반대 응답 비율이 51.8%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3〉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소유자 및 미소유자)

단위: 명, %

구분	소유자		미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필요 없음	10	1.0	23	4.6	33	2.2
필요 없음	27	2.7	67	13.4	94	6.3
현 수준이 적당	240	24.0	183	36.6	423	28.2
필요함	426	42.6	172	34.4	598	39.9
매우 필요함	297	29.7	55	11.0	352	23.5
합계	1,000	100.0	500	100.0	1,500	100.0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34〉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소유자 및 미소유자)

단위: 명, %

구분	소유자		미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반대	63	6.3	123	24.6	186	12.4
반대	168	16.8	136	27.2	304	20.3
잘 모르겠음	305	30.5	154	30.8	459	30.6
찬성	361	36.1	75	15.0	436	29.0
매우 찬성	103	10.3	12	2.4	115	7.7
합계	1,000	100.0	500	100.0	1,500	100.0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4.3. 반려동물 학대 관련 인식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변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로 나타나 목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72.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동물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목격 이후 지자체 또는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자의 신고 경험 비율(28.0%)이 미소유자(12.5%)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35〉 동물 학대 행위 목격 경험

단위: 명, %

구분	소유자		미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336	33.6	80	16.0	416	27.7
없음	664	66.4	420	84.0	1,084	72.3
합계	1,000	100.0	500	100.0	1,500	100.0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36〉 동물 학대 행위 목격 이후 관련 기관 신고 경험

단위: 명, %

구분	소유자		미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94	28.0	10	12.5	104	25.0
없음	242	72.0	70	87.5	312	75.0
합계	336	100.0	80	100.0	416	100.0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또한 동물 학대자의 처벌 강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은 87.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소유자의 찬성 비율(90.4%)과 미소유자의 찬성 비율(82.0%) 모두 높게 나타나, 동물 학대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견해는 반려동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7〉 동물 학대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소유자		미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반대	3	0.3	2	0.4	5	0.3
반대	13	1.3	14	2.8	27	1.8
보통	80	8.0	74	14.8	154	10.3
찬성	318	31.8	223	44.6	541	36.1
매우 찬성	586	58.6	187	37.4	773	51.5
합계	1,000	100.0	500	100.0	1,500	100.0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4.4. 반려동물 복지 정책 관련 인식

현재 반려동물 복지 분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4.5%만이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대상자라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지 수준도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만족도는 40.4%로 나타났으며, 소유자와 미소유자의 만족도는 각각 42.3%와 29.4%로 나타나 소유자의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38〉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인지도(소유자 및 미소유자)

단위: 명, %

구분	소유자		미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모름	92	9.2	104	20.8	196	13.1
모름	346	34.6	211	42.2	557	37.1
보통	378	37.8	151	30.2	529	35.3
알고 있음	142	14.2	32	6.4	174	11.6
매우 잘 알고 있음	42	4.2	2	0.4	44	2.9
합계	1,000	100.0	500	100.0	1,500	100.0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39〉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구성 및 정책 만족도(소유자 및 미소유자)

단위: 명, %

구분	소유자		미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2	6.5	2	5.9	14	6.4
불만족	27	14.7	4	11.8	31	14.2
보통	67	36.4	18	52.9	85	39.0
만족	54	29.3	7	20.6	61	28.0
매우 만족	24	13.0	3	8.8	27	12.4
합계	184	100.0	34	100.0	218	100.0

자료: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5. 반려동물 복지실태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구분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중 반려견 복지실태는 개만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615명)와 개, 고양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99명) 중 개에 대해 응답한 소유자(59명)를 대상으로 한 674명의 조사 결과이다. 그리고 반려묘 복지실태는 고양이만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286명)와 개, 고양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99명) 중 고양이에 대해 응답한 소유자(40명)를 대상으로 한 326명의 조사 결과이다.³⁷⁾

2.5.1. 영양 부문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영양 섭취에 대한 소유자들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소유자 67.4%, 반려묘 소유자 75.2%로 나타나, 반려묘 소유자들의 관심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반려동물의 영양 섭취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13	1.9	-	-	13	1.3
낮음	15	2.2	3	0.9	18	1.8
보통	192	28.5	78	23.9	270	27.0
높음	319	47.3	159	48.8	478	47.8
매우 높음	135	20.2	86	26.4	221	22.1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37) 조사의 편의성 및 응답의 정확성을 위하여 여러 마리 양육 시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반려견(1마리) 또는 반려묘(1마리)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개와 고양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반려견과 반려묘 중 양육 기간이 더욱 오래된 반려동물(1마리)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반려동물의 주식은 사료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일부 가구에서는 사료와 가정 내 조리식품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먹이를 급여하는 방식은 반려견의 경우 분할배식 비율이 7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묘는 분할배식과 자율배식 비율이 각각 45.4%와 54.6%로 나타나 자율배식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41〉 반려동물의 주요 섭취 식품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료	527	78.2	289	88.7	816	81.6
가정 내 조리식품	26	3.9	9	2.8	35	3.5
혼합	121	18.0	28	8.6	149	14.9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평균 혼합 비율	사료 65.4%/ 가정 내 조리 34.6%		사료 68.6%/ 가정 내 조리 31.4%		사료 66.0%/ 가정 내 조리 34.0%	

주: 평균 혼합 비율은 '혼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평균 수치임.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42〉 반려동물의 먹이 급여 방식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분할배식	472	70.0	148	45.4	620	62.0
자율배식	202	30.0	178	54.6	380	38.0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주 1) 분할배식은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키는 배식 방법을 의미함.

2) 자율배식은 한 번에 충분한 양을 주고 스스로 찾아 먹도록 하는 배식 방법을 의미함.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식습관 수준이 규칙적이라는 응답 비율은 반려견 소유자 65.0%, 반려묘 소유자 66.3%로 나타나 전반적인 식습관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먹이에 대한 영양수준이 균형적이라는 응답 비율은 반려견 소유자 62.6%, 반려묘 소유자 72.7%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반려묘 소유자의

영양수준에 대한 인식이 반려견 소유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43〉 반려동물의 식습관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규칙적	9	1.3	6	1.8	15	1.5
불규칙적	53	7.9	31	9.5	84	8.4
보통	174	25.8	73	22.4	247	24.7
규칙적	347	51.5	154	47.2	501	50.1
매우 규칙적	91	13.5	62	19.0	153	15.3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44〉 반려동물 먹이의 영양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균형적	1	0.1	1	0.3	2	0.2
불균형적	13	1.9	-	-	13	1.3
보통	238	35.3	88	27.0	326	32.6
균형적	364	54.0	189	58.0	553	55.3
매우 균형적	58	8.6	48	14.7	106	10.6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할 때 품종 및 생애단계 등의 특성과 비만 및 영양실조 등의 건강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려동물의 품종 및 생애단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비율(64.1%)보다 건강요인을 고려한다는 비율(72.2%)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자의 74.6%는 먹이 외에도 양육 중인 반려동물에게 주기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먹이 제공 시 품종 및 생애단계 고려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고려하지 않음	3	0.4	4	1.2	7	0.7
고려하지 않음	37	5.5	29	8.9	66	6.6
보통	205	30.4	81	24.8	286	28.6
고려함	356	52.8	147	45.1	503	50.3
매우 고려함	73	10.8	65	19.9	138	13.8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46〉 먹이 제공 시 건강요인 고려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고려하지 않음	4	0.6	3	0.9	7	0.7
고려하지 않음	28	4.2	18	5.5	46	4.6
보통	163	24.2	62	19.0	225	22.5
고려함	394	58.5	180	55.2	574	57.4
매우 고려함	85	12.6	63	19.3	148	14.8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47〉 주기적 간식 제공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음	-	-	3	0.9	3	0.3
그렇지 않음	40	5.9	12	3.7	52	5.2
보통	142	21.1	57	17.5	199	19.9
그려함	384	57.0	175	53.7	559	55.9
매우 그려함	108	16.0	79	24.2	187	18.7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의 섭취 식품 구매 시 영양 성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반려동물의 특성 및 기호, 가격, 위생 및 안전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료와 간식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반려견 소유자들의 경우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74.6%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묘 소유자들은 국내산 54.0%, 외국산 46.0%로 나타나 반려견 소유자들보다 외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48〉 반려동물 섭취 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가격	16.0	10.0	14.0
영양 성분	33.3	31.4	32.7
원산지	4.9	2.9	4.3
브랜드	5.0	9.9	6.6
반려동물 특성 및 기호	19.9	24.7	21.5
구입 및 주문의 편리성	1.9	2.5	2.1
보관 용이성	1.7	1.2	1.6
품질 등급	5.7	4.7	5.4
위생 및 안전성	8.4	9.5	8.7
후기, 평점, 추천 등	1.8	2.1	1.9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1.2	1.0	1.2
합계	100.0	100.0	100.0

주: 복수응답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1순위 2점/2순위 1점).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49〉 사료 및 간식 제품의 원산지 선호도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내산	499	74.6	176	54.0	675	67.5
외국산	175	26.0	150	46.0	325	32.5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사료와 간식 외에도 특정 영양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펫푸드를 제공한다는 응답 비율은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약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수분 섭취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기능성 펫푸드 제공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음	22	3.3	20	6.1	42	4.2
그렇지 않음	173	25.7	79	24.2	252	25.2
보통	200	29.7	84	25.8	284	28.4
그려함	242	35.9	111	34.0	353	35.3
매우 그려함	37	5.5	32	9.8	69	6.9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51〉 평소 수분 섭취 정도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충분하지 않음	-	-	4	1.2	4	0.4
충분하지 않음	11	1.6	13	4.0	24	2.4
보통	159	23.6	67	20.6	226	22.6
충분함	388	57.6	174	53.4	562	56.2
매우 충분함	116	17.2	68	20.9	184	18.4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5.2. 생활환경 부문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수준에 대한 소유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생활환경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소유자 57.6%, 반려묘 소유자 62.6%로 나타나 반려묘 소유자들의 인식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2〉 반려동물의 생활환경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1	0.1	-	-	1	0.1
낮음	12	1.8	3	0.9	15	1.5
보통	273	40.5	119	36.5	392	39.2
높음	313	46.4	161	49.4	474	47.4
매우 높음	75	11.1	43	13.2	118	11.8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양육 장소는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대부분 실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사육공간 내에 집, 케이지, 전용 쿠션 등 별도의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휴식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실외 사육공간에서 양육 시에도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휴식공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외 사육공간에서 양육 시 목줄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견의 45.3%, 반려묘의 22.7%가 자주 또는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실내 및 실외 휴식공간에 대한 월평균 청소 횟수는 반려견의 경우 각각 9.4회와 10.4회이며, 반려묘는 각각 11.7회와 5.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반려동물 양육 장소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내(집 안)	621	92.1	304	93.3	925	92.5
실외(마당 등)	53	7.9	22	6.7	75	7.5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54〉 실내외 양육 장소 내 반려동물 휴식공간 유무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내	휴식공간 있음	584	94.0	298	98.0	882	95.4
	휴식공간 없음	37	6.0	6	2.0	43	4.6
	합계	621	100.0	304	100.0	1,000	100.0
실외	휴식공간 있음	47	88.7	19	86.4	66	88.0
	휴식공간 없음	6	11.3	3	13.6	9	12.0
	합계	53	100.0	22	100.0	75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55〉 실외 양육 시 목줄 착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착용하지 않음	4	7.5	7	31.8	11	14.7
착용하지 않는 편임	12	22.6	4	18.2	16	21.3
가끔 착용함	13	24.5	6	27.3	19	25.3
자주 착용함	10	18.9	3	13.6	13	17.3
항상 착용함	14	26.4	2	9.1	16	21.3
합계	53	100.0	22	100.0	75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56〉 반려동물 휴식공간의 월평균 청소 횟수

단위: 회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실내 휴식공간	9.4	11.7	10.2
실외 휴식공간	10.4	5.8	9.1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현재 반려동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파악한 결과,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밥그릇, 방석(쿠션), 장난감의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7〉 반려동물 관련 생활용품 보유 현황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석(쿠션)	581	86.2	276	84.7	857	85.7
밥그릇	654	97.0	312	95.7	966	96.6
자율 급식기	159	23.6	111	34.0	270	27.0
울타리/펜스	277	41.1	73	22.4	350	35.0
켄넬	240	35.6	120	36.8	360	36.0
배변판/패드	520	77.2	204	62.6	724	72.4
전용 매트	372	55.2	167	51.2	539	53.9
운동용품	191	28.3	123	37.7	314	31.4
장남감	543	80.6	286	87.7	829	82.9
목욕용품	528	78.3	192	58.9	720	72.0
미용용품	399	59.2	159	48.8	558	55.8
유모차	148	22.0	23	7.1	171	17.1
캣타워	-	-	255	78.2	255	25.5

주: 캣타워의 전체 비율은 반려묘만을 고려한 수치임.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5.3. 건강 및 의료 부문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평소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 70.8%, 반려묘 75.5%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반려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8〉 반려동물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1	0.1	1	0.3	2	0.2
낮음	7	1.0	1	0.3	8	0.8
보통	189	28.0	78	23.9	267	26.7
높음	335	49.7	162	49.7	497	49.7
매우 높음	142	21.1	84	25.8	226	22.6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양육 중인 반려동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50.4%, 반려묘 52.1%로 나타나, 대략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수 예방접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은 반려견 72.2%, 반려묘 62.9%로 나타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9〉 반려동물에 대한 주기적 건강검진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음	13	1.9	8	2.5	21	2.1
그렇지 않음	92	13.6	40	12.3	132	13.2
보통	229	34.0	108	33.1	337	33.7
그려함	255	37.8	109	33.4	364	36.4
매우 그려함	85	12.6	61	18.7	146	14.6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60〉 반려동물에 대한 주기적 필수 예방접종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음	4	0.6	5	1.5	9	0.9
그렇지 않음	31	4.6	31	9.5	62	6.2
보통	152	22.6	85	26.1	237	23.7
그려함	315	46.7	126	38.7	441	44.1
매우 그려함	172	25.5	79	24.2	251	25.1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소유자의 비율은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59.8%로 나타났으며, 이 중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 비율은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약 9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1〉 반려동물의 질병 및 상해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403	59.8	195	59.8	598	59.8
없음	271	40.2	131	40.2	402	40.2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62〉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한 동물병원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392	97.3	190	97.4	582	97.3
없음	11	2.7	5	2.6	16	2.7
합계	403	100.0	195	100.0	598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유자들의 이용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반려동물 기준 ‘동물병원과의 접근성(3.47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결과(3.46점)’, ‘진료 서비스(3.45점)’, ‘진료 항목의 다양성(3.15점)’, ‘진료비 적정성(2.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보통’ 미만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주요 불만족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미미한 증상으로 자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3〉 동물병원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진료비 적정성	반려견	21.9	40.3	21.9	12.5	3.3
반려묘	24.7		41.6	20.0	10.5	3.2	100.0	2.26
전체	22.9		40.7	21.3	11.9	3.3	100.0	2.32

(계속)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진료 항목의 다양성	반려견	4.8	17.6	41.8	29.8	5.9	100.0	3.14
	반려묘	5.3	17.9	37.4	33.2	6.3	100.0	3.17
	전체	5.0	17.7	40.4	30.9	6.0	100.0	3.15
진료 서비스	반려견	4.6	8.7	35.5	43.6	7.7	100.0	3.41
	반려묘	2.1	10.5	31.6	43.7	12.1	100.0	3.53
	전체	3.8	9.3	34.2	43.6	9.1	100.0	3.45
진료 결과	반려견	4.1	8.9	33.4	47.2	6.4	100.0	3.43
	반려묘	3.2	9.5	28.9	47.9	10.5	100.0	3.53
	전체	3.8	9.1	32.0	47.4	7.7	100.0	3.46
동물병원과의 접근성	반려견	3.8	9.7	29.6	45.2	11.7	100.0	3.51
	반려묘	3.2	16.3	30.5	39.5	10.5	100.0	3.38
	전체	3.6	11.6	29.9	43.3	11.3	100.0	3.47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64〉 동물병원 미이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미미한 증상으로 자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	5	45.5	4	80.0	9	56.3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	1	9.1	-	-	1	6.3
치료비가 부담스럽기 때문	1	9.1	1	20.0	2	12.5
인근에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	2	18.2	-	-	2	12.5
해당 진료 항목이 없기 때문	2	18.2	-	-	2	12.5
합계	11	100.0	5	100.0	16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인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5.4%만이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보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 역시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65〉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모름	31	4.6	17	5.2	48	4.8
들어본 적 있음	271	40.2	127	39.0	398	39.8
어느 정도 알고 있음	278	41.2	145	44.5	423	42.3
매우 잘 알고 있음	94	13.9	37	11.3	131	13.1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66〉 반려동물 보험의 중요성 및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11	1.6	9	2.8	20	2.0
낮음	46	6.8	23	7.1	69	6.9
보통	263	39.0	130	39.9	393	39.3
높음	266	39.5	131	40.2	397	39.7
매우 높음	88	13.1	33	10.1	121	12.1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 중 현재 반려동물 보험 가입 비율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서는 반려견 16.6%, 반려묘 8.3%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체 반려동물의 평균 보험 가입 기간 및 월평균 보험료는 각각 1년 6개월 및 45,829원으로 나타났으며, 반려견은 각각 1년 5개월 및 45,378원이고 반려묘는 각각 1년 9개월 및 47,700원으로 나타났다.

〈표 4-67〉 반려동물 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입	112	16.6	27	8.3	139	13.9
미가입	562	83.4	299	91.7	861	86.1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68〉 반려동물 보험의 평균 가입 기간 및 월평균 보험료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평균 가입 기간	1년 5개월	1년 9개월	1년 6개월
월평균 보험료	45,378원	47,700원	45,829원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반려동물 기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은 ‘보험사의 신뢰성(3.65점)’이며, 다음으로 ‘보험 가입 절차(3.56점)’, ‘보장 범위(3.44점)’, ‘보험료 수준(3.3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9〉 반려동물 보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보험료 수준	반려견	6.3	12.5	40.2	32.1	8.9
	반려묘	-	22.2	22.2	37.0	18.5	100.0	3.52
	전체	5.0	14.4	36.7	33.1	10.8	100.0	3.30
보험 가입 절차	반려견	-	7.1	40.2	45.5	7.1	100.0	3.53
	반려묘	-	7.4	40.7	25.9	25.9	100.0	3.70
	전체	-	7.2	40.3	41.7	10.8	100.0	3.56
보장 범위	반려견	2.7	12.5	39.3	35.7	9.8	100.0	3.38
	반려묘	3.7	18.5	18.5	22.2	37.0	100.0	3.70
	전체	2.9	13.7	35.3	33.1	15.1	100.0	3.44

(계속)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보험사 신뢰성	반려견	0.9	4.5	36.6	50.0	8.0	100.0	3.60
	반려묘	-	11.1	18.5	40.7	29.6	100.0	3.89
	전체	0.7	5.8	33.1	48.2	12.2	100.0	3.65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향후(5년 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약 30% 내외 수준의 소유자들만이 가입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반려동물 가입 예상 시기는 현재로부터 약 1.5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반려견은 약 1.4년 이후, 반려묘는 약 1.7년 이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70〉 향후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68	12.1	45	15.1	113	13.1
낮음	96	17.1	44	14.7	140	16.3
보통	226	40.2	119	39.8	345	40.1
높음	131	23.3	73	24.4	204	23.7
매우 높음	41	7.3	18	6.0	59	6.9
합계	562	100.0	299	100.0	861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71〉 향후 반려동물 보험 가입 예상 시기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반려동물 보험 가입 예상 시기	1.4년 이후	1.7년 이후	1.5년 이후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유자들의 비율은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약 45%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체 처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거나 인근 땅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사체 처리가 이루어진 가운데, 반려견의 경우 ‘동물장묘업체 이용’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묘의 경우에는 ‘인근 땅에 매립’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³⁸⁾

〈표 4-72〉 반려동물 죽음에 대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304	45.1	145	44.5	449	44.9
없음	370	54.9	181	55.5	551	55.1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73〉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물병원에 위탁처리	51	16.8	26	17.9	77	17.1
동물장묘업체 이용	132	43.4	55	37.9	187	41.6
인근 땅에 매립	112	36.8	59	40.7	171	38.1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9	3.0	5	3.4	14	3.1
합계	304	100.0	145	100.0	44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당시 사망한 반려동물 중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비율은 전체 기준 31.8%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중 반려동물 사망 이후 동물등록 변경 등 말소 신고가 이루어진 비율은 78.3%로 높게 나타났다.

38) 여러 마리일 경우 가장 최근의 경험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4-74〉 사망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등록	112	36.8	31	21.4	143	31.8
미등록	192	63.2	114	78.6	306	68.2
합계	304	100.0	145	100.0	44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75〉 사망한 반려동물의 말소 신고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말소 신고 완료	87	77.7	25	80.6	112	78.3
말소 신고 안 함	25	22.3	6	19.4	31	21.7
합계	112	100.0	31	100.0	143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만약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근 땅에 매립할 것이라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표 4-76〉 향후 반려동물 사망 시 사체 처리 방법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물병원에 위탁처리	91	13.5	37	11.3	128	12.8
동물장묘업체 이용	376	55.8	189	58.0	565	56.5
인근 땅에 매립	79	11.7	32	9.8	111	11.1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15	2.2	4	1.2	19	1.9
아직 계획 없음	113	16.8	64	19.6	177	17.7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5.4. 행동 부문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평소 행동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활발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7〉 반려동물의 행동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활발하지 않음	4	0.6	2	0.6	6	0.6
활발하지 않음	28	4.2	18	5.5	46	4.6
보통	169	25.1	97	29.8	266	26.6
활발함	358	53.1	156	47.9	514	51.4
매우 활발함	115	17.1	53	16.3	168	16.8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행동 발달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13.1%, 반려묘 7.4%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훈련 결과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반려견(51.1%)보다 반려묘(70.8%)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4-78〉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훈련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88	13.1	24	7.4	112	11.2
없음	586	86.9	302	92.6	888	88.8
합계	674	100.0	326	100.0	524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79〉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훈련 결과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3	3.4	-	-	3	2.7
불만족	7	8.0	1	4.2	8	7.1
보통	33	37.5	6	25.0	39	34.8
만족	33	37.5	11	45.8	44	39.3
매우 만족	12	13.6	6	25.0	18	16.1
합계	88	100.0	24	100.0	112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반려견의 경우 주기적인 외부 산책이 이루어진다는 응답 비율은 69.6%이며, 1주일 기준 평균 산책 횟수는 6.6회이고 1회 평균 산책 시간은 1.4시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80〉 반려견의 주기적 산책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기적 산책 여부	4	0.6	44	6.5	157	23.3	260	38.6	209	31.0	674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81〉 반려견의 평균 산책 횟수 및 시간

산책 횟수	산책 시간
1주일 기준 6.6회	1회 평균 1.4시간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주기적인 산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려견의 경우 목줄을 착용한다는 비율은 97.2%, 인식표 착용 비율은 62.9%, 배변 봉투 소지 및 수거 비율은 96.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외부 산책 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2〉 반려견의 외부 산책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단위: 명, %

구분	목줄 착용 여부		인식표 착용 여부		배변 봉투 소지 및 수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음	2	0.4	41	8.7	2	0.4
그렇지 않음	6	1.3	90	19.2	3	0.6
보통	5	1.1	43	9.2	11	2.3
그려함	99	21.1	149	31.8	121	25.8
매우 그려함	357	76.1	146	31.1	332	70.8
합계	469	100.0	469	100.0	46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5.5. 정신 상태 및 경험 부문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관심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82.6%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74.2%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3〉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관심 없음	-	-	3	0.9	3	0.3
관심 없음	7	1.0	2	0.6	9	0.9
보통	108	16.0	54	16.6	162	16.2
관심 있음	322	47.8	169	51.8	491	49.1
매우 관심 있음	237	35.2	98	30.1	335	33.5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84〉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안정	1	0.1	-	-	1	0.1
불안정	16	2.4	5	1.5	21	2.1
보통	168	24.9	68	20.9	236	23.6
안정적	369	54.7	195	59.8	564	56.4
매우 안정적	120	17.8	58	17.8	178	17.8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이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기준 30.8%로 나타나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려동물이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은 1일 평균 5.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있을 경우 상황 확인을 위해 홈캠, CCTV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34.0%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이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 느끼는 심리적 불안정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5〉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 정도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적음	91	13.5	26	8.0	117	11.7
적음	145	21.5	61	18.7	206	20.6
보통	245	36.4	124	38.0	369	36.9
많음	162	24.0	95	29.1	257	25.7
매우 많음	31	4.6	20	6.1	51	5.1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86〉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1일 평균	4.7시간	6.0시간	5.1시간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87〉 양육 장소 내 상황 확인을 위한 장비 사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용	228	33.8	112	34.4	340	34.0
미사용	446	66.2	214	65.6	660	66.0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88〉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 불안정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40	5.9	17	5.2	57	5.7
낮음	120	17.8	84	25.8	204	20.4
보통	287	42.6	139	42.6	426	42.6
높음	175	26.0	69	21.2	244	24.4
매우 높음	52	7.7	17	5.2	69	6.9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56.1%는 취침 시 양육자와 동침을 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동침 시 반려동물이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89〉 취침 시 양육자와의 동침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음	61	9.1	21	6.4	82	8.2
그렇지 않음	109	16.2	52	16.0	161	16.1
가끔 동침	131	19.4	65	19.9	196	19.6
자주 동침	133	19.7	80	24.5	213	21.3
항상 동침	240	35.6	108	33.1	348	34.8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90〉 동침을 통한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감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	-	1	0.5	1	0.2
낮음	-	-	-	-	-	-
보통	43	11.5	11	5.9	54	9.6
높음	188	50.4	100	53.2	288	51.3
매우 높음	142	38.1	76	40.4	218	38.9
합계	373	100.0	188	100.0	561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 중 양육 중인 반려동물과의 동반 여행을 선호하는 비율은 45.6%로 나타나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 29.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반려견에 대한 동반 여행 선호도(56.2%)가 반려묘에 대한 동반 여행 선호도(23.6%)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 중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을 이용(1박 2일 이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기준 41.1%로 나타났으며, 반려견(50.4%)이 반려묘(21.8%)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91〉 반려동물과의 동반 여행 선호도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선호하지 않음	30	4.5	77	23.6	107	10.7
선호하지 않음	91	13.5	100	30.7	191	19.1
보통	174	25.8	72	22.1	246	24.6
선호함	261	38.7	55	16.9	316	31.6
매우 선호함	118	17.5	22	6.7	140	14.0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92〉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이용(1박 2일 이상)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340	50.4	71	21.8	411	41.1
없음	334	49.6	255	78.2	589	58.9
합계	674	100.0	326	100.0	1,000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격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반려동물 기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은 ‘입지 만족도(3.47점)’이며, 다음으로 ‘시설 만족도(3.44점)’, ‘청결 만족도(3.43점)’, ‘가격 만족도(2.9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소유자의 미이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39.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15.4%)’, ‘선호하는 전용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10.5%)’, ‘전용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9.7%)’ 등으로 나타났다.

〈표 4-93〉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입지 만족도	반려견	2.6	10.9	35.9	40.3	10.3	100.0	3.45
	반려묘	2.8	5.6	32.4	46.5	12.7	100.0	3.61
	전체	2.7	10.0	35.3	41.4	10.7	100.0	3.47
가격 만족도	반려견	9.1	28.5	35.9	22.9	3.5	100.0	2.83
	반려묘	5.6	16.9	35.2	29.6	12.7	100.0	3.27
	전체	8.5	26.5	35.8	24.1	5.1	100.0	2.91
시설 만족도	반려견	2.4	13.5	34.7	39.7	9.7	100.0	3.41
	반려묘	-	11.3	32.4	40.8	15.5	100.0	3.61
	전체	1.9	13.1	34.3	39.9	10.7	100.0	3.44
청결 만족도	반려견	3.2	11.5	37.9	38.2	9.1	100.0	3.39
	반려묘	-	9.9	31.0	43.7	15.5	100.0	3.65
	전체	2.7	11.2	36.7	39.2	10.2	100.0	3.43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94〉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	59	17.7	32	12.5	91	15.4
일반 숙박시설과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	3	0.9	5	2.0	8	1.4
원하는 시기에 예약이 어렵기 때문	33	9.9	11	4.3	44	7.5
선호하는 전용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	37	11.1	25	9.8	62	10.5
전용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41	12.3	16	6.3	57	9.7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	111	33.2	122	47.8	233	39.6
원하는 지역에 입지해 있지 않기 때문	33	9.9	11	4.3	44	7.5
오히려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	14	4.2	29	11.4	43	7.3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	3	0.9	4	1.6	7	1.2
합계	334	100.0	255	100.0	589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3.1.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을 입양한 다수의 사람이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개인의 제한적인 정보에 의해 사전 준비 없이 입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도중 유실 또는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입양 전 사전 교육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의무감을 높이고 양육 중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3.2.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필요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출발점은 복지의 대상인 반려동물의 종류 및 개체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물등록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사 결과, 반려견 소유자의 경우 동물등록제를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0%로 높게 나타났으나 반려묘 소유자는 4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견 소유자의 84.6%와 반려묘 소유자의 62.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현황 조사 결과, 반려견의 등록 비율은 81.1%로 높게 나타났으나 반려묘는 29.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동물등록제 의무화 여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등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다는 점과 미등록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

과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반려견의 등록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제의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소유자의 미등록 이유는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반려견 소유자 31.4%, 반려묘 소유자 32.1%)’과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반려견 소유자 24.7%, 반려묘 소유자 30.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써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3. 반려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6.90점으로 나타났으나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은 4.36점으로 나타나 영업체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반려동물의 평균 복지 수준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와 미소유자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소유자 7.36점, 미소유자 5.97점으로 나타나 소유자의 인식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소유자 4.24점, 미소유자 4.61점으로 나타나 미소유자의 인식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소유자와 미소유자의 응답 비율은 각각 72.3%와 45.4%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 비율도 영업업체와 소유자 및 미소유자 전체가 각각 51.4%와 36.8%로 나타난 가운데 소유자와 미소유자의 찬성 비율은 각각 46.4%와 17.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과 복지 수준을 바라보는 인식은 반려동물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소유자와 미소유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동물 학대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소유자(90.4%)와 미소유자(82.0%) 모두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인식 차이는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일관적인 정책 추진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4.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양육 가구의 높은 관심 수준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양·생활환경·건강 및 의료·행동·정신 상태 및 경험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영양 섭취에 대한 높은 관심도(69.9%)를 지니고 있으며, 품종 및 생애단계를 고려하여 먹이를 제공(64.1%)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간식(74.6%) 및 기능성 펫푸드(42.2%)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74.6%)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양육 장소 관리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생활환경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생활용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도(72.3%)에 따라 주기적인 건강검진(51.0%)과 필수 예방접종(69.2%)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질병 및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9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행동 발달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훈련(11.2%)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반려견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기적인 외부 산책(6.6회/1주일)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소유자들이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높은 관심도(82.6%)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소유자들은 가정 내 상황 확인을 위한 장비 사용(34.0%), 반려동물과의 동침(56.1%) 및 동반 여행(선호 45.6%)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5.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연관산업 기반 강화 필요

많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영양·생활환경·건강 및 의료·행동·정신 상태 및 경험 부문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식품, 용품, 의료, 장묘업, 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관산업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와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식품 및 용품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기반한 반려동물 복지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업의 경우 동물병원 이용 만족도 중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인 진료비의 적정성(2.32점)과 진료 항목의 다양성(3.15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반려동물 사망 시 사체 처리 방법으로 동물장묘업체 이용(56.5%)이 가장 높게 나타나 동물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동물장묘업체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동반 여행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41.1%)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용 만족도가 낮은 항목인 가격 만족도(2.91점) 개선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6. 국민 체감형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수립·추진 필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운영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 및 양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양육 관련 지침을 상당 부분 포괄하고 있어 정부 조직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유자와 미소유자의 경우 14.5%만이 관련 사항을 알고 있으며, 이 중 40.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려동물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관련 사항이 정책 수요자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다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해외 반려동물 복지 정책 및 시사점

해외 반려동물 복지 정책 및 시사점

1. 영국

영국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³⁹⁾이며, 반려동물의 번식, 입양, 양육 등 동물 활동과 관련된 면허 및 등록에 대해서는 「개 번식 및 판매에 관한 복지법(Breeding and Sale of Dogs (welfare) Act 1999)」, 「공연동물 규제법(The Performing Animal (Regulation) Act 1925)」, 「동물 숙박 시설법(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 등 개별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39)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검색일: 2024. 5. 2.

〈표 5-1〉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과 주요 내용

관련 법	주요 내용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제1~3조): 법 적용 동물, 보호동물, 동물에 대한 책임(16세 미만 포함) · 위해 방지(제4~8조): 불필요한 고통, 훼손, 꼬리 제거, 독극물 투여, 싸움 등 · 복지 증진(제9~12조): 동물복지 보장 의무, 개선 공지, 16세 미만 판매 금지, 복지 증진 규제 · 면허 및 등록(제13조): 동물 활동 관련 면허 및 등록, 새로운 조항 신설 및 필요시 기존 법률 폐지 권한 명시(기존 법률: Performing Animal Act 1925, Pet Animal Act 1951, 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 Riding Establishments Act 1964, Breeding of Dogs Act 1973 등) · 실천강령 제정 및 폐기(제14~17조), 고통 동물 조사 진입 권한(제18~21조), 인허가·등록검사 및 영장 집행 권한(제22~29조), 기소(제30~31조), 벌칙조항(제32~45조)
생산 및 판매 「개 번식 및 판매에 관한복지법」 (Breeding and Sale of Dogs (welfare) Act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식 조항(제1~7조): 허가 전 검사 및 보고, 허가조건, 허가 개시 및 기간, 무면허 영업장 징계, 자격 박탈, 수수료, 시설 정의 · 판매 조항(제8~9조): 생산·판매시설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 보충 조항(제10~11조): 폐지조항, 시작과 범위 등
「애완동물법」 (Pet Animal Act 1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펫숍 면허(제1조), 애완동물 거리 판매 금지(제2조),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애완동물 판매 금지(제3조), 펫숍 점검(제4조), 위반 및 실력(제5조), 지방 당국 기소 권한(제6조), 조문 해석(제7조), 법 적용 범위 및 시행(제8조)
전시 「공연동물 규제법」 (Performing Animal (Regulation) Act 1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동물 전시와 훈련에 관한 제한(제1조), 공연동물 전시 및 훈련 금지, 제한에 대한 법원의 권한(제2조), 건물 출입 권한(제3조), 위반과 법적 절차(제4조), 조문 해석·규칙·비용(제5조), 스코틀랜드 적용(제6조), 법 적용 예외(제7조), 법 적용 범위 및 시행(제9조)
숙박 「동물 숙박 시설법」 (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숙박시설 면허(제1조), 동물 숙박시설 검사(제2조), 위반 및 자격 박탈(제3조), 지방 당국의 기소 권한(제4조), 조문 해석(제5조), 적용 범위 및 시행(제7조)

자료: 연구진 작성.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총 69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동법 제1~3조는 서론 부분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 동물(척추동물), 보호 대상 범위(야생 제외), 동물에 대한 책임(16세 미만도 포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는 동물의 위해 방지 조항으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 등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9~12조는 동물의 복지 증진 조항이며, 제13조는 면허 및 등록 관련 조항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천강령(제14~17조), 고통 동물 조사 및 진입 권한(제18~21조), 인허가·등록검사 및 영장 집행 권한(제22~29조), 기소(제30~31조), 벌칙조항(제

32~4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6~50조는 스코틀랜드 벌칙조항이며, 제51~69조는 용어 및 조문 해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영국에서 동물보호·복지 분야에 있어서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여러 관련 법과의 관계 설정도 명확히 하고 있다. 「동물복지법」은 동물 위해 방지, 복지 증진,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물 학대와 관련하여 위해 방지 부분에서 5가지 유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 필요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 정부에 따라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잉글랜드 「루시법(Lucy's Law 2020)」⁴⁰⁾과 같이 별도로 규정된 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영국의 「동물복지법」 제13조 (1)과(3)에 따라 동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법 제13조 (7)과(8)에 따라 국가 당국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면허 및 등록 관련 규제를 신설할 수 있으며, 면허 및 등록과 관련된 기존 법률(「공연동물법(1925)」, 「애완동물법(1951)」, 「동물 숙박 시설법(1963)」, 「승마시설법(1964)」, 「개 번식법(1973)」)의 폐지도 가능하다. 제4조에서부터 제8조에 이르기까지 동물 학대와 관련된 5가지 유형(불필요한 고통, 신체의 훼손, 개 꼬리의 제거, 독극물 투여, 동물싸움)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32조에 의거하여 51주 이내 징역 또는 2만 파운드 이하 벌금, 또는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유죄로 판결받은 사람이 해당 동물의 소유자인 경우 소유권 박탈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제9조에 의한 동물의 복지를 위한 5가지 필요사항(적절한 환경, 적절한 식단, 정상적 행동 패턴, 동물의 분리 또는 함께 사육 등 동반자관계, 고통·질병으로부터 보호)에 대하여 반려동물 소유자 또는 사육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 제32조에 의거하여 51주 이내의 징역 또는 5단계(5,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40)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2020년 4월 6일부터 '제3자 강아지 및 새끼 고양이 판매가 금지(일명 루시법)'되었다.

〈표 5-2〉 영국의 동물 학대 규정과 벌칙

관련 법	주요 내용	벌칙조항
「동물 복지법」	· 불필요한 고통, 훼손, 개 꼬리의 제거, 독극물 등 투여, 싸움 등 관련 위해행위를 규정하고(제4~8조), 위반 시 형사제재 · 동물복지 필요사항(제9조)에 대한 법적 의무 위반 시 제재 - 필요사항: 적절한 환경, 식단, 정상적 행동 패턴, 동반자관계, 고통·질병으로부터 보호	· 51주 이내 직영형 또는 2만 파운드 이하 벌금형(제32조) · 동물 학대 판결을 받은 소유주에 대한 해당 동물의 소유권과 처분권 박탈 가능(제33조) · 51주 이내 직영형 또는 5단계 이하의 벌금형(제32조)

자료: 영국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 제4~9조, 제32~33조.

영국에서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 「개 번식 및 판매 복지법(Breeding and Sale of Dogs (welfare) Act 1999)」⁴¹⁾과 「애완동물법(Pet Animal Act 1951)」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는 각 지방의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복지법」 제13조). 다만, 12개월 동안 5마리 미만의 개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필요 없다(「개 번식 및 판매 복지법」 제7조 4A). 개 번식 규정과 관련하여 번식견의 번식 간격과 빈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 「개 번식 및 판매 복지법」 제2조 (2)에 따라 번식견은 1살이 되기 전에 번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일생 동안 6마리 이상의 강아지를 생산할 수 없고, 12개월 동안 1마리의 강아지만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개 판매 규정과 관련하여 「개 번식 및 판매 복지법」 제8조 (1)에 따라 면허보유 번식업자가 면허를 보유한 판매시설에만 개를 판매할 수 있으며, 개체식별 태그나 뱃지가 있는 목걸이를 착용한 개를 펫숍 등에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법 제9조에 의거하여 무면허 영업이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등급(2,5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두 가지 모두 부과될 수 있다.

영국의 반려동물 판매업(pet shop)에 대한 규정은 주로 「애완동물법」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 제1조에 따라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지방 당국으로부터 면허(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 취득 조건으로 ① 적절한 숙소(크기, 온도, 조명, 환기, 청

41) Breeding and Sale of Dogs (Welfare) Act 1999는 「개 번식법(Breeding of Dogs Act 1973, 1991)」의 조항을 개정하고 확장한 법이다.

결도 측면), ② 적절한 음식과 음료, 적절한 간격의 관심(방문), ③ 너무 어린 나이에 판매되지 않을 것(포유류), ④ 전염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강구 ⑤ 화재나 비상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에 따라 애완동물은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판매될 수 없으며, 동법 제3조에 따라 12살 이하⁴²⁾의 어린이에게 판매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단계(500£)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국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⁴³⁾ 제11조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영국에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하여 「애완동물법」이 있지만 주 정부에 따라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별도 법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강아지 및 고양이 판매를 제한하는 법인 잉글랜드 「루시법(Lucy's Law 2020)」이 대표적이다.⁴⁴⁾ 이 법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생후 6개월 미만이고 판매자가 사육하지 않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판매할 수 없다. 만약 영국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을 때는 면허를 가진 번식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면허를 취득한 번식업자는 강아지가 태어난 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면허가 없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경우 무제한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의 경우 환경식품농촌부(DEFRA) 규정에 의하면, 반려견은 태어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야 하며, 2024년 6월부터는 반려묘도 20주가 지나기 전에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며,⁴⁵⁾ 마이크로칩 정보는 정부 승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어야 한다. 반려견을 구입할 때도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 있는지

42) 「영국 동물복지법」 2006에 의해 폐기됨.

43)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검색일: 2024. 5. 2.

44) 영국 웨일스 주에서 루시가 학대를 받았으나 이 규정은 잉글랜드 주에서만 적용된다. 이는 해당 규정이 웨일스 국회에서 잉글랜드로 이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45)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et-your-dog-cat-microchipped>), 검색일: 2024. 4. 19.

증거자료(마이크로칩 인증서, 수의사 기록 등)를 요청해야 하며,⁴⁶⁾ 반려견의 마이크로칩 장착은 반려견의 분실과 도난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동물의 전시 및 훈련과 관련된 복지는 「공연동물(규제)법(The Performing Animal(Regulation) Act 1925)」⁴⁷⁾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연동물의 전시업은 동법 제1조에 따라 지방 당국(지방의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동법 제2조에 따라 공연동물에 대한 동물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공연동물의 전시와 훈련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제3조에 의거하여 지방 당국 공무원과 경찰이 공연동물 건물과 그 동물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전시와 관련된 자격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에 의해 3단계(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숙박과 관련된 복지 규정은 「동물 숙박 시설법(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조에 따라 동물숙박업은 지방의회의 면허(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에는 ① 항상 적합한 숙소(건물, 크기, 수용 동물 수, 온도, 조명, 환기, 청결 측면), ② 적절한 음식과 음료, 침구 재료, 운동,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간격의 방문, ③ 전염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강구(적절한 격리시설 제공 포함), ④ 화재나 비상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 ⑤ 동물 및 소유자 정보가 포함된 등록부 보관 의무 및 검사 협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법 제2조에 따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지방 당국은 동물 숙박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동법 제3조에 따라 동물숙박시설 검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단계(5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의 미용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별도의 미용업 면허(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종사자는 미용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과정에서 「동물복지법

46) 전상곤 외(2017), 동물보호 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47) 영국의 「공연동물법」은 모두 6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웨일스 주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동물전시 및 훈련이 가능하다.

(Animal Welfare Act 2006)에 따른 동물의 필요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웨일스 주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요건과 시설에 관한 자체 규정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애견미용사협회가 협회의 회원에 한해 애견미용사 품질(자격)관리표준을 제공하고 있다.⁴⁸⁾

반려동물 장묘업의 경우 반려동물 매장시설은 동식물보건국에 신고해야 하며, 매장 또는 화장 후 재를 뿌리는 시설에는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 각 소재지에 따라 환경관리에 관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매장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역 정부에서 최소규모와 시설요건을 관리하고 있다.⁴⁹⁾

2. 미국

미국에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연방법은 93개로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 같이 별도의 종합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보호 및 동물 학대 금지 등 주요한 내용은 각 주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⁵⁰⁾ 동물보호 관련 연방법 중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이 있으며,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는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 PACT)」⁵¹⁾ 등 별도의 연방법이 존재한다.

미국 「동물복지법」은 특정 동물의 딜러 및 전시업체의 허가, 연구시설 및 운송업체의 등록, 허가 및 등록업체의 기록 보관, 동물의 식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의 인도적 취급, 돌봄, 치료, 운송 등에 있어 기준과 인증 절차 등도 명시하고 있다.⁵²⁾ 「동물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는 대중 대상 전시, 애완용 판매,

48) 김현희(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49) 김현희(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50) 황선훈(2010), 미국의 연방 동물보호법.

51) 김잔디 외(2022), 동물 학대 행위 등 처벌 관련 비교법적 연구.

52) 미국의 「동물복지법」은 공법(PL) 89-544에 해당하며, 1966년 8월 24일 제정되어 2018년 12월

연구 목적의 사용, 상업적 운송 등의 특정 동물에 대한 인도적 치료를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규제대상 동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위생, 영양, 수질, 수의 치료 등을 제공하고 극한 기온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⁵³⁾

미국 「동물복지법」에 따른 규제대상은 허가대상과 등록대상으로 구분된다. 허가대상에는 애완동물 사육업자, 도매업, 소매업자 등 생산 판매업과 동물의 공연 및 전시 등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등록대상에는 운송업 및 중간 취급업자, 주정부 및 지방정부 연구시설, 민간연구시설,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애완동물 소매판매점(pet shop)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표 5-3〉 미국 「동물복지법」에 따른 사업체의 면허(허가) 및 등록대상

구분	규제대상	면제대상
사업체(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 도매업자·사육업자·소매업자 · 실험동물 딜러·사육업자 · 동물 브로커, 경매 운영자 · 개인대피소 및 구조 · 외국 동물 딜러, 말 계통 딜러 · 야생동물 딜러, 표본공급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 소매상점 · 근로 개 딜러 · 직접판매 · 취미 딜러 · 동물보호소 · 동물숙박업 · 비규제종 딜러
운송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차량 · 중간 취급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규제종 운송업자
전시업체(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원 · 해양 포유류쇼 · 동물공연 · 홍보·전시 · 동물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장품, 취미 출품업체 · 놀이공원, 농장동물 전시 · 예약대행사 · 개 및 고양이 쇼, 말 쇼, 로데오 · 동물보호구역 및 사냥 · 비규제동물의 쇼, 매 훈련

20일 PL 115-334 부분이 개정되었다(미국 동물복지법,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OMPS-10262/pdf/COMPS-10262.pdf>, 검색일: 2024. 5. 3.).

53) 전상곤 외(2017), 동물보호·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계속)

구분	규제대상	면제대상
연구시설(등록)	· 주정부 및 지방정부 시설 · 민간연구시설 · 백신 및 의약품 제조업체 · 교육기관 · 진단 실험실	· 연방시설, 학교 실험실 · 농업 연구기관 · 생체 시료 사용기관 · 현장 연구 수행기관 · 비규제동물 사용기관

자료: Licensing and Registration Under the Animal Welfare Act(<https://www.aphis.usda.gov/sites/default/files/graybook.pdf>), 검색일: 2024. 5. 14.

반려동물의 분양 및 사육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에서는 「동물복지법」에 따라 분양업자(딜러)와 번식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분양면허(Commercial Dog Breeder License)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분양업자(딜러)는 연구 및 수업, 사냥, 경비, 번식 등을 이유로 개를 거래하는 이를 말하며, 일반적인 소매업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⁵⁴⁾ 한편, 소비자가 반려동물을 직접 보고 건강 상태와 인도적인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소매 판매는 동물복지법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⁵⁵⁾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매판매가 당국의 허가 취득에 대한 강제는 없지만 「동물복지법」이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대중에게 전시되는 동물, 생물 의료 목적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동물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 감시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⁵⁶⁾ 일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연구기관 또는 전람회 출품, 타 소매점 납품 시에는 면허가 요구되며, 소매업자가 개와 고양이를 매년 25마리 이상 연구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번식업자가 5마리 이상 번식견 및 번식묘를 사육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의 종류는 Class A, Class B, Class C로 구분된다.⁵⁷⁾

54) 김현중 외(2019),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55) 애완동물 소매점에서 구매자, 판매자, 애완동물이 동시에 모두 함께 있는 경우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판매되는 소매사업은 면제 대상이다(Licensing and Registration Under the Animal Welfare Act, <https://www.aphis.usda.gov/sites/default/files/graybook.pdf>, 검색일: 2024. 5. 14.).

56) 김현희(2017), 반려동물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57) 지인배 외(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표 5-4>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용 면허 종류

구분	주요 내용
Class A	·사육장에서 동물번식과 사육을 위해 필요한 면허로 대부분의 번식업자가 해당
Class B	·동물을 구입 및 재판매하거나, 이를 위해 동물 이송 및 경매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Class C	·서커스 공연, 동물원 전시, 동물극 출연 등에 필요한 면허로 동물을 전시 및 출품하는 경우 해당 ·소매상점, 가족품평회, 로데오 경기, 사냥개 선발대회 등은 제외

자료: 지인배 외(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미국에서는 주 정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또는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⁵⁸⁾ 주별로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3개월령 이상에서 6개월령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월령(나이) 제한이 별도로 없는 주도 많다. 미국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광견병 퇴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을 통해 동물보호소 운영과 시민 대상 반려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대상 반려동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물은 개이며, 일부 주에서는 고양이도 등록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전 광견병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주들이 대부분이며, 중성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비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⁵⁹⁾ 미국 최초로 하와이주에서는 2022년부터 모든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마이크로칩 등록업체에 마이크로칩 번호와 소유자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3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마다 허가가 갱신되어야 한다. 또한 반려견 주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반려견은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⁶⁰⁾

58) 캘리포니아 보건안전규정(California Code, Health and Safety Code-HSC 121690)에 따라 모든 개 소유주는 지방조례에 따라 4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면허(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5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최소한 1년 1회 이상 광견병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미국 판례 및 법령 홈페이지, <https://codes.findlaw.com/ca/health-and-safety-code/hsc-sect-121690/>, 검색일: 2024. 5. 3.).

59) 김현중 외(2019),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60) 하와이주 홈페이지(<https://www.vrl.hawaiicounty.gov/other-services/dog-registration>),

미국의 반려동물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미용업의 경우에는 미용업과 미용사의 자격취득 요건, 등록 의무화 여부 등이 주별로 상이하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으로는 미용 공간, 미용 장비, 동물 털 건조용 케이지, 운동 공간, 시설 내부 장비 등에 관한 요건이 포함되며, 미용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미용사 견습생 과정, 지역 전문학교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2년 반려동물 미용업 등록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고 로드아일랜드주에서도 2017년 미용업 시설의 등록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무허가 운영 시 벌금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도 2017년 반려동물 미용사, 미용업체 등록 등에 관한 법안 발의된 바 있다.⁶¹⁾

미국 반려동물 숙박업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반려동물 숙박시설에 관한 보건안전규정(Health & Safety Code)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와 고양이 등을 4마리 이상 돌보는 업체의 시설과 해당 시설 내 제공되는 미용 서비스, 위생 조건, 동물관리 요건, 운영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 장례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반려동물 화장 시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고형폐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례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반려동물 화장에 관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부 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규정 제6장(반려동물 매장)에는 매장 용지의 사용 요건, 반려동물 소유주와의 계약체결과 해당 기간 만료 후 사체 처리, 운영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뉴욕주는 반려동물 묘지와 화장시설 운영자는 자격취득과 수수료 납부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보존법」과 「고체폐기물관리법」 준수도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⁶²⁾

미국의 반려동물 안락사 규정은 주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주마다 상이하다. 동물에 의해 위험에 처하거나 질병을 일으킬 상황 등에 처할 경

검색일: 2024. 5. 2.

61) 김현희(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62) 김현희(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우 법집행기관, 수의사 등에 의한 안락사가 허용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근육이 완제(펜토바르비탈 나트륨) 주사로 안락사를 시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동물보호소 직원 중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안락사 시행을 허용하고 있다.⁶³⁾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물 학대를 각 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PACT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동물 학대는 연방 당국에 기소할 수 있다. 동물을 의도적으로 짓누르고 물에 빠뜨리고, 질식시키고, 찌르거나 심하게 다치게 하는 행위는 연방 범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가 연방소유지, 주 경계 지역, 외국무역과 관련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PACT법」 적용대상이 된다.⁶⁴⁾ 동물 학대 행위가 주나 국가를 넘나들지 않고 그 관할이 명확한 경우 「PACT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에서 「PACT법」의 규제행위를 위반한 경우 최장 7년 징역 또는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각 주의 동물 학대 처벌 수위는 주별로 차이가 크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6개월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⁶⁵⁾ 주별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이 상습적이고 규모가 클 경우 대부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5〉 미국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PACT)」 대상 행위와 처벌 내용

관련 법	대상 행위 및 주요 요건	벌칙조항
「동물 학대 및 고문 방지법(PACT)」	· 대상행위: 동물을 의도적으로 짓누르고 물에 빠뜨리고, 질식시키고 찌르거나 심하게 다치게 하는 행위 · 추가 요건: 연방소유지, 주 경계 지역, 외국무역과 관련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상	· 최장 7년 징역 또는 상당 벌금

자료: 김잔디 외(2022), 동물 학대 행위 등 처벌 관련 비교법적 연구.

63) 지인배 외(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64) 김잔디 외(2022), 동물 학대 행위 등 처벌 관련 비교법적 연구.

65) 김잔디 외(2022), 동물 학대 행위 등 처벌 관련 비교법적 연구.

3. 일본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은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후 「동물 애호관리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물애호관리법」은 1973년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전체 13조로 구성)⁶⁶⁾되었으며,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9년 12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물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됨과 함께 동물취급업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이후 2005년, 2012년, 2019년에 개정되었다. 「동물애호관리법」은 총 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기본지침과 동물애호관리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동물소유자 및 판매업자의 책무, 제1종 동물취급업자와 제2종 동물취급업자의 등록, 신고, 변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규정 위반 시의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5-6〉 일본 「동물애호관리법」의 구성 체계

관련 법	세부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제1조), 기본원칙(제2조), 보급개발(제3조), 동물애호주간(제4조)
제2장 기본지침 등	· 기본지침(제5조) 및 동물애호관리추진계획(제6조)
제3장 동물의 적절한 취급	· 총칙(제1절: 제7~9조): 동물소유자 및 동물판매업자의 책무 등 · 제1종 동물취급업자의 등록 등(제2절: 제10~24조) · 제2종 동물취급업자의 신고 등(제3절: 제24조의2~4) ·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치(제4절: 제25조) ·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 침해 방지 조치(제5절: 제26~33조) · 동물애호 담당직원(제6절: 제34조)
제4장 광역자치단체 등의 조치	· 개·고양이 입양(제35조), 부상 동물 발견자의 통보조치(제36조), 개, 고양이 번식 제한(제37조), 동물애호 추진원(제38조), 협의회(제39조)
제5장 잡칙	· 동물을 죽이는 경우의 방법(제40조), 동물의 과학적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의 방법, 사후 조치 등(제41조), 수의사에 의한 통보 등(제41조의2~43조)
제6장 벌칙	· 벌칙(제44~50조)

자료: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8AC1000000105>), 검색일: 2024. 5. 13.

66) 人と動物の共生する社会の実現を目指して(https://www.env.go.jp/nature/dobutsu/aigo2_data/pamph/h3008a/pdf/02.pdf), 검색일: 2024. 5. 13.

2005년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애호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지침 마련이 법제화되었으며, 기본지침에 따라 지자체(도도부현)의 동물애호관리 추진계획이 책정되었다. 둘째, 동물취급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고 부적합한 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및 갱신 거부,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조치 등이 마련되었다. 셋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정 동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조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위해 방지를 위해 사육 및 보관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된 「동물애호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시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등 영리성이 없는 동물의 취급도 규모에 따라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시설(펫숍 등)은 제1종 동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 등록제⁶⁷⁾로 관리되며, 영리성이 없는 제2종 동물취급업(동물보호센터 등)은 신고제로 분류되어 관리된다.⁶⁸⁾ 둘째, 동물 살상·학대, 무등록 동물 취급, 무허가 동물사육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동물애호관리법」 제44~49조). 애호동물 살상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학대의 경우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강화되었다. 셋째, 제1종 동물취급업의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사유에 광견병 예방법 등 위반사항이 추가되었다. 넷째, 다두사육에 기인하는 학대 우려 사항이 권고나 명령의 대상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부칙 제14조에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목표에 대한 검토 규정이 마련되었다.⁶⁹⁾

67) 등록제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있지만, 신고제는 필요한 서류만 구비하면 되며, 정부의 규제가 없다. 또한 강제적인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68) 김현희(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69) 김잔디 외(2022), 동물 학대 행위 등 처벌 관련 비교법적 연구.

〈표 5-7〉 일본 「동물애호관리법」 내 제1종 동물취급업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업종	사업 내용	해당 업자
판매업	동물의 도·소매 또는 판매 목적의 번식·수출입 행위	·도·소매업자 ·판매 목적의 번식 또는 수입업자, 사육업자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자
보관업	보관을 목적으로 고객의 동물을 맡는 업무	·애완동물 호텔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애완동물 도우미
대여업	애완, 촬영, 번식 등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업무	·애완동물 대여업자 ·영화 등 촬영모델 및 번식용 등 동물파견업자
훈련업	고객의 동물을 맡아 훈련을 담당하는 업무	·동물 훈련 및 조교 업자 ·출장 훈련업자
전시업	동물을 보여주는 업무(동물과의 만남 포함)	·동물원, 수족관, 이동 동물원, 동물서커스 등 ·승마시설 및 동물 매개 치료업자
경매 알선업	동물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알선, 장소를 마련해 경매하는 업무	·동물경매시장 운영업자
양수 사양업	유상으로 동물을 양도받아 사육하는 업무	·'노견·노묘 Home' 사업자

자료: 지인배 외(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9년 「동물애호관리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동물 학대와 관련하여 벌칙이 강화되었으며,⁷⁰⁾ 동물 소유자의 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⁷¹⁾ 한편, 동물 취급 및 사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먼저,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애호동물 살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 학대·유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동물 소유자의 책무(제7조)와 관련하여 동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물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개 및 고양이의 번식 제한 의무화⁷²⁾ 등 동물의 적정 사육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개 또는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의 번식으로 적정 사육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0) 일본 법에 있어 동물 학대 개념에는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적극적(의도적) 학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돌봄을 게을리하거나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는 소극적 학대(방치)도 포함된다(김잔디 외, 2022).

71) 김잔디 외(2022), 동물 학대 행위 등 처벌 관련 비교법적 연구.

72) 1인당 번식견 15마리까지 사육 가능하며, 번식견의 평생 출산 횟수는 6회까지, 암컷의 교배는 6세(만 7세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2019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이다.⁷³⁾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마이크로칩 장착에 관련된 개·고양이 판매업자의 의무와 소유자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 또는 고양이의 등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개·고양이 판매업자는 개 또는 고양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 또는 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하며, 소유자는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 고양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일본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견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정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반려견은 태어난 후 120일 이내에 등록되어야 한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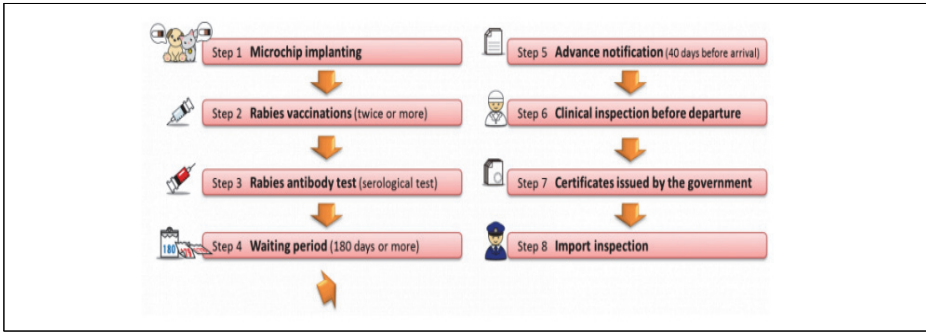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개, 고양이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일본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입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광견병 청정국⁷⁵⁾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개의 검역 절차는 비청정국보다 훨씬 단순화되어 있다. 광견병 청정국 또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개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과 항체 검사 과정이 없으며, 항체 검사(혈청검사)를 위한 채혈일로부터 180일간의 대기기간도 없다. 다만, 수입(입국) 전 지정된 청정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지정 지역에서 태어난 후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최소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73) 動物愛護管理法の改正点は？改正内容や飼い主が知るべきことを解説(<https://wanko.peace-winds.org/journal/10593>), 검색일: 2024. 5. 13.

74) 김현중 외(2019),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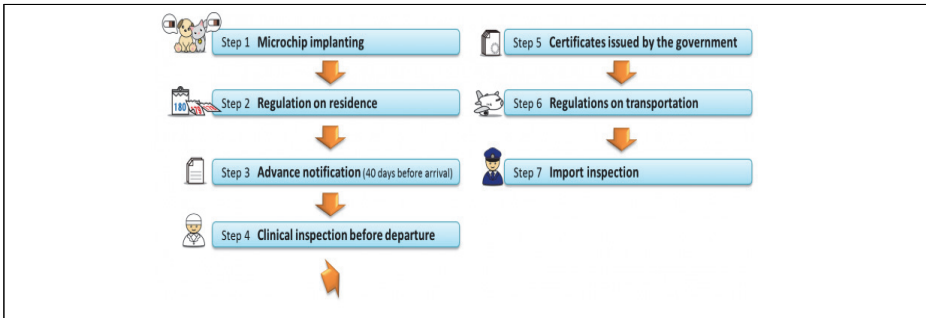
75) 광견병 청정국 및 지역은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피지 제도, 하와이, 괌 등이다.

〈그림 5-1〉 일본의 개, 고양이 수입검역 수속 절차(광견병 비청정국)



자료: 일본 동물검역소(<https://www.maff.go.jp/aqs/english/animal/dog/import-other.html>), 검색일: 2024. 7. 1.

〈그림 5-2〉 일본의 개, 고양이 수입검역 수속 절차(광견병 청정국)



자료: 일본 동물검역소(<https://www.maff.go.jp/aqs/english/animal/dog/import-other.html>), 검색일: 2024. 7. 1.

일본의 「동물애호관리법」에는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 동물 취급 가이드라인, 대량 사육에 의한 동물 학대 방지, 동물취급업의 규제, 위험동물의 사육규제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동물애호관리법」에서는 제1종 동물취급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사육시설 구조 및 규모, 사육시설 유지관리, 동물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육시설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동물의 적절한 공간 확보, 급수 및 급이 시설 등 필요한 설비의 배치, 청소 및 동물 도주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물관리 방법으로 어린 동물의 판매 제한, 광고의 표시 규제, 적절한 사육 및 보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의 판매 및 전시와 관련하여 충분히 사회화되지 못한 반려동물은 성장 후

짓거나 깨무는 버릇 등으로 소유자의 유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목적으로 생후 56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 반려견과 반려묘의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전시는 금지되어 있다.⁷⁶⁾ 그리고 판매업자, 대여업자, 전시업자에 의한 반려견 및 반려묘 전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금지되어 있다.

〈표 5-8〉 제1종 동물취급업자의 준수사항

구분	주요 내용
1. 사육시설 등 구조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각각의 동물의 적절한 크기와 공간의 확보 · 급수, 급이 시설과 기구 등 필요한 설비의 배치
2. 사육시설 등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일 1회 이상의 청소 시행 · 동물 도주 방지
3. 동물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유령(어린 나이)동물의 판매 제한 · 동물 상태 사전 확인 · 구매자에 대한 사전 설명 · 적절한 사육 및 보관 · 광고의 표시 규제 · 관계 법령 위반 거래 제한
4. 전반적인 사항	· 표시나 명찰(식별표)의 개시 · 동물 취급 책임자의 배치

자료: 지인배 외(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일본의 「동물애호관리법」은 동물의 학대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살상하거나 학대, 유기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부적절한 다두사육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살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부적절한 다두사육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표 5-9〉 일본의 동물 학대 규정과 벌칙

관련 법	규제 내용	벌칙조항
「동물애호관리법」	· 함부로 살상, 학대, 유기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상당한 형벌을 부과	· 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
		· 학대·유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
		· 부적절한 다두 사육자의 조치 명령 위반: 50만 엔 이하 벌금

자료: 김잔디 외(2022), 동물 학대 행위 등 처벌 관련 비교법적 연구.

76) 지인배 외(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일본의 반려동물 장례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이나 묘지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본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동물장묘시설과 주택가와의 거리 제한을 두는 조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⁷⁷⁾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통해 이동식 장묘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생활환경보전 조례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소각로 기준 적합 여부 등의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⁷⁸⁾ 또한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장묘업의 90%가량이 이동식인 것으로 파악된다.⁷⁹⁾

4. 시사점

영국, 미국, 일본 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주요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호보법」에 의하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판매할 수 있지만 최근 영국 잉글랜드 주에서는 「루시법」에 따라 생후 6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판매대상 동물은 부모와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펫숍에서의 반려동물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McMillan(2018)에 의하면 강아지들이 부모견 및 동배 강아지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만 어릴 때 모견과 떨어진 강아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행동학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⁸⁰⁾

둘째, 반려동물 등록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체식별의 중요성이 강조

77) 노트팻(2017. 8. 16.), “일본, 펫 장묘업 둘러싼 마찰.. 법 정비 촉구”.

78) 장은혜(2015),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79) 매일경제(2021. 8. 2.), “뉴비즈니스 ‘반려동물 장례’ 일본처럼 이동식 화장 뜰까”.

80) McMillan(2018); 김현중 외(재인용)(2019).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서만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미국, 일본 모두 개와 고양이를 의무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최근 영국 잉글랜드 주에서도 2024년 6월부터 고양이를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개체식별 방법으로 반려동물의 신체 내부에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하와이주에서 최초로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입양(구입)한 후 양육자(소유자)가 내·외장용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마이크로칩을 장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양육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단계에서 동물 판매 전에 마이크로칩 내부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최근 휴대전화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지고 비문 사진 촬영에도 AI 기술이 도입⁸¹⁾됨에 따라 반려견의 경우 비문을 통한 개체식별 방법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돌봄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소음 문제, 개 물림 사고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갈등을 줄이고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사육환경, 건강관리, 위생관리, 외출 시 지켜야 할 사항 등 양육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반려견 소유자는 보건 안전 규정에 따라 4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면허(pet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광견병 예방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 등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5가지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돌봄

81) 동아일보(2022. 2. 17.), “유기동물 年 13만 마리... 코무늬가 해결책 될까”.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넷째, 반려동물의 학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책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동물애호관리법」의 개정으로 동물 학대의 개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의도적 학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돌봄을 게을리하거나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는 방치도 포함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본적으로 동물 학대를 각주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주별로 관할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연방법인 「PACT 법」이 도입되었다.

다섯째, 노령 반려동물 관리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반려견 275만 마리중 9세 이상이 114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릿수 기준으로 노령견 양육 가구는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⁸²⁾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 마릿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노령화된 반려동물의 관리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유실·유기동물의 대부분이 고령 동물인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노령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본과 같이 고령의 반려견 및 반려묘를 유상으로 양도받아 돌보는 ‘양수 사양업’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갈등 해소와 장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식 장묘시설이 부각되고 있다. 동물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님비현상이 강한 측면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상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장묘시설과 주택가와의 거리 제한을 두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거리 제한 규정과 지역 민원을 이동식 화장시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동식 동물 화장시설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법상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안산시에서 2022년 8월부터 2년간 이동

82) 스카이데일리(2024. 5. 16.), “노령견 114만... 펫 ‘건강관리 시장’ 뜨다”.

식 동물장묘시설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⁸³⁾

〈표 5-10〉 국내외 반려동물 복지 제도 및 정책 비교

구분		한국	영국	미국	일본
근거법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동물복지법」 및 「개별법」	「동물애호관리법」
생산 및 판매 단계	동물 판매 연령 제한	생후 2개월 미만	생후 6개월 미만 (「루시법」)	-	생후 56일 미만
	판매업 제한	판매업 허가제	펫숍 판매 금지 (「루시법」)	상업용 분양면허 필요 소매 판매 제한 규정 없음	판매업 등록제
	개체식별 장치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	생후 8주 이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마이크로칩 의무화 (하와이)	판매업자 취득일 30일 이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입양 및 양육 단계	입양자 연령 제한	미성년자 판매금지	16세 이상	18세 이상 (캘리포니아, 하와이)	-
	돌봄 의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시범사업	-	반려동물 면허제 시행 (캘리포니아)	-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는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반려견 취득일 30일 이내 등록	등록제 시행	등록제 시행	소유자는 반려동물 취득일 30일 이내 등록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 개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 고양이	주별로 차이 존재, 대부분 3개월령 이상~6개월령 이하 개와 고양이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와 고양이
	동물 학대 처벌(징역)	3년	51주	7년	5년
	서비스업 규제	등록제 (미용, 숙박, 전시)	허가제(숙박) 등록제(전시)	등록제 (미용)	등록제 (미용, 전시)
	사후 단계	장묘업 규제	허가제	허가제	주별 규정으로 관리
장례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매장, 화장	매장, 화장	매장, 화장 (이동식 장묘시설 포함)

자료: 연구진 작성.

83) 2022년 제2차 산업융합규제 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제6장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과제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개선과제

1.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분석 및 개선 방향

1.1.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분석

1.1.1. 분석 방법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영업업체 (300개소), 반려동물 소유자(1,000명), 반려동물 복지 분야 전문가(26명)⁸⁴를 대상으로 주요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재 수준(만족도)과 향후 필요 수준(중요도)에 대한 견해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orich의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각 주체별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Borich 요구도 분석은 Borich(1980)가 제안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으로 현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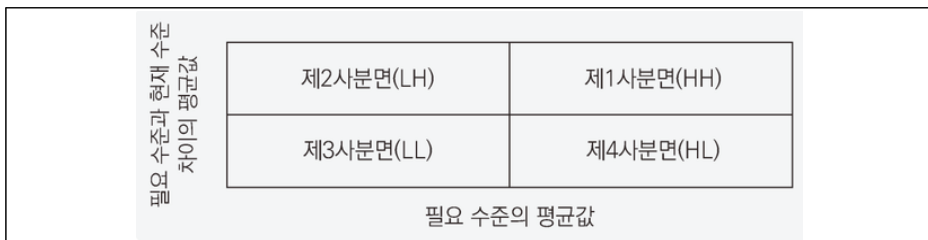
84) 반려동물 복지 분야 전문가는 학계 3명, 연구기관 5명, 동물보호단체 4명, 지자체 담당자 14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하였다.

준과 필요 수준을 도출한 후 필요 수준에 가중치를 주어 도출된 값에 따라 대상 항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하기 전 항목별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며, Borich 요구도 값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text{Borich 요구도 값} = \frac{\sum(\text{필요 수준} - \text{현재 수준}) \times \text{필요 수준 평균}}{\text{전체 표본수}}$$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Borich 요구도 분석을 한 단계 더 확장한 방법으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중요도(향후 필요 수준)와 불일치 수준(향후 필요 수준과 현재 만족도의 차이)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사분면으로 나누어 나타내며, 각 사분면에 해당하는 특성을 통해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이 의미하는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제1사분면(HH)은 중요도와 불일치 수준이 모두 높은 영역으로 가장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2사분면(LH)은 중요도는 낮지만, 불일치 수준이 높은 영역이며, 제3사분면(LL)은 중요도와 불일치 수준이 모두 낮은 영역으로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4사분면(HL)은 불일치 수준은 낮지만, 중요도가 높은 영역을 의미한다.⁸⁵⁾

〈그림 6-1〉 The Locus for Focus 모델



자료: 전경미·김석선(2019).

85)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제1사분면(HH)에 이어 제2사분면(LH)과 제4사분면(HL) 중 어느 영역에 속한 항목들이 차순위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및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자료 검토와 함께 현장 조사 및 연구진 협의 등을 거친 후 총 20개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1〉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

구분	정책	구분	정책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6)	동물등록제 의무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10)	펫보험 활성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주: ‘(6) 동물등록제 의무화’의 경우 현재 만족도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한 것이며, 향후 필요 수준은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등록 의무화를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1.1.2. 분석 결과

가. 영업업체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반려동물 영업업체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t-검정을 통해 각 정책에 대한 현재 수준(만족도)과 필요 수준(중요도)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정책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orich 요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구도 기준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5개 정책은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구도 기준 우선순위가 낮은 하위 5개 정책은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화’,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영업업체)

구분	현재 수준 (만족도, A)	필요 수준 (중요도, B)	차이 (B-A)	t	요구도	우선 순위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697	3.980	1.283	14.95***	5.108	16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2.573	4.230	1.657	18.79***	7.008	9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2.647	4.223	1.577	19.42***	6.659	10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2.330	4.350	2.020	21.66***	8.787	3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2.383	4.257	1.873	20.64***	7.974	5
(6) 동물등록제 의무화	3.013	4.373	1.360	15.82***	5.948	14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2.877	3.987	1.110	13.91***	4.425	18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2.553	4.287	1.733	19.26***	7.430	8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2.863	3.917	1.053	11.97***	4.126	20
(10) 펫보험 활성화	2.623	3.777	1.153	13.38***	4.356	19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2.357	4.360	2.003	20.64***	8.735	4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2.243	4.430	2.187	22.34***	9.687	1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2.460	4.223	1.763	18.03***	7.447	7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	2.577	4.357	1.780	20.01***	7.755	6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2.330	4.470	2.140	22.38***	9.566	2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2.887	4.050	1.163	14.71***	4.712	17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2.563	4.157	1.593	17.85***	6.623	11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540	4.057	1.517	15.91***	6.153	13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517	4.040	1.523	16.14***	6.154	12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2.550	4.013	1.463	15.67***	5.873	15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Borich 요구도 = $\Sigma(\text{필요 수준} - \text{현재 수준}) \times \text{필요 수준}$ 평균/표본 수
자료: 연구진 작성.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도식화한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제1사분면 영역에 포함된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4)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등 9개 정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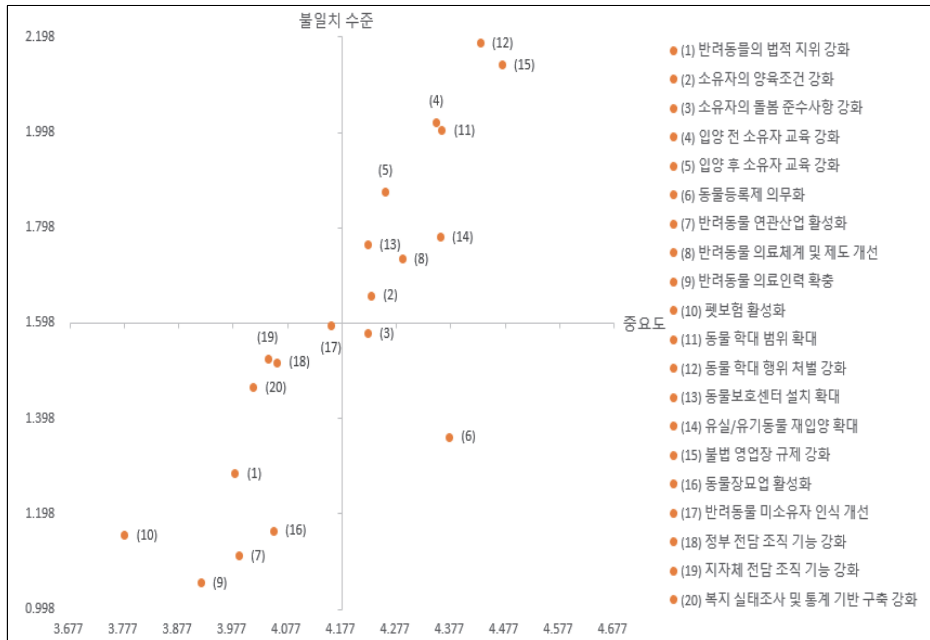
반면, 중요도와 불일치 수준이 모두 낮아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정책은 제3사분면 영역에 포함된 ‘(1)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강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등 9개 정책으로 나타났다.

〈표 6-3〉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영업업체)

제2사분면(L-H)	제1사분면(H-H) - 9개 정책
-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4)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제3사분면(L-L) - 9개 정책	제4사분면(H-L) - 2개 정책
(1)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강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6) 동물등록제 의무화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6-2〉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영업업체)



자료: 연구진 작성.

나. 반려동물 소유자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t-검정을 통해 각 정책에 대한 현재 수준(만족도)과 필요 수준(중요도)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정책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orich 요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구도 기준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5개 정책은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구도 기준 우선순위가 낮은 하위 5개 정책은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10) 펫보험 활성화’,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6) 동물등록제 의무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소유자)

구분	현재 수준 (만족도, A)	필요 수준 (중요도, B)	차이 (B-A)	t	요구도	우선 순위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827	3.855	1.028	20.56***	3.963	9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3.015	3.962	0.947	19.74***	3.752	10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3.093	3.964	0.871	18.78***	3.453	16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2.850	4.037	1.187	23.70***	4.792	7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2.923	4.022	1.099	22.72***	4.420	8
(6) 동물등록제 의무화	3.257	4.002	0.745	17.34***	2.981	17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3.264	3.751	0.487	12.63***	1.827	20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2.940	4.111	1.171	23.81***	4.814	6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3.131	3.890	0.759	17.73***	2.953	18
(10) 펫보험 활성화	2.956	3.695	0.739	17.05***	2.731	19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2.740	4.264	1.524	27.73***	6.498	3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2.673	4.325	1.652	28.64***	7.145	1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2.901	4.109	1.208	23.81***	4.964	5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	2.899	4.144	1.245	24.57***	5.159	4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2.680	4.307	1.627	28.36***	7.007	2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3.012	3.906	0.894	19.80***	3.492	15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2.945	3.883	0.938	19.69***	3.642	12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856	3.782	0.926	19.17***	3.502	14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868	3.810	0.942	19.76***	3.589	13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2.882	3.840	0.958	19.50***	3.679	11

주 1)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Borich 요구도 = $\sum(\text{필요 수준} - \text{현재 수준}) \times \text{필요 수준 평균} / \text{표본 수}$

자료: 연구진 작성.

반려동물 소유자의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도식화한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제1사분면 영역에 포함된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

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4)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등 8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와 불일치 수준이 모두 낮아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정책은 제3사분면 영역에 포함된 ‘(1)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강화’,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등 11개 정책으로 나타났다.

〈표 6-5〉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소유자)

제2사분면(L-H)	제1사분면(H-H) - 8개 정책
-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4)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제3사분면(L-L) - 11개 정책	제4사분면(H-L) - 1개 정책
(1)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강화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6) 동물등록제 의무화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6-3〉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소유자)



자료: 연구진 작성.

다. 전문가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반려동물 전문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t-검정을 통해 각 정책에 대한 현재 수준(만족도)과 필요 수준(중요도)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orich 요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구도 기준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5개 정책은 ‘(19) 지자체 전달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구도 기준 우선순위가 낮은 하위 5개 정책은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6〉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전문가)

구분	현재 수준 (만족도, A)	필요 수준 (중요도, B)	차이 (B-A)	t	요구도	우선 순위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692	3.846	1.154	3.48***	4.438	16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2.423	4.385	1.962	10.01***	8.601	6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2.654	4.231	1.577	7.30***	6.672	9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2.154	4.462	2.308	9.87***	10.296	4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1.923	4.308	2.385	10.72***	10.272	5
(6) 동물등록제 의무화	2.846	4.538	1.692	6.54***	7.680	8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2.846	3.423	0.577	1.75*	1.975	19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2.538	3.923	1.385	4.89***	5.432	14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3.077	3.231	0.154	0.58	0.497	20
(10) 펫보험 활성화	2.308	3.846	1.538	6.68***	5.917	11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3.038	3.846	0.808	2.25**	3.107	17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2.423	4.269	1.846	6.21***	7.882	7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2.462	4.077	1.615	4.49***	6.586	10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	2.615	4.038	1.423	4.59***	5.747	13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2.269	4.577	2.308	8.20***	10.562	3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2.769	3.385	0.615	2.31**	2.083	18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2.500	3.962	1.462	5.25***	5.790	12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654	3.846	1.192	3.07***	4.586	15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38	4.538	2.500	8.19***	11.346	1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2.154	4.538	2.385	10.40***	10.822	2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Borich 요구도 = $\Sigma(\text{필요 수준} - \text{현재 수준}) \times \text{필요 수준 평균/표본 수}$

자료: 연구진 작성.

전문가의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도식화한 결과, 우선순위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제1사분면 영역에 포함된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4) 입양 전 소유자 교

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6) 동물등록제 의무화’,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등 10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와 불일치 수준이 모두 낮아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정책은 제3사분면 영역에 포함된 ‘(1)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강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4)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확대’,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등 10개 정책으로 나타났다.

〈표 6-7〉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전문가)

제2사분면(L-H)	제1사분면(H-H) - 10개 정책
-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6) 동물등록제 의무화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제3사분면(L-L) - 10개 정책	제4사분면(H-L)
(1)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강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4)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확대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6-4〉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전문가)



자료: 연구진 작성.

1.2. 분석 결과의 종합 및 개선 방향

반려동물 관련 영영업체, 소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공통된 우선 정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영업체와 소유자가 요구하는 복지 정책 수요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전문가가 요구하는 복지 정책 수요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영업 및 양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정책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세 집단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우선 정책은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 집단 모두 입양 전 소유자 대상 교육을 통한 충동적인 입양 방지와 입양 후 체계적인 교

육을 통한 소유자의 양육 의무 강화 및 양육 가구 내 반려동물 복지 개선 노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 측면을 우선시함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동물 학대를 근절하고 유실·유기동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요소를 파악하고 불법 영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 영업업체도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를 우선 정책으로 꼽았다는 점은 반려동물 복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통으로 요구하는 우선 정책 외에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경우에는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를 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소유자는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를 제외하고 영업업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업체는 소유자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양육 방지를 위한 양육조건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업업체와 소유자 모두 반려동물의 건강, 안전, 재입양 측면에 대한 복지 수준 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 복지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실제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공통으로 요구하는 우선 정책 외에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6) 동물등록제 의무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등을 우선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양육 관련 기준과 함께 복지 정책 대상인 반려동물의 등록제 활성화와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지자체 전담 조직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⁶⁾ 또한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복지실태 파악과 관련 분야 연구의 기반이라 할 수

86) 다만,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의 경우 조사 대상 전문가 중 지자체 정책 담당자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우선 정책으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있는 통계 기반 구축 강화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8〉 반려동물 복지 관련 우선순위 정책 비교

구분	공통	영업업체	소유자	전문가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		○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			
(6) 동물등록제 의무화				○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	○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	○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		○	○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

자료: 연구진 작성.

이와 같이 반려동물 관련 주체들은 ‘반려동물 복지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적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반려동물을 접하는 형태와 개인의 소속 영역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우선 정책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주체별로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차순위 추진 정책으로써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선 정책으로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정책들도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므로 증장기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 외에도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복지실태 조사 결과와 현재 시점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 및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 수요 조사를 위해 제시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보다 세부적인 접근을 통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반려동물 복지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과 반려동물의 생애단계를 고려한 복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중 반려동물 복지 정책 개선 방향과 관련된 주요 추진과제로써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 내용에 대한 검토에서 논의되었던 반려동물 법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 평가 지표 개발, 데이터 기반 반려동물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통계체계 구축,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 동물보호시설 설치 확대 및 입지 여건 개선, 반려동물 복지 예산 확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연관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담 조직의 기능 및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복지 개선과 관련된 주요 추진과제로써 번식견, 번식묘의 출산연령 상한 제한 검토, 반려동물 입양 전후 소유자 교육 강화 및 등록대상 확대,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노령화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말소 규정 완화 및 동물장례 서비스 확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1. 반려동물 복지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2.1.1. 반려동물 법적 지위 향상 등 관계 법령 개선

현재 「민법」 제98조에 의하면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 범위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손실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생명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며,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되는 것이 가능⁸⁷⁾하지만 양육자의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체 처리 방법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반려동물의 지위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 범위 확대 및 동물권을 고려한 장례 절차 추진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1.2. 반려동물 복지 평가 지표 개발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재 동물등록률 및 유기동물 재입양

87)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지자체장 등이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에 폐기물을 버려야 하며,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를 등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가 일부 존재하지만, 생애단계별 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영국의 동물복지 관련 5가지 자유는 동물복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동물복지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평가될 수 있지만 크게 동물기반지표와 자원기반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 두 범주의 지표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동물기반 지표가 동물의 상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다. 동물 기반 지표에는 동물의 신체 상태, 건강기록, 행동 측정이 포함된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만은 나쁜 복지의 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고통은 주요 동물복지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동물의 공격적인 행동도 동물복지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행동 제약 등으로 인한 동물의 반복적인 행동 등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복지지표로서 긍정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행동 지표도 있을 수 있으며, 놀이와 친근한 행동 등도 긍정적인 복지의 지표가 될 수 있다.⁸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개에 대한 개체 수 관리를 개의 복지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⁸⁹⁾ WOAH는 2014년 이후 광견병 청정을 위한 유기견 개체 수 조절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회원국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⁹⁰⁾ 여기에는 개의 개체 수 조절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주요 지표로는 회원국의 소유견 및 유기견 수 추정 여부, 개의 개체 수 조절 프로그램 운영 여부, 개의 개체 수 조절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여부, 개의 개체 수 관련 법안 제정 여부, 개의 개체 수 관련 통제조치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본 연구의 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영양, 생활환경, 건강 및 의료, 행동, 정신 상태 및 경험 등 주요 영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복지 영

88) Manteca X(2016), Animal Welfare Indicators for Dogs and Cats.

89) OIE(2022), Dog population management.

90) WOAH(2023), Monitoring animal welfare standards.

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 수준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번식, 판매, 입양, 양육, 사후 단계 등 생애단계에 따른 복지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3. 반려동물 복지 관련 통계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는 총가구 수에 양육 비율과 평균 양육 마릿수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가구 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자료이며, 양육 비율과 평균 양육 마릿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발표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총가구 수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반려동물 등록률은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에서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30일 이내에 사망(말소)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망신고 의무⁹¹⁾를 잘 모르고 있는 소유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누적 반려동물 마릿수가 과다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사망 시까지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생애단계 및 연령에 따른 일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복지 관련 통계체계가 구축될 경우 데이터 기반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1)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은 거주지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4.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⁹²⁾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이하 반려가구)는 552만 호(2020년 대비 2.8% 증가)로 전체 가구의 25.7% 수준이며, 반려가구의 약 55%는 반려동물 관련 최대 관심사로 ‘건강관리’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방법’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아파 보일 때 원인 진단이 쉽지 않고 병원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보험료는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고 보상한도는 낮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 치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기검진 비용을 비롯하여 중성화수술 비용, 치과 치료 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병원비 부담이 증가하는 10세 이후의 가입도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통해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 보험을 통해 반려가구의 의료비를 낮추고 반려동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공시제가 활성화되어 반려가구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증진되어야 하며, 진료체계의 표준화도 촉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진료체계의 표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이를 토대로 표준수가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2) 김수린·박혜진(2024)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2.1.5. 동물보호시설 설치 확대 및 입지 여건 개선

2023년 기준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한 동물보호센터는 총 228개소가 운영 중이며, 민간 위탁(66.7%)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력은 총 984명이며, 운영비용은 373.9억 원, 평균 보호기간은 28일 정도이다. 한편, 최근 들어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실·유기동물 수가 현 수준보다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유실·유기동물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동물보호센터는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는 2024년 1월 9일 의결되어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7년 2월 이후 개 식용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식용견 중 대량의 잔여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위해서는 입지 여건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합법화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2개소 중 80곳이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입지해 있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³⁾ 또한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하여 동물보호센터 부지선정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식용견 농가의 부지를 동물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식용견 농가의 부지를 대상으로 동물보호센터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

93) 오마이뉴스(2024. 5. 21.), “‘유기견 596마리 보호’ 대전 시온쉼터 또 철거 위기”.

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7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개 식용이 종식됨에 따라 식용견 중 일부는 잔여견으로 남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동물보호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가구 수 및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6. 반려동물 복지 예산 확충

2024년 기준 반려동물 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약 317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3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반려동물 양육 규모와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복지 관련 사업 확대와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신규 재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 복지 예산 확충의 일환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조사 결과⁹⁴⁾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하여 매년 일정한 등록비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7.2%p 증가한 71.1%로 높게 나타났다.⁹⁵⁾ 또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도 일부 존재(영업업체 51.4%, 소유자 및 미소유자 36.8%)하는 만큼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 OECD 가입 38개국 중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등록세를 시행하는 국가는 유럽을 중심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총 17개 국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

94)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2024),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95) 적정 평균 금액은 연간 22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되며,⁹⁶⁾ 이를 반려동물 복지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 비율 또한 소유자(46.4%)와 미소유자(17.4%) 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반려동물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7.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연관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로써 성장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산업 여건 변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신기술을 통한 산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연관산업 인프라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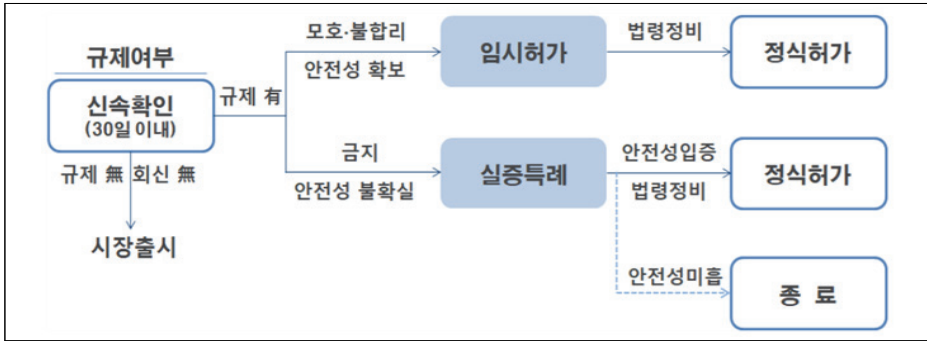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 ‘실증 특례’를 중심으로 ‘신속 확인’과 ‘임시 허가’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⁹⁷⁾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실증 특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반려동물 등록 및 장묘업을 중심으로 총 29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가 없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저해하는 반려동물 복지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함으로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6) 세계비즈(2024. 10. 9.),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반려동물 세금 논쟁 확산... 세계 각국 반려동물 관리 정책은”.

97) 최익창 외(2024),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그림 6-5〉 규제샌드박스 운영 절차



자료: 최익창 외(2024),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표 6-9〉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증 특례 현황

구분	사업 개요
반려동물 등록(7)	·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비문(Nose Print) 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반려동물 복정맥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동물장모업(18)	·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반려동물 운송(2)	· 렌터카 기반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반려동물 헬스케어(2)	· AI를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 반려동물 맞춤형 영양제 구독 서비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1.8.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담 조직의 기능 및 연계 강화

현재 중앙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부처 내 전담 조직은 2020년 2월 신설된 ‘동물복지정책과’이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내에 ‘동물복지연구팀’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기초영양생리, 질병 및 영양관리 부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경우에는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전담 조직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반려동물 복지 정책 부문도 예외

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반려동물 복지 분야의 직접적인 정책 수혜 대상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반려동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양육 중인 반려동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관련 소통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내 반려동물 복지 관련 조직 및 정책 추진 단계는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초기 수준이며, 작은 규모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중요성 및 연관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전담 조직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지자체 전담 조직에 대한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2.2.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복지 개선

2.2.1. 번식견, 번식묘의 출산연령 상한 제한 검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인 개, 고양이가 교배하여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번식견, 번식묘의 출산연령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번식견 및 번식묘의 동물보호·복지 차원에서 출산연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19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성령으로 번식견의 교배 연령 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일본 환경성령 제7호에 의하면 번식견의 평생 출생 횟수는 6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암컷의 교배 연령도 6세(만 7세 미만)까지로 제한하고 있다.⁹⁸⁾ 따라서 국내에서도 번식장의 개, 고양이의

98) 일본의 번식견 교배 연령 상한 제한은 第一種動物取扱業者及び第二種動物取扱業者が取り扱う動

교배 및 출산 월령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진행⁹⁹⁾ 된 바 있는 만큼 번식권 및 번식묘의 보호·복지 차원에서 출산연령의 상한 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2. 반려동물 입양 전후 소유자 교육 강화 및 등록대상 확대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입양 전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23.7%에 불과하였으나 정책 수요 분석 결과, 입양 전후 소유자 교육 강화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려동물 입양 희망자는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입양 후에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의 사회화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 후 교육 서비스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의무등록대상은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지만 2022년 기준 등록률은 55.5% 수준이며, 선택 등록대상인 고양이 등록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려견 소유자의 84.6%와 반려묘 소유자의 62.8%가 등록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반려묘를 등록한 가구의 만족도 또한 69.7%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의무대상 범위에 고양이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및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무등록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와 함

物の管理の方法等の基準を定める省令(令和三年環境省令第七号) 제2조 제6항에 동물을 번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횟수, 번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동물의 선정 등 동물의 번식 방법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다(<https://laws.e-gov.go.jp/law/503M60001000007>), 검색일: 2024. 9. 2. 99) 한국애견신문(2023. 12. 15.)에 따르면 서정숙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번식장내 월령 60개월 이상인 개, 고양이에 대하여 교배 및 출산 방지를 제한한 바 있다.

깨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등록대상 확대 및 등록률 제고는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반려동물의 효율적인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2.3. 유실·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동물보호시설의 유실·유기동물을 가정에서 재입양하는 비율은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실·유기동물의 재입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유실·유기동물 재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알선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2.4. 노령화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강화

본 연구의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양육 중인 전체 반려동물 중 노령기에 해당하는 비율은 19.6%이며, 종류별로는 반려견 21.0%, 반려묘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가구의 64.1%는 반려동물의 품종 및 생애단계를 고려하여 먹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육 가구의 72.2%는 먹이 제공 시 건강요인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려동물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의 질환 치료제와 영양제 등 관련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노령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물애호관리법」 내 ‘제1종 동물취급업’의 유형 중 하나로 양수사양업을 분류하여 고령화된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사육·관리하는 등 노견 및 노묘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견 홈’이라는 일종의 반려견 요양원 서비스가 일본 전국에 200여 곳 정도 운영되는 등 노

후화된 반려동물을 돌보는 반려동물 고령화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¹⁰⁰⁾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고령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반려동물 요양원 등 고령화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 요양시설 등 노견·노묘 시설 관련 규정은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기준에서도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에 애견 훈련소·애견 미용 서비스, 애견 호텔·유기견 보호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반려동물 요양시설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령화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노견 및 노묘 돌봄서비스업의 도입에 대한 검토와 준수사항 등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5. 반려동물 말소 규정 완화 및 동물장례 서비스 확충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뿐만 아니라 말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장례시설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망 시 등록 말소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 개체 수 파악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례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 사체 매립 증가와 더불어 사망 전 유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려동물 사망에 따른 등록 말소에 대한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항 제8호(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제1항에는 동물병원 개설자 등의 등록대행자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망 시 등록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등록말소업무의 대행 규정을 추가하고 등록 말소의 대행자로 「동물보호법」 제69조에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0) 브릿지경제(2024. 3. 8.), “[비바 2080] 반려동물 고령화 따른 새로운 ‘노노 케어’... 고령 돌봄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물장묘시설이 지역사회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민간시설의 설치 및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된 부지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공설 동물장례서비스시설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장사시설(사람) 내에 반려동물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복합 운영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실증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서비스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영업업체 설문조사표



ID

--	--	--	--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영업업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및 식품 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의
복지실태 파악 및 복지 개선을 위하여 반려동물 영업업체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8.

-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담당 : 정민국 선임연구위원 (061-820-2263 / mkjeong@krei.re.kr)
김동훈 전문연구위원 (061-820-2368 / donghoon@krei.re.kr)

SQ1. 귀하의 사업체는 다음 중 어떤 업종에 해당하십니까? 해당하는 업종을 모두 골라주세요. [중복응답]

- ① 동물생산업 ② 동물수입업 ③ 동물판매업 ④ 동물전시업
 ⑤ 동물위탁관리업 ⑥ 동물미용업 ⑦ 동물장묘업 ⑧ 기타()

SQ2. 귀하의 사업체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는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동물생산업 ② 동물수입업 ③ 동물판매업 ④ 동물전시업
 ⑤ 동물위탁관리업 ⑥ 동물미용업 ⑦ 동물장묘업 ⑧ 기타()

SQ3. 귀하의 사업체에서 다루는 동물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개 ② 고양이 ③ 토끼 ④ 햄스터 ⑤ 기니피그 ⑥ 앵무새
 ⑦ 이구아나 ⑧ 거북이 ⑨ 뱀 ⑩ 개구리 ⑪ 거미 ⑫ 기타

업체 일반 현황

SQ4. 업체명	
SQ5.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SQ6. 영업장 입지	① 도시지역(동 지역) ② 농촌지역(읍/면/리 지역)
SQ7. 설립연도	()년 ()월
SQ8. 영업장 면적	()평
SQ9. 월평균 영업일 수	()일/개월

PART A. 시설 및 인력 현황

A1. 귀하께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만 있음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잘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A2. 귀하의 영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모두 골라주세요.

구분	보유	미보유
(1) 채광시설	①	②
(2) 환기시설	①	②
(3) 온도조절시설	①	②
(4) 습도조절시설	①	②
(5) 급수 및 배수시설	①	②
(6) 소화 시설(소화기 등)	①	②

A3. 귀하의 영업장에서 근무하고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고용 형태		전체
	상시 고용인력	임시 고용인력	
(1) 내국인	()명	()명	()명
(2) 외국인	()명	()명	()명

A4. 귀하께서 운영 중인 영업업체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감소 ② 감소 ③ 비슷한 수준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A4-1. 매출액은 어느 정도 감소하였습니까? 현재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만약 90으로 감소했다면 -10%, 30으로 감소했다면 -70%로 기입해 주십시오.

- 전년 동기 대비 ()% 감소

A4-2. 매출액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습니까? 현재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만약 110으로 증가했다면 +10%, 170으로 증가했다면 +70%로 기입해 주십시오.

- 전년 동기 대비 ()% 증가

A5. 귀하께서 운영 중인 업종에 대한 시장 규모는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매우 감소 ② 감소 ③ 비슷한 수준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PART B. 영업자 교육

※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82조(교육)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1조(영업자 교육)에 따르면 영업자는 영업 전 및 영업 중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82조(교육)

- ①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교육)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영업자 정기교육: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3시간

B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영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만 있음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잘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B2. 귀하께서는 영업장의 등록 또는 허가 전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B2-1로 이동 ② 아니오 B3으로 이동

B2-1. 영업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 전반적 만족도					
(2) 교육 내용					
(3) 교육 시간					
(4) 영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					
(5)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향상					

B3. 귀하께서는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자 정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B3-1로 이동 ② 아니오 ☞ B4로 이동

B3-1. 영업자 정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 전반적 만족도					
(2) 교육 내용					
(3) 교육 시간					
(4) 영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					
(5)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향상					

B4. 귀하께서는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정부 또는 지자체를 통해 영업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B4-1로 이동 ② 아니오 ☞ C1로 이동

B4-1.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응답)

- ① 시설 기준 위반 ② 인력 기준 위반 ③ 위생 기준 위반 ④ 미등록/미허가
 ⑤ 동물 관련 사고 등 관리 미흡 ⑥ 기타()

B4-2.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추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예 ☞ B4-3으로 이동 ② 아니오

B4-3.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추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 전반적 만족도					
(2) 교육 내용					
(3) 교육 시간					
(4) 영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					
(5)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향상					

PART C.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C1. 귀하께서는 사람 및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0	1	2	3	4	5	6	7	8	9	10
(1) 사람 복지											
(2) 반려동물 복지											

C2.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람 및 반려동물에 대한 평균적인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낮음				보통		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1) 사람 복지											
(2) 반려동물 복지											

C3.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이 현재 수준보다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현 수준이 적당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C4. 만약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잘 모르겠음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C5.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루시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영국의 ‘루시법’

- 루시는 2013년 3월 영국의 강아지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의 이름으로 6년 동안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음.
- 이에 2018년 8월 영국 정부는 6개월령 이하의 강아지 및 고양이에 대해서 제3자(펫숍)가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을 경우 상업적 거래가 아닌 지인을 통해 분양받거나 전문 브리더와 직접 거래해야 함.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C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루시법’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잘 모르겠음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PART D. 반려동물 복지 정책

D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내 별도 조직(동물복지정책과)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정부 조직 구성 및 관련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D1-1로 이동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D1-1로 이동

D1-1. 귀하께서는 현재의 반려동물 관련 정부 조직 구성 및 관련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D2. 귀하께서는 동물복지 향상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업종에 대한 각종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D2-1로 이동
⑤ 매우 높음 D2-1로 이동

D2-1. 귀하께서는 영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PART E.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E1. 귀하께서는 다음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들의 현재 수준과 향후 필요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 방법

- 현재 수준: 각 정책별 만족도를 기준으로 응답

- 필요 수준: 향후 정책별 중요도를 기준으로 응답

※ ① 매우 불만족(매우 미중요) / ② 불만족(미중요) / ③ 보통 / ④ 매우 만족(중요) / ⑤ 매우 만족(매우 중요)

구분	현재 수준(만족도)					향후 필요 수준(중요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미중요	미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2	3	4	5	1	2	3	4	5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6) 동물등록제 의무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E2.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의견 또는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 설문조사표



ID

--	--	--	--

반려동물 복지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및 식품 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의 복지실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에서 의미하는 반려동물은 현재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개와 고양이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동물은 제외합니다.

2024. 7.

-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담당 : 정민국 선임연구위원 (061-820-2263 / mkjeong@krei.re.kr)
김동훈 전문연구위원 (061-820-2368 / donghoon@krei.re.kr)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만()세

SQ3.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SQ4. 귀하의 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도시지역(동 지역) ② 농촌지역(읍/면/리 지역)

SQ5.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주상복합 ④ 오피스텔 ⑤ 연립/빌라 ⑥ 기타()

SQ6. 귀하께서는 현재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 ① 현재 양육하고 있음 **☞ SQ7로 이동** ② 현재 양육하지 않음 **☞ PART C로 이동**

SQ7. 귀하께서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개 ② 고양이 ③ 개, 고양이 모두

SQ8. 귀하께서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종류별 마릿수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	개	고양이	합계
양육 마릿수	()마리	()마리	()마리

※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방식

- 1) '개'만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반려견(1마리)을 기준으로 응답
- 2) '고양이'만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반려묘(1마리)를 기준으로 응답
- 3) '개'와 '고양이' 모두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반려견 및 반려묘를 기준으로 별도 응답

PART A. 반려견 양육 현황(소유자)

※ 여러 마리 양육 시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반려견(1마리)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1. 양육 중인 반려견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별	현재 나이	양육 기간	중성화수술 여부
① 암컷 ② 수컷	()년()개월	()년()개월	① 수술 ② 미수술

A2. 양육 중인 반려견의 입양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개인 입양(친구/친척/지인) ② 동물병원 ③ 펫샵(분양샵)
 ④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⑤ 인터넷 쇼핑몰 ⑥ 인터넷 개인 거래
 ⑦ 가정 내 번식(자가번식) ⑧ 전문 브리더 ⑨ 기타()

A3. 귀하께서는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의무 시행 중이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함. 또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등록대상동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A4. 귀하께서는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A5. 귀하께서 양육 중인 반려견은 지자체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등을 통해 동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① 등록 A6으로 이동 ② 미등록 A8로 이동

A6. 반려견의 동물등록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내장형 인식칩 A7-(1)로 이동 ② 외장형 인식칩 A7-(2)로 이동

A7. 편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내장형					
(2) 외장형					

A8.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 ② 동물등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
 ③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④ 등록 비용(수수료)이 부담스럽기 때문
 ⑤ 인근에 등록 대행기관이 없기 때문 ⑥ 생후 2개월 미만이기 때문
 ⑦ 동물등록에 대한 거부감 때문 ⑧ 기타()

A9. 향후 양육 중인 반려견의 동물등록에 대한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A10으로 이동
 ⑤ 매우 높음 A10으로 이동

A10. 향후 반려견의 동물등록 시 어떠한 동물등록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 ① 내장형 인식칩 ② 외장형 인식칩

A11. 귀하께서는 반려견 입양 전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A12. 현재 양육 중인 반려견의 양육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A13. 반려견의 항목별 월평균 양육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반

려견 1마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구분	월평균 양육비	구분	월평균 양육비
(1) 사료 및 간식비	()만원	(4) 양육 관련 용품비	()만원
(2) 의료비(동물병원, 의약품 등)	()만원	(5) 기타 비용	()만원
(3) 서비스비(미용 등)	()만원	(6) 합계	()만원

PART B. 반려묘 양육 현황(소유자)

※ 여러 마리 양육 시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반려묘(1마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1. 양육 중인 반려묘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별	현재 나이	양육 기간	중성화수술 여부
① 암컷 ② 수컷	()년 ()개월	()년 ()개월	① 수술 ② 미수술

B2. 양육 중인 반려묘의 입양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개인 입양(친구/친척/지인) ② 동물병원 ③ 펫샵(분양샵)
 ④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⑤ 인터넷 쇼핑몰 ⑥ 인터넷 개인 거래
 ⑦ 가정 내 번식(자가번식) ⑧ 전문 브리더 ⑨ 기타()

B3. 귀하께서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시범사업 시행 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하고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함.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B4. 귀하께서는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B5. 귀하께서 양육 중인 반려묘는 지자체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등을 통해 동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① 등록 B6으로 이동 ② 미등록 B7로 이동

B6. 편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B7. 반려묘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 ② 동물등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
 ③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④ 등록 비용(수수료)이 부담스럽기 때문
 ⑤ 인근에 등록 대행기관이 없기 때문 ⑥ 생후 2개월 미만이기 때문
 ⑦ 동물등록에 대한 거부감 때문 ⑧ 기타()

B8. 귀하께서는 반려묘 입양 전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9. 현재 양육 중인 반려묘의 양육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10. 반려묘의 항목별 월평균 양육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반려묘 1마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구분	월평균 양육비	구분	월평균 양육비
(1) 사료 및 간식비	()만원	(4) 양육 관련 용품비	()만원
(2) 의료비(동물병원, 의약품 등)	()만원	(5) 기타 비용	()만원
(3) 서비스비(미용 등)	()만원	(6) 합계	()만원

PART C. 반려동물 미소유자 의향 조사(미소유자)

C1. 귀하께서는 과거에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C2로 이동 ② 없음 ☞C5로 이동

C2. 과거 양육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개 ② 고양이 ③ 개, 고양이 모두

C3. 과거 반려동물 양육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총 ()년 ()개월

C4. 과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C5. 귀하께서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②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
③ 관리가 힘들기 때문 ④ 가족 및 이웃과의 갈등 때문
⑤ 현재 거주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 ⑥ 입양 관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⑦ 양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⑧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
⑨ 동물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 ⑩ 기타()

C6. 귀하께서는 향후(5년 내) 반려동물을 양육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음 ☞C7로 이동 ② 없음 ☞PART D로 이동

C7. 향후(5년 내) 양육 의향이 있는 반려동물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개 ② 고양이 ③ 개, 고양이 모두 ④ 잘 모르겠음

D6. 귀하께서는 주변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 동물 학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① 있음 D7로 이동 ② 없음 D8로 이동

D7. 동물 학대 행위 목격 이후 지자체 또는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D8. 귀하께서는 동물 학대자의 처벌 강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D9.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내 별도 조직(동물복지정책과)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정부 조직 구성 및 관련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D1-1로 이동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D1-1로 이동

D10. 귀하께서는 현재의 반려동물 관련 정부 조직 구성 및 관련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PART E. 반려동물 복지실태(공통)

※ 여러 마리 양육 시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동물을 기준으로 하며, 개와 고양이를 모두 양육하는 경우 개와 고양이 중 양육 기간이 더욱 오래된 동물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1-0. 귀하께서는 개와 고양이를 모두 양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와 고양이 중 양육 기간이 더 오래된 동물을 선택해 주세요. 양육 기간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하는 동물을 선택해 주세요.

- ① 개 ② 고양이

<E1> 영양 부문

E1-1. 귀하께서는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영양 섭취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E1-2. 귀하께서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 ① 사료 ② 가정 내 조리식품 ③ 혼합(사료 ___%/가정 내 조리식품 ___%)

E1-3. 귀하께서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식습관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불규칙적 ② 불규칙적 ③ 보통 ④ 규칙적 ⑤ 매우 규칙적

E1-4. 귀하께서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먹이에 대한 영양수준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불균형적 ② 불균형적 ③ 보통 ④ 균형적 ⑤ 매우 균형적

E1-5. 귀하께서 주로 먹이를 급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분할배식(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키는 배식 방법)
② 자율배식(한 번에 충분한 양을 주고 찾아 먹도록 하는 배식 방법)

E1-6. 귀하께서는 반려견(묘)의 품종, 생애단계 등을 고려하여 먹이를 주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1-7. 귀하께서는 반려견(묘)의 비만, 영양실조 등을 고려하여 먹이를 주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1-8. 귀하께서는 먹이 외에 별도의 간식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1-9. 사료, 간식 등 반려견(묘)의 식품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가격 ② 영양 성분 ③ 원산지 ④ 브랜드
⑤ 반려견 특성/기호 ⑥ 구입/주문 편리성 ⑦ 보관 용이성
⑧ 품질 등급 ⑨ 위생 및 안전성 ⑩ 후기/평점/추천 등
⑪ 제조일자/유통기한 ⑫ 기타()

E1-10. 사료, 간식에 대하여 주로 선호하는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 ① 국내산 ② 수입산

E1-11. 사료, 간식 외에 특정 영양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펫푸드를 별도로 먹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1-12.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평소 수분 섭취는 충분한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2> 생활환경 부문

E2-1. 귀하께서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E2-2. 귀하께서는 반려견(묘)을 주로 어디에서 기르고 있습니까?

- ① 실내(집 안) E2-3으로 이동 ② 실외(마당 등) E2-4로 이동

E2-3. 실내 사육공간 내에 개(고양이)집, 케이지, 전용 쿠션 등 반려견(묘)을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E2-6으로 이동 ② 없음 E2-7로 이동

E2-4. 실외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E2-5. 실외 사육공간에서 양육 시 목줄을 이용하십니까?

- ① 전혀 이용하지 않음 ② 이용하지 않는 편임 ③ 가끔 이용함
④ 자주 이용함 ⑤ 항상 이용함

E2-6. 반려견(묘)의 휴식공간에 대한 청소는 월평균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월 () 회

E2-7. 현재 반려견(묘)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생활용품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 ① 방석(쿠션) ② 밥그릇 ③ 자울 급식기 ④ 울타리/펜스
⑤ 쉼넬 ⑥ 배변판/패드 ⑦ 전용 매트 ⑧ 운동용품
⑨ 장난감 ⑩ 목욕용품 ⑪ 미용용품 ⑫ 유모차
⑬ 캣타워 ⑭ 기타()

<E3> 건강 및 의료 부문

E3-1. 평소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E3-2. 양육 중인 반려견(묘)에 대한 건강검진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E3-3. 양육 중인 반려견(묘)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E3-4.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질병 또는 상해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E3-5로 이동 ② 없음 E3-8로 이동

E3-11. 지금까지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 기간 및 월평균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양육 기간이 가장 오래된 1마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총가입 기간: ()개월 / (2) 보험료: 월평균 ()원

E3-12.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보험료 수준					
(2) 보험 가입 절차					
(3) 보장 범위					
(4) 보험사의 신뢰성					

E3-13. 향후(5년 내)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E3-14. 반려동물 보험 가입에 대한 예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 현재로부터 ()년 이후

E3-1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마리일 경우 가장 최근의 경험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음 ☞ E3-16으로 이동 ② 없음 ☞ E3-19로 이동

E3-16. 당시 반려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① 동물병원에 위탁처리 ② 동물장묘업체 이용 ③ 인근 땅에 매립
④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⑤ 기타()

E3-17. 당시 사망한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① 예 ☞ E3-18로 이동 ② 아니오 ☞ E3-19로 이동

E3-18. 반려동물 사망 이후 동물등록 변경 등 말소 신고를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3-19. 만약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① 동물병원에 위탁처리 ② 동물장묘업체 이용 ③ 인근 땅에 매립
④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⑤ 아직 계획 없음 ⑥ 기타()

<E4> 행동 부문

E4-1.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평소 행동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활발하지 않음 ② 활발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활발함 ⑤ 매우 활발함

E4-2. 양육 중인 반려견(묘)은 행동 발달을 위한 가정 내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E4-3으로 이동**
⑤ 매우 그러함 **E4-3으로 이동**

E4-3. 반려견(묘)의 가정 내 훈련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E4-4. 양육 중인 반려견(묘)은 행동 발달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E4-5로 이동** ② 없음 **E4-6으로 이동**

E4-5. 반려견(묘)의 외부 기관 훈련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E4-6. 양육 중인 반려견의 외부 산책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E4-7로 이동**
⑤ 매우 그러함 **E4-7로 이동**

E4-7. 양육 중인 반려견의 외부 산책 횟수 및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1) 1주일 기준 ()회 / (2) 1회 평균 ()시간

E4-8. 외부 산책 시 목줄을 착용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착용하지 않음 ② 착용하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착용하는 편임
⑤ 항상 착용함

E4-9. 외부 산책 시 소유자 정보 및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E4-10. 외부 산책 시 배변봉투의 소지 및 수거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E5> 정신 상태/경험 부문

E5-1.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관심 없음 ③ 보통 ④ 관심 있음 ⑤ 매우 관심 있음

E5-2. 양육 중인 반려견(묘)의 정서적 안정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불안정 ② 불안정 ③ 보통 ④ 안정적 ⑤ 매우 안정적

E5-3. 양육 중인 반려견(묘)이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편입니까?

- ① 매우 적음 ② 적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

E5-4. 양육 중인 반려견(묘)이 혼자 있을 경우 상황 확인을 위해 홈캠, CCTV 등의 장비를 사용합니까?

- ① 사용 ② 미사용

E5-5. 양육 중인 반려견(묘)이 양육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 1일 ()시간

E5-6. 양육자 없이 혼자 있을 경우 반려견(묘)이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PART F.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소유자)

F1. 귀하께서는 다음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들의 현재 수준과 향후 필요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 방법

- 현재 수준: 각 정책별 만족도를 기준으로 응답
- 필요 수준: 향후 정책별 중요도를 기준으로 응답
- ※ ① 매우 불만족(매우 미중요) / ② 불만족(미중요) / ③ 보통 / ④ 매우 만족(중요) / ⑤ 매우 만족(매우 중요)

구분	현재 수준(만족도)					향후 필요 수준(중요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미중요	미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2	3	4	5	1	2	3	4	5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6) 동물등록제 의무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PART G. 응답자 특성(공통)

G1. 귀하께서는 현재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기혼 ② 미혼(이혼, 사별 포함)

G2. 현재 귀하께서는 1인 가구입니까?

- ① 예 ☞ G4로 이동 ② 아니오 ☞ G3로 이동

G3. 현재 귀댁의 동거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 포함)

- 본인 포함 총 ()명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미만)	미성년자 (초등학교~고등학교)	성인 (만 19세~만 65세 미만)	노인 (만 65세 이상)	합계
()명	()명	()명	()명	()명

G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G5.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300만 원 미만 ③ 300~400만 원 미만
 ④ 400~500만 원 미만 ⑤ 500~600만 원 미만 ⑥ 600~700만 원 미만
 ⑦ 700~800만 원 미만 ⑧ 800~900만 원 미만 ⑨ 900~1,000만 원 미만
 ⑩ 1,000만 원 이상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복지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표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D

--	--	--	--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정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및 식품 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의 복지개선을 위한 전문가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9.

-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담당 : 정민국 선임연구위원 (061-820-2263 / mkjeong@krei.re.kr)
김동훈 전문연구원 (061-820-2368 / donghoon@krei.re.kr)

PART A. 반려동물 복지 및 정책에 대한 인식

A1.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람 및 반려동물에 대한 평균적인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낮음			보통				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1) 사람 복지											
(2) 반려동물 복지											

A2.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루시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영국의 ‘루시법’

- 루시는 2013년 3월 영국의 강아지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의 이름으로 6년 동안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음.
- 이에 2018년 8월 영국 정부는 6개월령 이하의 강아지 및 고양이에 대해서 제3자(펫숍)가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을 경우 상업적 거래가 아닌 지인을 통해 분양받거나 전문 브리더와 직접 거래해야 함.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A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루시법’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잘 모르겠음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A4. 귀하께서는 현재의 반려동물 관련 정부 조직 구성 및 관련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A5. 귀하께서는 동물복지 향상 측면에서 현재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PART B. 반려동물 복지 정책 수요

B1. 귀하께서는 다음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들의 현재 수준과 향후 필요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 방법

- 현재 수준: 각 정책별 만족도를 기준으로 응답

- 필요 수준: 향후 정책별 중요도를 기준으로 응답

※ ① 매우 불만족(매우 미중요) / ② 불만족(미중요) / ③ 보통 / ④ 매우 만족(중요) / ⑤ 매우 만족(매우 중요)

구분	현재 수준(만족도)					향후 필요 수준(중요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미중요	미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2	3	4	5	1	2	3	4	5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 소유자의 양육조건 강화										
(3) 소유자의 돌봄 준수사항 강화										
(4) 입양 전 소유자 교육 강화										
(5) 입양 후 소유자 교육 강화										
(6) 동물등록제 의무화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8) 반려동물 의료체계 및 제도 개선										
(9) 반려동물 의료인력 확충										
(10) 펫보험 활성화										
(11) 동물 학대 범위 확대										
(12)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13)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1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확대										
(15) 불법 영업장 규제 강화										
(16) 동물장묘업 활성화										
(17) 반려동물 미소유자 인식 개선										
(18) 정부 전담 조직 기능 강화										
(19) 지자체 전담 조직 기능 강화										
(20) 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 기반 구축 강화										

B2.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부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 또는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도훈(2022), “민사집행법상 반려동물의 압류금지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3(3): 31-55,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선희(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김수린·박혜진(2024),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잔디·권용수·이진홍(2022), *동물학대 행위 등 처벌 관련 비교법적 연구*, 건국대학교.
- 김정옥·김정규(2020), “동물복지정책의 비용편익 식별 및 추정방안 - 법적 정합성 및 감 정적 효용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26(1): 1-25,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김현중·이정민·이형용(2019),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희(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나인지(2014), “국내 동물복지정책 동향”, *세계농업*, 163: 91-1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07), *동물보호·복지종합대책 수립계획(안)*.
- _____ (2014),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
- _____ (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 _____ (2020),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 _____ (2022), *동물복지 강화 방안*.
- _____ (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 _____ (2023),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_____ (2024),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_____ (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_____ (각 연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_____ (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대한수의사회(2022),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시행 알림*(’22. 11. 13. 시행).
- 미국 수의학협회(2022), *2022 AVMA Pet Ownership and Demographics Sourcebook*.

-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2023),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_____(2024),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2019),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제8편
 동물의 권리.
-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1993), Report on priorities for animal welfare research and
 development.
- 영국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2006.
- 유기영·이종찬(2016),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 이영대(2016),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이용건 외(2024), 반려동물 산업 조사체계 진단 및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본 펫푸드협회(2023), 令和4年全国犬猫飼育実態調査.
- 장은혜(2015),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전경미·김석선(2019), “전신건강전문요원의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관리 역량강화 교
 육 요구도”, 보건사회연구, 39(4): 456-4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상곤·하수안·안윤미·지인배(2017), 동물보호·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
 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최익창·김관대·양진석·김현중(2024),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온라인도매시장,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소비자원(2019), 반려동물 판매업 실태조사.
- 함태성(2021),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 연구, 농림
 축산식품부.
- _____(202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분법적 사고의 근간을 바꾸다”,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 황선훈(2010), “미국의 연방 동물보호법”, 맞춤형 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 황원경·이신애(2023),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황윤재·박기환·박성진·박준홍(2023), 농식품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펫푸드 산업
 육성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room, D. M.(2006), “Introduction –Concepts of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including obligations and rights”, Animal Welfare. Ethical Eye Serie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Borich, G. D.(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39-42.
- OIE(2022), Dog population management.
- The Animal Welfare Foundation(2020), What is the Animal Welfare?
- WOAH(2023), Monitoring animal welfare standards.
- Manteca X(2016), Animal Welfare Indicators for Dogs and Cats, 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Congress.
- McMillan, Franklin. D.(2018), “Behavioral Issues in Dogs Obtained as Puppies from Pet Stores”, 43rd 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Congress and 9th FASAVA Congress, WSV18-0143, WSAVA Congress 2018 & FASAVA.

<보도자료 및 기사>

- 노트펫(2017. 8. 16.), “일본, 펫 장묘업 둘러싼 마찰.. 법 정비 촉구”.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2017. 11. 25.), “[칼럼]동물권을 아시나요?”.
- 동아일보(2022. 2. 17.), “유기동물 年 13만 마리... 코무니가 해결책 될까”.
- 매일경제(2021. 8. 2.), “뉴비즈니스 ‘반려동물 장례’ 일본처럼 이동식 화장 뜰까”.
- 브릿지경제(2024. 3. 8.), “[비바 2080] 반려동물 고령화 따른 새로운 ‘노노 케어’... 고령 돌봄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 세계비즈(2024. 10. 9.),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반려동물 세금 논쟁 확산... 세계 각국 반려동물 관리 정책은”.
- 스카이데일리(2024. 5. 16.), “노령견 114만... 펫 ‘건강관리 시장’ 뜬다”.
- 오마이뉴스(2024. 5. 21.), “‘유기견 596마리 보호’ 대전 시온쉼터 또 철거 위기”.
- 한겨레(2023. 5. 3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대통령 이 힘실은 민법개정안...2년째 표류”.
- 한겨레(2018. 8. 23.), “영국의 ‘강아지 공장’을 물리친 개, 루시”.
- 한국애견신문(2023. 12. 15.), “서정숙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월령 60개월 이상 교배·출산 방지””.
- 한국일보(2022. 8. 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은 시작.. 보호자 의무도 강화해야”.

<온라인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검색일: 2024. 7. 1.
- 미국 동물병원협회(<https://www.aaha.org/aaha-guidelines/life-stage-canine-2019/canine-life-stage-definitions/>), 검색일: 2024. 1. 21.
- 미국 동물복지법(<https://www.govinfo.gov/content/pkg/COMPS-10262/pdf/COMPS-10262.pdf>), 검색일: 2024. 5. 3.
- 미국 판례 및 법령 홈페이지(<https://codes.findlaw.com/ca/health-and-safety-code/hsc-sect-121690/>), 검색일: 2024. 5.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경범죄 처벌법, 검색일: 2024. 5.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검색일: 2024. 1. 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령, 검색일: 2024. 3. 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검색일: 2024. 3. 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민법, 검색일: 2024. 1. 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수의사법, 검색일: 2024. 3.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수의사법 시행령, 검색일: 2024. 3.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폐기물관리법, 검색일: 2024. 5.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현재결정례정보, 검색일: 2024. 5.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형법, 검색일: 2024. 5. 1.
- 빅카인즈(BigKinds)(<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뉴스 분석, 검색일: 2024. 10. 3.
- 세계동물보건기구(<https://rr-africa.woah.org/app/uploads/2024/09/10.-STUARDO.pdf>), 검색일: 2024. 2. 2.
- 세계동물보건기구(<https://www.woah.org/en/what-we-do/standards/codes-and-manuals/terrestrial-code-online-access/?id=169&&L=1&&htmlfile=glossaire.htm>), 검색일: 2024. 2. 2.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검색일: 2024. 5. 2.
- 아이안 동물의료센터(<http://www.aianamc.co.kr/health-checkup-center/>), 검색일: 2024. 1. 21.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et-your-dog-cat-microchipped>), 검색일: 2024. 4. 19.

일본 동물검역소(<https://www.maff.go.jp/aqs/english/animal/dog/import-other.html>), 검색일: 2024. 7. 1.

통계청(KOSIS)(<https://kosis.kr/index/index.do>), 인구총조사, 검색일: 2024. 1. 10.
_____(<https://kosis.kr/index/index.do>), 장래인구추계, 검색일: 2024. 1. 10.

하와이주 홈페이지(<https://www.vrl.hawaiicounty.gov/other-services/dog-registration>), 검색일: 2024. 5. 2.

e동물장래정보포털(<https://eanimal.kr/>), 검색일: 2024. 4. 25.

Licensing and Registration Under the Animal Welfare Act(<https://www.aphis.usda.gov/sites/default/files/graybook.pdf>), 검색일: 2024. 5. 14.

動物愛護と動物福祉は別物だよ(<https://doubutuhukusi.com/animal-welfare-difference/>), 검색일: 2024. 5. 9.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8AC100000105>), 검색일: 2024. 5. 13.

動物愛護管理法の改正点は? 改正内容や飼い主が知るべきことを解説(<https://wanko.peace-winds.org/journal/10593>), 검색일: 2024. 5. 13.

第一種動物取扱業者及び第二種動物取扱業者が取り扱う動物の管理の方法等の基準を定める省令(<https://laws.e-gov.go.jp/law/503M60001000007>), 검색일: 2024. 9. 2.

人と動物の共生する社会の実現を目指して(https://www.env.go.jp/nature/dobutsu/aigo2_data/pamph/h3008a/pdf/02.pdf), 검색일: 2024. 5. 13.

KREI

www.krei.re.kr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개선과제

A Study on the Welfare Status and
Improvement Task of Companion Animal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9 791161 497112
ISBN 979-11-6149-711-2